



■ 정책보고서 2013-13

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연구

김승권 · 김유경 · 김정숙 · 박계림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취약위기 및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구축과 자립지원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공저)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공저)

【공동연구진】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숙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단장

박계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인턴

발간사 <<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되어 왔으며, 성폭력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도 이루어져 왔다. 양성교육은 초기의 64시간에서 2012년부터 100시간으로 확대되어 상담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양성교육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지정된 기관은 없으며, 민간 자율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다양한 양성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전문상담원들은 우리나라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활동에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의 증가와 이에 적극 대처하려는 국가신념과 국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표준화된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양성교육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민간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체계 하에서 양성교육기관의 교육방식 및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수료자의 질적 수준에서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현장업무에 투입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는 현실적 지적은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더군다나 민간 자격에 머무르고 있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이 이제 명실상부한 국가자격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도 이러한 양성교육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성폭력시설 종사자들은 폭력업무의 특성상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소송을 당해 상담원 활동이 위축되기도 한다. 또한 심각하고 복합적인 외상적 사연을 호소하는 성폭력피해자와 가족을 만나 상담과 지원을 하는 상담원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민감하게 공감, 공유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현실적 한계에 부딪치기도 하면서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업무적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폭력 상담원의 소진을 예방, 해소할 수 있는 치유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재적 및 외재적 한계를 가진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시스템을 보완하고 안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추진되었음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이는 학력, 전공, 현장경력 등을 고려하여 상담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맞춤형으로 실시함으로써 상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자격인증제

를 도입하여 자긍심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시설 종사자의 신변안전과 업무종사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본 연구는 당원의 김승권 박사의 책임아래 원내외 연구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현장감 있는 연구, 현실 적응 가능한 정책대안 개발을 위하여 많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보고서의 집필에 있어서 구체적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김승권)

제2장 선행연구 (전체 연구진)

제3장 국내·외 정책동향 (전체 연구진)

제4장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실태 및 욕구 (김승권)

제5장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의 실태 및 욕구 (김유경)

제6장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 욕구 (김승권)

제7장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안전 실태와 욕구 (김정숙)

제8장 정책 제언 (전체 연구진)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교육기관, 성폭력관련 기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에 참여한 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자문회의와 FGI에 참여하여 고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귀한 연구를 본 연구원에 맡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지면을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자긍심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치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성폭력 없는 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3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선행연구	15
제1절 양성교육 관련 선행연구	17
제2절 보수교육 관련 선행연구	18
제3절 자격관리 관련 선행연구	21
제4절 안전 관련 선행연구	22
제5절 시사점	29
제3장 국내외 정책동향	31
제1절 양성교육 관련 정책동향	33
제2절 보수교육 관련 정책동향	50
제3절 자격관리 관련 정책동향	84
제4절 안전 관련 정책동향	93
제5절 시사점	97
제4장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양성교육 실태 및 욕구	99
제1절 양성교육의 실태	101
제2절 양성교육에 대한 욕구	117
제3절 양성교육 관련 FGI 결과	130
제4절 시사점	131

제5장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보수교육 실태 및 욕구	133
제1절 보수교육의 실태	135
제2절 보수교육에 대한 욕구	147
제3절 보수교육 관련 FGI 결과	155
제4절 시사점	159
제6장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자격관리	161
제1절 자격관리 욕구	163
제2절 자격관리제도 관련 FGI	166
제3절 시사점	169
제7장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안전 실태 및 욕구	171
제1절 안전 실태	173
제2절 FGI 결과	182
제3절 시사점	190
제8장 정책 제언	193
제1절 양성·보수교육 및 자격관리의 단기 정책방안	195
제2절 양성교육·보수교육·자격관리의 중장기 정책방안	204
제3절 종사자 안전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208
부록1	223
부록2	233
부록3	240
부록4	250

표 목차

〈표 1-1〉 조사 실시 및 응답완료	14
〈표 3-1〉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양성교육 과정별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	33
〈표 3-2〉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양성교육 강사 자격기준	34
〈표 3-3〉 가정폭력 상담원의 양성교육 과정별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	35
〈표 3-4〉 가정폭력시설 종사자의 양성교육 강사 자격기준	36
〈표 3-5〉 성매매방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양성교육 과정별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	37
〈표 3-6〉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양성교육체계 비교 1	42
〈표 3-7〉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양성교육체계 비교 2	43
〈표 3-8〉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양성교육체계 비교 3	44
〈표 3-9〉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양성교육체계 비교 4	45
〈표 3-10〉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유형 및 설치지정 기준	45
〈표 3-11〉 미국 성폭력관련 종사자 정책동향 1	47
〈표 3-12〉 미국 성폭력관련 종사자 정책동향 2	48
〈표 3-13〉 미국 성폭력관련 종사자 정책동향 3	49
〈표 3-14〉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	51
〈표 3-15〉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강사 자격기준	52
〈표 3-16〉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52
〈표 3-17〉 가정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강사 자격기준	54
〈표 3-18〉 가정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54
〈표 3-19〉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	55
〈표 3-20〉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56
〈표 3-21〉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	57
〈표 3-2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강사 자격기준	58
〈표 3-2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59
〈표 3-24〉 건강가정사의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	60
〈표 3-25〉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강사선발과정	60
〈표 3-26〉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	61
〈표 3-27〉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보수교육체계 비교 1	64
〈표 3-28〉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보수교육체계 비교 2	65
〈표 3-29〉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보수교육체계 비교 3	66

〈표 3-30〉 2011년도 여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원 보수교육 일정 및 교육인원	68
〈표 3-31〉 2012년도 여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원 보수교육 일정 및 교육인원	69
〈표 3-32〉 2011의 보수교육과정년도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보수교육 일정 및 교육인원	71
〈표 3-33〉 2012년도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보수교육 일정 및 교육인원	72
〈표 3-34〉 2011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일정 및 교육인원	74
〈표 3-35〉 2012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일정 및 교육인원	75
〈표 3-3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현황	77
〈표 3-37〉 미국의 성폭력 보수교육기관 사례 1	83
〈표 3-38〉 미국의 성폭력 보수교육기관 사례 2	84
〈표 3-39〉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자격관리체계 비교 1	87
〈표 3-40〉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자격관리체계 비교 2	88
〈표 3-41〉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자격관리체계 비교 3	89
〈표 3-42〉 자격취득 및 이수를 위한 교과목 편성	90
〈표 3-43〉 미국의 성폭력 관련 자격관리 제도 1	91
〈표 3-44〉 미국의 성폭력 관련 자격관리 제도 2	92
〈표 4-1〉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율, 교육 횟수, 수료자 수	101
〈표 4-2〉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제공 주기(2012년)	102
〈표 4-3〉 양성교육 한 회기 당 평균 기간	102
〈표 4-4〉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신청 자격요건(중복응답)	103
〈표 4-5〉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기관의 교과목(중복응답)	104
〈표 4-6〉기 실시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강의와 실습 비율	104
〈표 4-7〉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활용하는 전담인력 수	105
〈표 4-8〉 전담인력 수의 충분성	105
〈표 4-9〉 (부족한 경우) 충원되어야 하는 전담인력 수	105
〈표 4-10〉 귀 기관에서 강사를 활용하는 방식	106
〈표 4-11〉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주된 이유	106
〈표 4-12〉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중복응답)	107
〈표 4-13〉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강사를 섭외하는 방법	108
〈표 4-14〉 귀 기관이 전문 강사를 확보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108
〈표 4-15〉 양성교육 홍보 수행 비율	108
〈표 4-16〉 (홍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홍보를 수행하는 방법(중복응답)	109

〈표 4-17〉 양성교육 참여자로부터 받는 교육비용(1인당 평균)	109
〈표 4-18〉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가 기관운영에 도움된 비율	109
〈표 4-19〉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후 (도움이 된 경우의)향상된 점 우선순위	110
〈표 4-20〉 성폭력상담전문 양성교육 과정상의 문제점(중복응답)	111
〈표 4-21〉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111
〈표 4-22〉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수준	112
〈표 4-23〉 양성교육 수료율과 수료시간	113
〈표 4-24〉 성폭력 전문상담원 수료증에 명시된 주관기관	113
〈표 4-25〉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이론+실습비용포함)에서 실제 지불한 비용	114
〈표 4-26〉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후 자질향상 또는 직무수행 도움 여부	114
〈표 4-27〉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이후 향상된 점 우선순위	114
〈표 4-28〉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통해 습득한 직무내용의 반영 또는 기관 내외의 신임 정도 ..	115
〈표 4-29〉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문제점(중복응답)	115
〈표 4-30〉 최근 5년 이내에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율	116
〈표 4-31〉 최근 5년 이내 수료자의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만족도	116
〈표 4-32〉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적절한 시간”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의 의견	117
〈표 4-33〉 “양성교육의 적절한 시간”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	117
〈표 4-34〉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적절한 주기”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의 의견 ..	118
〈표 4-35〉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적절한 주기에 대한 일반종사자 의견	118
〈표 4-36〉 “양성교육의 프로그램 당 적절한 기간”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의 의견	118
〈표 4-37〉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프로그램 당 적절한 기간에 대한 일반종사자 의견	119
〈표 4-38〉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 신청자격 요건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주된 이유	119
〈표 4-39〉 “양성교육의 적절한 배분 비율(평균)”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의 의견	120
〈표 4-40〉 “양성교육의 적절한 배분 비율”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	120
〈표 4-41〉 “양성교육에 필요한 강의교육”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중복응답)	121
〈표 4-42〉 “양성교육에 필요한 현장실습”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중복응답)	121
〈표 4-43〉 “향후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양성교육 교과목”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의 의견 ..	122
〈표 4-44〉 양성교육수료자 평가방식으로 적절한 것	123
〈표 4-45〉 “양성교육 전문 강사의 적절한 자격기준”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의 의견 ..	124
〈표 4-46〉 “양성교육 전문 강사의 적절한 자격기준”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	124
〈표 4-47〉 “양성교육 참여자로부터 받는 적절한 교육비용(1인당 평균)”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의 의견 ..	125

〈표 4-48〉 “양성교육의 적절한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	125
〈표 4-49〉 “양성교육 위탁 운영기관으로 적절한 기관(중복응답)”에 대한 양성교육 실시기관의 의견	126
〈표 4-50〉 “양성교육 및 강사양성기관으로 위탁운영하기에 적절한 기관(중복응답)”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 ..	126
〈표 4-51〉 “양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의 의견	127
〈표 4-52〉 “양성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	128
〈표 4-53〉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취득을 원하는 비율 및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이 필요한 주된 이유 ..	128
〈표 4-54〉 (취득의향 없는 경우)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수료증) 취득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	129
〈표 4-55〉 (취득의향 없는 경우) 성폭력상담업무 교육을 받은 경로	129
〈표 5-1〉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실시율, 교육 횟수, 수료자 수	135
〈표 5-2〉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136
〈표 5-3〉 성폭력관련 기관의 보수교육 제공 주기(2012년)	136
〈표 5-4〉 보수교육 한 회기 당 평균 기간	136
〈표 5-5〉 최근 3년 이내에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참여율	137
〈표 5-6〉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비율	137
〈표 5-7〉 성폭력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주된 이유	137
〈표 5-8〉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폭력전문상담원 보수교육 교과목(중복응답)	138
〈표 5-9〉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의 강의와 실습 비율	139
〈표 5-10〉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활용하는 전담인력 수	139
〈표 5-11〉 보수교육 프로그램 전담인력수의 충분성	139
〈표 5-12〉 (부족한 경우) 충원되어야 하는 전담인력 수	140
〈표 5-13〉 귀 기관에서 강사를 활용하는 방식	140
〈표 5-14〉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140
〈표 5-15〉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중복응답)	141
〈표 5-16〉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강사를 섭외하는 방법	141
〈표 5-17〉 귀 기관이 전문 강사를 확보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142
〈표 5-18〉 직원 보수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비율 및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142
〈표 5-19〉 보수교육 홍보 수행 비율	143
〈표 5-20〉 (홍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홍보를 수행하는 방법(중복응답)	143
〈표 5-21〉 최근 보수교육에 참여한 성폭력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에 소요된 비용	143
〈표 5-22〉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실시 수준	144
〈표 5-23〉 보수교육 실시의 전문성 향상 도움 비율	144

〈표 5-24〉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145
〈표 5-25〉 최근 3년 이내 보수교육을 이수한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만족도	146
〈표 5-26〉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의 업무수행 도움 정도 및 도움이 안 되는 이유	147
〈표 5-27〉 성폭력전문상담원 보수교육의 적절한 주기	147
〈표 5-28〉 성폭력전문상담원 보수교육 프로그램 당 적절한 기간	148
〈표 5-29〉 성폭력전문상담원 보수교육의 적절한 주기	148
〈표 5-30〉 성폭력전문상담원 보수교육의 프로그램 한 회기 당 적절한 기간	148
〈표 5-31〉 “향후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보수교육 교과목”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의 의견	149
〈표 5-32〉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의 강의와 실습 비율	150
〈표 5-33〉 “향후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보수교육 교과목”에 대한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의 의견	151
〈표 5-34〉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의 강의와 실습 비율	151
〈표 5-35〉 “기관과 종사자 간에 보수교육 비용 분담비율”에 대한 성폭력 관련기관의 의견	152
〈표 5-36〉 “보수교육의 적절한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	152
〈표 5-37〉 “보수교육 전문 강사의 적절한 자격기준”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의 의견(중복응답)	153
〈표 5-38〉 “보수교육 위탁 운영기관으로 적절한 기관”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의 의견(중복응답)	153
〈표 5-39〉 “보수교육 전문 강사의 적절한 자격기준”에 대한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의 의견	154
〈표 5-40〉 “보수교육 위탁 운영기관으로 적절한 기관”에 대한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 의견(중복응답)	154
〈표 5-41〉 “보수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의 의견	155
〈표 6-1〉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국가자격화에 동의하는 비율 및 주된 이유	163
〈표 6-2〉 성폭력 전문상담원 국가자격화 적용에 적절한 제도	164
〈표 6-3〉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등급제(1·2·3급) 도입의 필요 비율	164
〈표 6-4〉 성폭력 전문상담원 국가인증시험 도입 시행 급수	164
〈표 6-5〉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수료자를 1급으로 수용하는 방안	165
〈표 6-6〉 150시간 양성교육제도 시 기준 64시간 또는 100시간의 교육이수자를 수용하는 방안	165
〈표 7-1〉 피해자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신변위협 또는 협박 받은 기관 비율과 평균 횟수	173
〈표 7-2〉 피해자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전문상담원이 신변위협 또는 협박 받은 비율	173
〈표 7-3〉(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경우)내담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측근으로부터 받은 피해 종류(중복응답)	174
〈표 7-4〉 가장 많은 위협·협박을 가한 대상	175
〈표 7-5〉 가장 많은 위협·협박을 가한 대상	175
〈표 7-6〉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경우)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가족이나 측근으로부터 받은 피해 종류(중복응답)	176
〈표 7-7〉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경우) 기관의 대처 방법(중복응답)	177

〈표 7-8〉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경우) 종사자의 대처 방법(중복응답)	177
〈표 7-9〉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결과	178
〈표 7-10〉 (기관 내) 신변보호를 위한 예방장치의 종류(중복응답)	179
〈표 7-11〉 (기관 내) 신변보호를 위한 예방장치의 종류(중복응답)	179
〈표 7-12〉 기관의 신변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기관의 견해	180
〈표 7-13〉 기관의 신변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종사자의 견해	180
〈표 7-14〉 안전장치에 대한 견해	180
〈표 7-15〉 신변안전과 대리외상에 대한 견해	181
〈표 7-16〉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경우) 이직 또는 퇴직 고려 여부	182
〈표 8-1〉 양성·보수교육 및 자격관리의 단기 정책방안	195
〈표 8-2〉 전국 권역별 양성·보수교육기관 수	196
〈표 8-3〉 양성교육 교육과목(안)	199
〈표 8-4〉 양성·보수교육 및 자격관리의 중장기 정책방안	204
〈표 8-5〉 종사자 안전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209

요약 <<

우리나라 성폭력시설 종사자는 표준화된 교육훈련시스템과 상담원의 자격을 관리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소송을 당해 상담원의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종사자들은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지속적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의 체계화 및 자격화, 그리고 상담원의 대리의상 및 소진 예방에 관한 연구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역량 있는 상담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셋째, 전문상담원의 안전을 담보하고 소진을 예방하는데 있다.

- 본 연구의 결과 양성·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운영 단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양성·보수교육기관을 정부 재정지원에 의하여 위탁 운영토록 한다.
 - 둘째, 양성·보수교육기관은 전국의 인구분포 및 지역 간 거리를 고려하여 양성·보수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즉, 양성·보수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소수를 결정한다.
 - 셋째, 양성·보수교육기관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을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넷째,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성폭력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일선 양성·보수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전문 강사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섯째, 양성·보수교육기관의 기본운영이 교육기관에 따라 상이하지 않도록 교육계획을 제출받아 사전에 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여섯째, 양성·보수교육기관의 기본운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3진 아웃제를 채택한다.
 - 일곱째,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현장실습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현장실습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한다.

- 양성·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및 평가의 단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양성교육은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과 현장실습으로 구분하고,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 70~80%, 현장실습 20~30%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둘째, 기존의 집합방식의 보수교육에서 수요자를 찾아가는 보수교육을 위한 CD제작, 동영상 보급 및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셋째, 기존의 강의 위주의 주입식 보수교육 방식을 지양하고 자기주도의 참여식 교육방법인 현장실습, 워크숍, 심포지엄 등 종사자의 참여와 발표, 토론 등이 공유되는 보수교육 방식을 도입한다.
 - 넷째,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수교육 내용의 가이드라인 및 시간 등에 대해 명시하여 보수교육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직급 및 직무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상시화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담원의 이직을 방지하고 직무의 향상을 위해서 소진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과목을 확대한다.
 - 여섯째, 성폭력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등 인권강화 측면에서 보수교육 과정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상담원의 자세 등 피해자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일곱째,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될 때 여성주의 상담의 효과성은 배가되므로 보수교육 과정에 여성주의 상담과 기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여덟째,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실질적인 서비스 대응을 위하여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과목과 시간이 확대되어야 하며, 나열식 강의가 아닌 실질적인 법적용에 대한 보수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아홉째, 성폭력서비스는 사회서비스의 틀 내에서 제공되어야 하므로 교육과정에 사회복지 개념 및 이론 관련 교과목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열째, 양성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방식은 강의교육 평가와 현장실습 평가로 구분하여 별도로 실시한다.

- 자격관리의 단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양성교육 수행기관은 자체기준에 의한 교육생의 평가결과를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에 통보한다.
 - 둘째,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강의교육을 통과한 교육생에게 지정된 현장실습기관의 목록을 제공하고, 현장실습기관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 현장실습기관과 교육생에게 통보한다.
 - 셋째, 현장실습기관은 자체기준에 의한 교육생의 평가결과 통과(pass) 또는 탈락(fail)의 평가결과를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에 통보한다.
 - 넷째, 최종적으로 강의교육 평가와 현장실습 평가를 모두 감안하여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을 여성가족부 장관의 명의로 수여한다.
 - 다섯째,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자격등록, 자격증 발급, 경력 관리 등을 담당한다.

- 보수교육 대상자의 확대와 교육부담 완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등록된 전문상담원 외에 성폭력시설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및 활동가에게도 보수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둘째,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성폭력시설의 보수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종사자의 부담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셋째, 종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보수교육비용 부담을 간접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종사자의 개별 학회활동, 심포지엄 참여 등을 보수교육 시수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양성·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및 평가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며, 선택과목은 본인의 전공과 관심 또는 부족 여부에 따라 선택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양성·보수교육의 실시 후 평가를 의무화하고, 전체 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4 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연구

적용할 수 있는 ‘표준평가틀’을 개발하여 활용하며,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교육생에 대해서는 탈락 또는 재교육을 실시한다.

○ 자격관리의 중장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성폭력 전문상담원은 1급과 2급을 두는 국가자격제도로 한다.
- 둘째, 2급 자격은 양성교육에 의하여 부여하며, 1급 자격은 일정요건을 갖춘 2급 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에 의하여 부여한다.
- 셋째, 기존 양성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한 ‘국가시험 면제제도’를 적용하여 1급 자격 부여토록 한다.
- 넷째, 성폭력 외에 가정폭력, 성매매를 포함하여 (가칭)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과 (가칭) 「여성폭력기본법」을 제정할 것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신변안전의 중장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성폭력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 둘째, 성폭력피해자의 지원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종사자가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지침과 대응매뉴얼의 제작과 배포, 주기적인 위험대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 셋째, 경찰·보안업체의 긴급출동서비스, 신변안전장비와 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넷째, 전문상담원 등 종사자의 법정증인 보호조치와 가해자의 수사재판 과정과 수감, 출소에 대한 안내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 대리의상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기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 둘째, 전문가에 의한 슈퍼비전 지원이 필요하다.

- 소진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성폭력피해자지원 법과 제도, 서비스의 내용을 명시해서 피해자에게 고지한다.
 - 둘째,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슈퍼비전, 프로그램 등 보완체계를 마련한다.
 - 셋째, 종사자의 급여와 승진, 휴식 등 보상체계를 개선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성폭력 관련 표준화된 종사자 양성교육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상담원 교육훈련기관은 민간 자율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양성교육 훈련 체계 및 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양성교육을 수료한 종사자의 질적 차이를 조성하게 되고, 더 나아가 성폭력 업무의 전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성폭력시설 종사자들은 신변위협과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며, 피해자를 위한 상담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소송을 당해 상담원의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의 피해는 성별, 연령, 장애유무, 관계의 특성,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 고통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사건 발생 직후의 위기 개입에서나 피해자의 심리적 위기상황에서 심리상담 뿐 아니라 법률적, 의료적, 복지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자의 역할과 책임은 엄중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친족성폭력이나 아동성폭력에서 법적으로는 비친고죄가 되어 엄중 처벌하는 추세이지만, 현실적으로 친권자인 부모가 동의나 협조를 하지 않는 다거나, 아동 자신이 양가감정 등으로 지원을 원하지 않을 때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성폭력상담원은 상담소 1개소에 3인 정도가 근무하고 있으며, 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원 활동가들이 4~5명 정도 비상근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성폭력 상담소는 163개, 상근 상담원은 466명, 비상근 자원봉사자는 627명이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래로 성폭력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이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성폭력상담소 설치기준이 세워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시

행령을 통하여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탁 교육기관은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의 전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 5개소였다. 이들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대체로 1회 20명으로 한정하였으며, 교육생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교육학, 여성학, 법학,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사회학 등의 전공자였다.

교육과정은 64시간을 기준으로 여성학, 상담학, 성폭력관련 법, 의학, 상담실습, 현장 참관 등이 포함되었으며,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생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였으며 당시 성폭력상담소는 허가제로서 이 교육을 이수한 자가 3명 이상 상근하여야 성폭력상담소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1999년 관련법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교육생의 자격이 2년제 이상으로 전공을 불문하였고, 교육기관은 법인, 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성폭력상담원교육을 상담기관, 대학, 평생교육원, 교회, 성당, 복지관 등 관련단체에서 64시간을 기준으로 주 1회, 주 2회, 주 5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많은 경우 가정폭력상담교육과 병행 실시하여 왔다.

2000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대 여성폭력관련 사안이 여성부로 이관되어 여성부 권익증진국 인권복지과에서 총괄하게 되면서, 상담원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2002년부터 한국가족보건복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 위탁하여 32시간의 숙박교육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2003년에는 여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여 성폭력상담소의 활동 상담원의 경력과 전공, 교육과정과 실시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2005년부터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면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왔다. 2012년도부터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64시간에서 2012년부터 100시간 교육으로 확장되었다.

2012년 현재 성폭력상담원은 교육 100시간을 수료할 경우 여성가족부 인증의 상담원 수료증을 받으며 상담원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교육인원은 대체로 1회 3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교육생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교육과정은 주로 여성학, 상담이론과 실습, 성폭력 관련법, 사례연구 등을 포함하

고 있으나, 교육기관마다 각자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목과 내용, 교육의 수준이 상이하여 교육내용의 중복 우려가 있으며 교육방식은 일회적 특강 형식을 취하고 있어 전문상담원 자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

상담원 보수교육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제시되어 있으나 보수교육이 상담원 자격 유지의 조건은 아니다. 또한 상담원의 자격을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의 수준이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을 수료하도록 되어 있어 상담원 개인의 특성과 자질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가족부의 위임을 받은 여러 기관에서 최소한의 자격조건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양한 대상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상담원의 특성이나 자질에 맞는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격인증제를 도입하여 상담원의 자질을 관리하도록 하며, 학력과 전공, 현장경력 등을 고려하여 상담원 양성과정을 수준별로 두어 보다 전문화되고 자질을 갖춘 상담원을 배출할 필요가 있다.

기존 상담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수련) 및 보수교육 시스템이 미비하고, 100시간의 상담원 교육과정 수료 후에 곧바로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이후의 슈퍼비전을 통한 수련이나 보수교육 수료 등 상담원 자질 유지 및 향상과 관련된 방안은 필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성폭력상담소에 따라서는 운영주체인 법인의 엄격한 자질검증의 일환으로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 상담원으로 투입되기 전에 재교육 및 실습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인적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성폭력상담소 및 운영주체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자질을 갖춘 성폭력상담원 확보를 위해서는 상담원 양성과정이 일회적인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심각하고 복합적인 외상적 사연을 호소하는 성폭력피해자와 주변사람들을 만나 상담과 지원을 하는 상담자들은 보람과 깊은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많이 지칠 수가 있다. 피해자의 고통을 민감하게 공감, 공유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업무적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에 대한 소진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치유방안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상태에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정부위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더하여 성폭력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표준화되고 인증된 교육을 받은 역량 있는 상담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폭력’이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상담원의 안전을 담보하고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함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된다.

가.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분석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 교육, 자격관리, 신변안전 등과 관련하여 유사 상담원과 종사자에 관한 선행연구와 정책동향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상담원, 성매매방지 상담원,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주요 외국의 성폭력상담원의 양성 및 보수 교육과 자격관리 및 신변안전 등을 검토한다.

나.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양성교육, 보수교육, 자격관리, 신변안전 실태 및 요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실태로서 교육 참여자, 교과목, 이수시간, 평가방식, 교육비용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자격관리에 대해서는 상담원 자격소지자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아울러 성폭력 종사자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정책적 제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성교육, 보수교육, 자격관리, 신변안전 등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분석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참여자의 자격, 교과목, 이수시간, 평가방식, 교육비용, 수료자 관리 등에 초점을 둔다.

다.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기관의 실태 및 요구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한다. 또한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이 이상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필요한 요건을 파악하여 분석한다.

라. 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본 연구에서는 정책제언으로써 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교육훈련 시스템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데 교육 참여자 자격, 교과목, 이수시간, 평가방식, 교육비용, 연간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인력 등을 논의한다. 이어서 성폭력 종사자의 자격관리 체계로서 자격증 교부, 수료자 관리 등을 논의하며, 아울러 국가자격화 및 국가시험, 등급제 도입 여부 등의 제도를 함께 논의한다. 필요에 따라서 자격관리 체계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종사자 안전보호 방안으로 제도적 방안, 현장설비 구축, 사업지침 개선 및 법령(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등이 제시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내외 기존문헌 검토이다. 이는 연구내용 중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문제점 도출, 정책제언의 벤치마킹을 위한 것이다.

둘째, 실태조사의 실시이다. 이는 성폭력시설 종사자 자격실태 및 교육요구도 조사,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 교육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의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양성교

육과 보수교육의 교육 참여자 자격, 교과목, 이수시간, 평가방식, 교육비용, 수료자 관리, 신분불안전 실태와 신분안전 요구 등이다. 조사방식은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조사표 4개 유형에 의한 자기기입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 병행)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 시기는 2013년 4~6월에 실시되었다.

성폭력관련 기관 중 지원받는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배포부수 90, 완료부수 62로 완료율은 68.9%이고, 미지원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배포부수 78, 완료부수 46으로 완료율 60.0%로 지원 성폭력상담소보다 8.9% 완료율이 낮았다. 보호시설은 배포부수 20, 완료부수 15로 75%이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배포부수 30, 완료부수 29이고 완료율은 96.7%로 가장 높았다. 양성교육기관은 배포부수 47, 완료부수 24로 완료율 51.1%로 가장 낮았다. 종사자의 경우 전문상담원은 253부, 일반종사자는 110부 완료되었다.

〈표 1-1〉 조사 실시 및 응답완료

(단위: 부, %)

구분	기관				종사자		
	성폭력관련 기관				양성교육 기관	전문상담원	일반종사자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지원	미지원					
배포부수	90	78	20	30	47	-	-
완료부수	62	46	15	29	24	253	110
완료율	68.9	60.0	75.0	96.7	51.1	-	-

셋째, 사례조사이다. 이는 성폭력 종사자 신변 불안전 실태 사례분석과 개별사례에 대한 대처방안 파악 및 적절성 판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넷째, 전문가 FGI와 자문회의 실시이다. 특히,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FGI를 실시한다. 또한 실태조사의 조사표 개발과 조사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제2장 선행연구

제1절 양성교육 관련 선행연구

제2절 보수교육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자격관리 관련 선행연구

제4절 종사자 안전 관련 선행연구



제1절 양성교육 관련 선행연구

대다수의 성폭력상담원은 현재 성폭력 상담관련 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률 제정 초기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구제하는 단순한 방문 및 내담 상담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상담의 대상이나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상담기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이 현재의 성폭력 상담환경과 복지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따른 성폭력상담원을 배출하는 교육과정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박옥임, 2004). 또한 이규은(2006)의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발생률 증가에 따라 자격이 있는 성폭력상담원 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은 10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교육훈련시설 설치·지정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기준 등 현재 상담원 및 종사자 자격부여 및 교육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상담원 양성교육은 양성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미정 외, 2008). 전길양 외(2006)의 연구결과에서는 교육 분야별 평가에 있어 교과목수, 교과목편성, 교육시설 환경 등은 전반적으로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등의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지만 교육시간, 교육과정의 체계성, 강사자질, 양성교육위탁 기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승권 외(2002b)의 연구결과, 현행 실시되는 양성과정 중에서 가장 부적절한 부분으로 지적되는 것은 교육내용 부실과 교육시간 등이었다. 성폭력상담원의 자격기준은 가정폭력 상담원에 비해 그 범위가 넓고, 학력수준은 다소 높았으나, 성폭력상담원이 되기 위한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은 가정폭력 상담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및 아동학대 전문상담원과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

원의 양성과정을 비교하면,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은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표준화된 교과목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나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양성과정은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양성교육기관마다 다른 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어서 상담원 자질에서의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양성기관은 일정기준에 의하고, 여성부의 인정을 받은 기관에 국한되어야 하며, 교육시간의 상향 조정과 향후 통합상담소에 종사하게 될 (가칭)「여성종합상담원」에서 양성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이 교육을 위한 교과목의 표준화와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충분한 실습시간을 포함하여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부적격자에 대하여 탈락시키거나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엄격한 관리 운영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제2절 보수교육 관련 선행연구

성폭력 관련 연구는 1990년대 초에 성폭력이 사회여론화 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운동과 함께 주요 분야로 대두되었다. 관련 법 제정 이후로 법·제도적 연구뿐만 아니라 폭력피해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및 상담인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특히 상담서비스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소진예방을 위해 보수교육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욕구 관련 연구가 수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성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관련 연구는 보수교육 관련 훈련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측면, 그리고 여성폭력시설의 기능·역할 강화 측면에서 다루어지다가, 여성폭력이 증가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자질과 자격관리 측면에서 수행되고 있다(이청자 외, 1993a; 이청자 외, 1993b; 김승권 외, 2002a, 2002b; 박옥임, 2004; 이미정 외, 2008; 김성자 외, 2009; 이미정 외, 2011).

성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관련 훈련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는 상담원의 자질향상 측면에서 성폭력상담원 시범훈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훈련과정은 기본과정과 전문 과정으로 구성되었고 과정 목적부터 일시 및 장소, 참가자 집단의 특성, 훈련내용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상담원 훈련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기본훈련과정은 대상이 상담경력에 있는 정

규상담원으로 기간은 1주 2회로 총 5주 10일간 35.5시간이 운영되며 내용은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 7.5시간, 여성 상담에 대한 이해 3시간, 성폭력상담의 이론과 실제가 18시간, 기타 7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전문훈련과정은 대상이 기본훈련과정을 마친 상담원으로 기간과 내용은 기본과정과 유사하며 시간배분은 기본과정에 비해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 비중이 낮아지고 성폭력상담과의 이론과 실제 비중이 높아진 특성을 보였다(이청자 외, 1993a; 이청자 외, 1993b).

김승권 외(2002a)의 연구결과, 성폭력상담원의 보수교육 참여율은 64.7%로 보수교육 참여수준은 시설 인력정도, 근무환경 및 운영주체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 미참여 이유는 시간부족이 가장 많았고, 정보부족,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이유로 지적되었다. 또한 보수교육프로그램이 상담원의 자질 및 경력에 따라 차등화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주기가 일회성이나 몇 회 등 단기성 성격을 가져서 상담원의 전문성 확보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보수교육 비용분담에서도 시설지원은 약 44%에 불과하고 종사자 비용부담이 높아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수교육과정은 근무기간과 전공분야에 따른 특화실시, 교육기간은 5일 이내 숙박가능토록 구성하고, 교육비용은 전체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승권 외(2002b)는 성폭력 예방 및 관련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성폭력예방프로그램 및 종사자의 업무매뉴얼 개발, 그리고 교육자료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성폭력예방프로그램 개발은 단계별로 접근하여, 1차 예방프로그램은 일반시민과 성폭력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발생 이전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2차 예방프로그램은 피해위험집단과 자해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예방하는 프로그램, 3차 예방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성폭력 업무매뉴얼에는 총론에는 성폭력 개념부터 유형과 대처방법, 성폭력 발생수준, 성폭력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구성되었고, 각론에는 상담원, 의료인, 경찰, 법조인, 교사, 학부모 대상의 업무지침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박옥임(2004)은 그의 연구에서 성폭력상담원의 교육과정 개선방안으로 교육수강 자격 학력 제한이 지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전문성 담보와 기관 간 편차 해소를 위해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모듈 개발, 전문화를 위해 재교육의 심화와 교육대상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측면에서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개

론 및 영역, 성폭력 관련법의 확대와 적용 강화, 심리상담 및 치료 강화, 성폭력상담소 업무와 사업 등이 교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성폭력 상담교육 시간에 대한 차별화를 지적하였다.

이미정 외(2008)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의 하나로 종사자 보수교육을 접근하고 있다. 종사자 보수교육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며 보수교육이 체계화됨에도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력자들이 선호하는 보수교육 방식은 강사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참여자들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축적하는 방식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조직운영 및 행정처리 등의 유용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경향도 높았다. 다른 한편, 지방 종사자는 특정지역에서 실시되는 보수교육의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단위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보수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으로 경력자를 위한 보수교육 개발을 위해 종사자의 영역, 경력 및 교육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되어야 하며 교육방식도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의 교육자원 빈곤 극복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교재 외에 CD 및 동영상보급으로 대체하고, 컴퓨터 및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김성자 외(2009)는 상담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양성교육과정에서의 표준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교육시간을 제외하고 상담원의 자질이 다르고 이는 상담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과정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성과 함께 보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지역 상담원의 보수교육 요구도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기존 보수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상담원의 약 78%가 만족하였으며, 상담업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상담이론 및 기법, 실제 상담사례와 현장실습 등으로 현장상담에 유용한 교육에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보수교육에 불만족한 부분은 반복적인 교육내용과 방식, 전문성 부족, 현장상담과 괴리감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으로 개인적 소진, 업무적 한계, 내담자와의 관계 어려움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재교육 욕구충족으로 학회활동, 학회나 기관에 교육신청, 세미나·워크숍 참석,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 찾기 등을 시도하였다. 보수교육 요구에서 향후 포함되어야 할 과목으로 '사례연구', '피해자 상담기법', '여성주의 상담', '특수사례 연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교육 방식으로는 상담원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안)으로 여성학과 여성운동, 여성주의 상담, 사례연구, 상담 슈퍼비전, 상담원 워크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정 외(2011)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바 있는 보수교육의 실태 및 욕구를 분석하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2010년 총 11개 교육과정을 연간 17회 운영하였으며, 일반과정, 전문 과정,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별·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실시결과 만족도는 교육내용이 4.38점, 교육전반이 4.29점, 강사만족도가 43.36점으로 대체로 높았다. 2011년에는 상담원 소진에 초점을 맞추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실태조사결과 종사자의 보수교육 미참여 이유로는 대체인력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보수교육의 실시를 희망하는 시설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가장 많았고, 여성가족부 및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등도 지적하였다. 보수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교육기관이 중앙에 편중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물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방의 경우는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수교육 내용이 대상별, 집단별로 차등화,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방법이 강의위주로 참여식 수업을 통해 토의와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안으로 상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공,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참여식 교육방법의 활용, 교육훈련기관 선정 관련 법적 근거 제공, 국가공인자격증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3절 자격관리 관련 선행연구

장영순(2009)의 연구에서는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상담소장, 상담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상담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첫째,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 이상에서 심리학·교육학·여성학·사회학·사회복지학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학문을 전공한자,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등이라고 하였다. 김승권 외(2002a)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

중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86.4%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상담원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정폭력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93.8%가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의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은 98.7%”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동임(2007)의 연구결과 “성폭력상담원의 자격규정 및 자격요건 강화 방안”에서는 성폭력상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격요건을 강화를 위해서는 「상담원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상담원이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한 후 사후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 자료를 마련하고, 평가를 한 후에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상담원으로서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박옥임(2004)의 연구에서는 현행 성폭력상담원 교육수강 자격 학력 제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원 수강 자격에 있어서 가정폭력 상담원처럼 학력제한에 대한 규제를 성폭력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자에 대해서만은 학력을 완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실제적으로 상담현장에서 경험 있는 활동가에게도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 수강기회를 제공하여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사회의 열린 의식과 부합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등은 모두 등급을 1,2,3급으로 설정하여 전문성을 심화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전문성 관리를 위해 관리기구를 두고 있다(진미정 외, 2006).

제4절 안전 관련 선행연구

1. 신변안전 관련 선행연구

김성희(2003)는 조사당시 전체 139명의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 중 직접 사례에 개입하고 있는 전국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 중 최종 응답자인 96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상담원들의 지각된 신변안전 인식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91.7%의 상담원들이 업무 수행 시 자신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성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심리적 위협을 당한 경우도 78.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변 안전에 대한 위협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직을 고려해 본 경우도 60.4%나 되었다. 직무의 위협성과 관련한 보수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93.8%의 상담원들이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시 상담원들은 본인의 보호 상태가 위협에 대비해 매우 불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 현장조사 시 89.6%의 상담원들이 휴대하는 보호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관 내 경호시설 또는 보호 장치 역시 대부분 구비되어 있지 않고, 또는 갖추어져 있긴 하지만, 실제 활용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내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퇴근(6시) 이후 당직 및 숙직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찰과의 응급연락망 체계 구축, 경보시스템, 청원경찰 배치, 센터 내 폐쇄회로·인터폰 설치, 협박에 대비한 녹취기능 강화, 차량 등 센터 내 물품의 안전점검, 비상계단·비상구 마련, 센터 출입문 보안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변보장에 대한 상담원들의 의견으로 아동복지법 재개정을 통한 법적인 근거 확보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다음으로는 상담원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도구 및 장비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위험수당 및 상해보험에 대한 조처 등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는 인원충원에 대한 요구 등이 있었다.

둘째, 41세 이상의 상담원들이 21-30세의 상담원들보다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관련 전체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인 상담원들이 1년 미만의 상담원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셋째, 41세 이상의 상담원들이 20-30대의 상담원들보다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이직을 고려해 본 정도가 더 높았다. 센터 근무연수는 2년 이상 근무한 상담원들이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상담원들보다 이직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해 보았으며, 사회복지관련 전체 근무연수에서는 3년 이상~5년 미만으로 근무한 상담원들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상담원들보다 이직을 고려해 본 경우가 더 많았다.

넷째, 41세 이상의 상담원들이 21~30세의 상담원들보다 직무의 위협성과 관련하여 보수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과장이상, 소장의 직위에 있는

상담원들이 일반상담원이나 선임상담원/팀장의 직위에 있는 상담원들보다 현재의 보호 상태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또한 월 평균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상담원들이 100만원 미만인 상담원들에 비해 현재의 보호 상태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이(2007)는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물리적 신변안전 환경 관련 실태 및 개선책을 알아보고자 민간보육시설 교사 13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제 위협을 경험한 8명을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했다.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신변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서 신변안전을 위협받는 시간대는 저녁당직 시, 위협받을 수 있는 장소로 현관, 해결주체로 여성가족부를 높게 인식하였다. 특히 신변안전을 위해 비디오폰 설치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이 보완됨으로써 교사들의 정서적 안정감은 높아지며, 이에 따라 보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신은혜(2011)는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중앙을 포함한 전국의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 폭력에 의한 신변안전위험 실태를 연구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클라이언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전체 평균값이 4.26점(5점 척도)으로, 응답자들이 클라이언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들이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후 느낀 정서적 반응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값이 3.61(5점 척도)로, 역시 높은 편이었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클라이언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환경 변수의 이직의사, 기관장급, 상사 및 동료의 지지, 역할과중 등이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클라이언트 폭력의 발생 시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특성 변수의 내재화 전략, 외재화 전략, 회피 행동, 성별, 학력과 업무환경 변수의 역할과중, 이직의도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분석에서 각 변수별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특성 변수의 성별과 업무환경 변수의 이직의사인 것을 알 수 있고, 클라이언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클라이언트 폭력의 발생 시 정서적 반응에 중복해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이직의사와 업무과다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우려를 예방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에게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및 치료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전문상담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근무하는 업무환경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상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세분화된 안전 및 위험대처 매뉴얼 개발과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상담원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 기준지침과 장비마련을 위한 정부의 비용보조 정책이 지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상담원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전면적인 아동학대 관련법 재개정을 통한 법적 강화가 필요하다.

2. 종사자의 대리외상관련 선행연구

김보경(2012)은 성폭력, 성매매 피해 내담자를 돕는 상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리외상과, 그로 인한 외상 신념 및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아동기 외상 경험이 현재 상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외상 신념 수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수준과 정적인 상관을 보여, 상담자의 과거 외상 경험이 현재의 대리외상으로 인한 외상 신념 및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이 있다. 둘째, 상담자의 연령, 교육 수준, 근무 경력 및 아동기 외상 경험 유무와 대리외상으로 인한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령과 아동기 외상 경험이 상담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대리외상으로 인한 충격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외상 신념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대리외상 경험이 상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와 타인, 세상에 대한 외상 신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수준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외상 신념이 상담자의 대리외상 경험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변인이며, 내담자의 외상 경험에 공감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대리외상으로 인한 부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외상 상담자가 경험하는 대리외상의 증상과 정도를 지각하고 이에 적절히 개입하는 것은 소진, 공감 피로와 같이 외상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상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미선(2012)은 미술치료사 훈련과정 중인 자 또는 미술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180명을 대상으로 미술치료사의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대리외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사의 대리외상 수준은 중하수준이었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수준은 중간이상 수준이었으며, 사회적지지 수준은 중간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수준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술치료사의 전문적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미술치료사의 대리외상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은 각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넷째, 미술치료사의 스트레스 대처 중 소망적 사고는 대리외상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과 스트레스 대처 중 사회적 지지 추구는 대리외상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미술치료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기효능감은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며, 소망적 사고를 줄이고, 자신감과 사회적 지지 추구를 통해 대리외상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손지연(2012)은 미술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12명의 치료사를 대상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통해, 대리외상 경험과 변화는 어떠하며, 경험한 대리외상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술치료사들은 치료과정에서 대리외상 경험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유사한 증상 및 여러 형태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리외상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치료사 자신의 개인분석, 사례회의 등 그림으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재충전하고 신체적 운동을 시도함으로써 대리외상을 줄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지은(2013)은 대학생 85명을 대상으로 외상 경험에 대한 시각적 심상과 외상 경험에 대한 반추, 외상 후 분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직접외상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 연구와 간접외상 경험에 대한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외상 경험에 대한 시각적 심상이 생생하고 강렬할수록, 외상 경험에 대해 반추를 많이 할수록, 외상 후 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직접외상 경험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매체를 통한 간접외상 노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돼 있지 않아 간접외상 노출의 영향에 대해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간접외상 자극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결과, 간접외상 자극에 대한 시각적

심상이 생생하고 강렬할수록 이에 따른 외상 후 분노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상 자극이 주어진 직후 이에 대해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참여자들과 반추 없이 통제 과제를 진행한 참여자들이 유의하게 다른 분노 수준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각적 심상이 비록 간접외상 자극이라고 하더라도 외상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며, 동시에 외상 자극에 대하여 인지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외상 정서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외상 사건이 발생하거나 외상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시각적 심상이 생생하고 강렬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나 외상 후 분노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직접외상 경험과 간접외상 경험 모두에서 실제 시각적 자극보다 참여자의 시각적 심상이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은 시각적 심상이 정서와 정신 병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외상 경험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시각적 심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둘째, 외상 경험에 대하여 반추를 많이 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것은 반추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대조적으로 외상 자극 직후에 의도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반추는 외상 후 분노 수준을 유의하게 낮춤으로써 반추의 긍정적인 영향도 보여주었다. 이는 심리치료 장면에서 불가피하게 외상 경험에 대하여 반추하도록 하였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야 할 반추 경향성과 촉진해야 할 반추 경향성을 확인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외상 후 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역시 심각하였다. 외상 후 분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기존의 외상 치료에 시각적 심상을 더욱 중요하게 다룰 필요성을 보여 주었다.

3. 종사자의 소진관련 선행연구

이광숙(2009)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아동학대예방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권을 가지고 아동학대사태의 신고 및 조사, 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안전과 가족보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소진에 대한 연구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특히 상담원의 소진이 클라이언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

며, 상담원의 소진 그 자체가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지각하는 소진의 정도는 응답자의 소진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정서적 탈진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개인적 성취감 감소,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격화를 들었다. 둘째, 상담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소진관계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소진에 관한 인식정도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정서적으로 더 탈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에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정서적 대처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변안전과 클라이언트에 관한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문제가 심각하며 그로 인해 개입하기가 힘들다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클라이언트 인식과 신변안전, 정서적 탈진과 업무스트레스, 클라이언트 비인격화와 정서적 탈진 사이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스트레스와 신변안전, 업무스트레스와 클라이언트 인식, 정서적 대처와 문제해결 사이에서도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스트레스가 가중될수록 소진되었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문제해결 및 정서적 스트레스대처가 높아질수록 소진에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소진에 영향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특성보다는 업무스트레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중요한 변수이며,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서적 탈진, 클라이언트 비인격화가 높아지며 개인적 성취감 감소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학대예방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상담원의 업무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권선덕(2000)이 서울시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2000년 10월과 11월에 소진정도를 측정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소진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이나 사회복지 근무연한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특성 요인 중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업무인식은 소진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역할 인식이 명확할수록 소진도는 낮았다. 또한 보상시스템의 승진도 소진도에 직접 영향을 미쳐 승진

체계가 공존하면 소진도 또한 낮아졌다. 셋째, 개인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 소진도에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넷째,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역시 소진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보다 소진도에 영향을 더 미치고 있었다. 다섯째, 역할갈등과 자율성은 소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라는 매개요인을 통해 소진도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복지사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칭찬과 감사, 용기, 따뜻한 배려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사들이 소진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그들의 소명의식을 키우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제5절 시사점

성폭력관련 연구는 1990년대 성폭력이 사회여론화 되고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제도 연구부터 서비스전달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과 자격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선행연구는 전문상담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보수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시설 종사자의 자질과 자격관리 측면이 다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검토결과가 본 연구를 위하여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한다.

첫째,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 또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양성교육기관에 따라 양성교육의 결과가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전문상담원의 질적 저하 또는 질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인증 또는 위탁에 의하여 양성교육기관이 지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양성교육의 시간, 교육과정의 체계성, 강사의 자질, 양성교육기관 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재검토는 성폭력 발생률의 증가에 따라 성폭력상담원의 충분한 확보와 자질 향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양성교육 결과의 질적 담보를 위해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양성

교육을 실시한 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고, 교육효과가 없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재교육 또는 탈락의 엄격한 심사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자질 및 전문성 담보를 위해 자격관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종사자의 자격관리 강화 측면에서 보수교육 관련 연구는 전반적인 교육·훈련시스템 틀 내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보수교육은 가정폭력·성폭력시설의 기능강화 측면에서 수행되거나, 관련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의 하나로 보수교육을 접근하였다. 최근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자격관리 강화 측면에서 보수교육의 실효성 및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양성 교육 직후 상담원의 자질 및 자격담보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자격화와 관련하여 교육체계 전반에 걸쳐 수행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다섯째,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 측면에서 보수교육의 참여와 효과는 중요한 요인인 바, 종사자특성 및 기관유형별로 보수교육 참여수준과 장애요인, 그리고 프로그램 및 수행방식 등에 관한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상담원 중심의 단편적인 보수교육 실태와 욕구 파악만이 이루어져서 종사자유형 및 기관 특성별로 다양한 문제점과 욕구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보수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 효과 평가와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수행된 연구는 보수교육의 문제점 및 욕구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었다. 보수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편적인 측정에 불과하여 보수교육기관과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수교육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개발과 이에 근거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계량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일곱째, 신변 불안전, 대리외상, 소진 등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이 조속히 요구된다. 이는 폭력관련 업무의 특성과 인간을 상담업무의 특성상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불안정한 근무환경은 예견하였지만 이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있음은 문제가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불안과 불만은 서비스의 질(질)을 낮출 염려가 있으므로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인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신변안전, 대리외상 및 소진의 예방 및 치유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제3장 국내·외 정책동향

제1절 양성교육 관련 정책동향

제2절 보수교육 관련 정책동향

제3절 자격관리 관련 정책동향

제4절 안전 관련 정책동향



3

국내외 정책동향 <<

제1절 양성교육 관련 정책동향

1. 국내 정책동향

가.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관련 법적 근거

1) 양성교육 내용

성폭력상담원 교육이수시간은 총 100시간이며 각 분야별 교과목과 이수시간으로는 소양분야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외 2과목에 15시간, 전문분야 I은 성폭력의 이해 외 5과목에 30시간, 전문분야 II는 상담 원리와 기법 외 3과목에 35시간, 전문분야 III은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 실습 등 20시간으로 되어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1〉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양성교육 과정별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

교육 분야	교육과목	이수시간
소양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성폭력의 개념과 특징의 이해여성인권과 폭력행정실무(문서작성 및 회계 등)	15
전문분야 I	<ul style="list-style-type: none">성폭력의 이해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법률구조실무(수사절차의 이해 포함)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피해자 등 의료지원 실무	30
전문분야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담심리개론상담 원리와 기법상담의 기법과 프로그램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대상별 상담과정	35
전문분야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역할연습 등	20
총계		100

자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2) 양성교육 기간 및 방법

양성교육 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1일 강의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 이수시간은 1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교육방법으로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분야 III의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에서의 실무실습이 1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밖에 교육훈련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양성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2>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양성교육 강사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또는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성폭력 방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나.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관련 법적 근거

1) 양성교육 내용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이수시간은 총 100시간이며 각 분야별 교과목과 이수시간으로는 소양분야에 가족복지 및 정책 외 3과목에 15시간, 전문분야 I에 가정폭력의 이해 외 4과목에 30시간, 전문분야 II에 상담심리개론 외 3과목에 35시간, 전문분야 III에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 등 20시간으로 되어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3〉 가정폭력 상담원의 양성교육 과정별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

교육 분야	교육과목	이수시간
소양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복지 및 정책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 여성인권과 폭력 	15
전문분야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의 이해 •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 법 • 법률구조실무 • 법적 절차 및 대응 • 의료지원 실무 	30
전문분야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심리개론 •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대상별 상담과정 	35
전문분야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 • 역할연습 	20
총계		100

자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2) 양성교육 기간 및 방법

가정폭력 상담원의 양성교육 기간 및 방법은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동일하다.

3) 양성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은 〈표 3-4〉와 같다.

〈표 3-4〉 가정폭력시설 종사자의 양성교육 강사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 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가정폭력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5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 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다. 성매매방지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 관련 법적 근거

1) 양성교육 내용

성매매방지 상담원 교육이수시간은 총 150시간이며 각 분야별 교과목과 이수시간으로는 소양분야 여성정책 외 2과목에 10시간, 전문분야(이론)는 성매매 관련 법 및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 외 3과목 25시간, 전문분야(실무)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법률, 보건, 심리·정서적 상황 등) 외 9과목에 55시간, 관련 기관 방문과 성매매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서의 실습 50시간으로 되어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성매매상담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5〉 성매매방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양성교육 과정별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

교육 분야	교육과목	이수시간
소양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 • 여성복지 • 여성학 	10
전문분야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관련 법 및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 • 성매매에 대한 이해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 관련 법·정책 • 여성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이해 	10
전문분야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법률, 보건, 심리·정서적 상황 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지원 실무(수사절차의 이해 포함) • 의료지원 실무 • 여성주의 상담 • 상담기법 및 프로그램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원 소진 예방 • 상담원의 윤리 및 자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례 연구 및 상담원 자기성장훈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자활,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실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실무(문서작성, 회계 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관 방문과 성매매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서의 현장실습 	50
총계		150

자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2) 양성교육 기간 및 방법

양성교육 기간은 4주로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20% 범위에서 교육훈련 과목별 이수 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양성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

성매매상담원 양성교육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라. 타 분야 양성교육 법적 근거와의 비교

양성교육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강가정사의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고, 성매매방지 상담원의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2에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의 업무로 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이 규정되어 있

다.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가정폭력 상담원, 사회복지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임상심리전문가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양성교육 신청 및 응시 자격으로 성폭력상담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가정폭력상담원의 양성교육 신청 및 응시자격은 성폭력상담원과 동일하다.

성매매방지 상담원의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의 상담원 자격요건 개별기준을 충족한 자, 성매매방지시설 설립준비자, 여성폭력방지기관 종사자 및 근무 경력자라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6주 과정의 경우 8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재직 공무원(기능직 공무원 포함)으로 과정수료까지 재직자에 한한다. 12주 과정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서 면접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 경력이 있는 재직자 또는 경력자이다. 건강가정사의 신청자격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육 위탁기관에 제시되어 있는 기관 및 학교에 입학한 자라고 할 수 있다. 임상심리전문가는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의 감독 하에 3년(박사는 2년)의 수련을 마친 자라고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과목 편성은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경우 소양분야에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의 이해 등 4과목 15시간, 전문분야 I에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등 5과목 30시간, 전문분야 II에 상담심리개론, 상담 원리와 기법 등 5과목 35시간, 전문분야 III에 상담 원리와 기법, 역할연습 등 20시간으로 총 4개의 교육 분야이다. 가정폭력 상담원의 양성교육 교과목은 <표3-3>, 성매매방지 상담원의 양성교육 교과목은 <표3-5>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사는 과정별로 교육시간이 다른데 공무원 6주 과정(전·후반기 구분 없이 개설)에 전공필수과목은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등 10과목이며, 전공 선택

은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등 19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고, 기타 과목에 회계실무, 상담 기법 등이 있고, 현장실습도 병행한다. 종사자 12주 과정(전·후반기 구분 없이 개설)의 교과목편성은 전공필수, 전공 선택, 기타과목, 현장실습의 경우 과목 편성은 6주과정과 동일하지만 전공 선택의 경우 12주 과정에서는 4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사의 경우 핵심과목으로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에 11과목 중 5개를, 관련과목에 기초이론은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28개 과목 중 4개를 이수해야 한다. 상담·교육 등 실제에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등 26과목 중 3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경우 기본교육에 아동복지의 기본가치 이해, 아동복지법의 이해 등 5과목을 32시간, 초기조사와 사례계획, 위기 개입 등 4과목 32시간, 아동 학대와 방임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 통합적 접근방법 16시간으로 총 8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전문교육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와 개입방법 8시간, 학대 유형별 상담사례 실습 12시간 총 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임상심리전문가는 기초과목에 성격심리학, 인지 및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임상심리학 연구방법론이 있으며, 임상과목에 정신 병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 과목으로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기간 및 방법으로 성폭력 전문상담원, 가정폭력 상담원, 성매매방지 상담원,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모두 양성교육 실시기관에 따라 양성교육 기간 및 운영방법이 다양하다.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가정폭력 상담원의 교육기간은 3주 이상이어야 하고, 강의 시간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20%의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정폭력 상담원은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교육 기간과 방법이 동일하다. 성매매방지 상담원의 양성교육 기간은 4주로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6주 과정은 총 210시간으로 주 5일은 이론교육, 매주 토요일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12주 과정은 총 420시간이고, 진행방법은 6주 과정과 동일하다. 임상심리전문가의 경우 교육의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취득과정에 3년간의 수련 심사 후 필기 및 면접시험에 응시가능하다.

양성교육 강사자격으로 성폭력 전문상담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7호(제

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또는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성폭력 방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1인이 3과목 이상 강의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매 교육기간별 강사의 인적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정폭력 상담원은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동일하다. 성매매방지 상담원의 양성교육 강사자격은 <표3-8>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강사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전문 인력을 활용하며 강사자격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실습지도자의 자격만 명시되어 있다. 실습지도자는 해당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사회복지사 2급 자격 소지자는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이며, 건강가정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강사자격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관련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한다.

임상심리전문의의 강사의 경우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의거 하여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과 동일하다. 석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의의 지도하에 3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친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의의 지도하에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친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취득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의의 지도하에 1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의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혹은 교육경력을 갖추고 자격심사위원

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1~4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위탁·지정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성폭력상담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법률구조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그리고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상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있다.

사회복지사 교육훈련기관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을 명지대학교와 경남정보대학으로 지정하였다. 건강가정사의 경우 양성교육훈련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건강가정사 및 관련 이수과목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이다.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00시간 기본교육 외에 필요한 과목이 있을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요청하여 실시하고 있다. 임상심리전문가의 경우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인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42 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연구

〈표 3-6〉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양성교육체계 비교 1

양성교육	전문상담원 ¹⁾	사회복지사 ²⁾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없음
신청 및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8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이상,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재직 공무원(기능직 공무원 포함) • 12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졸이상 학력자로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서 면접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 경력이 있는 재직자 또는 경력자
교과목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종 교육과정(소양분야, 전문분야 I, 전문분야 II, 전문분야 III) • 14개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 -여성인권과 폭력 -행정실무(문서작성 및 회계 등)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법률구조실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주 과정(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필수(10개):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등 -전공 선택(19개 교과목 중 2과목 이상):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등 -기타 교과목: 회계실무, 상담기법 등 • 12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필수(10개):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등 -전공 선택(19개 교과목 중 4과목 이상):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등 -기타 교과목: 6주 교과목과 동일 • 현장실습
교육 기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3주 이상 -강의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주최기간에 따라 기간 및 주기가 다양함 • 교육방법: 집합교육(숙박 또는 비숙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 6주 과정(공무원): 210시간(주5일, 현장실습 매주 토요일) - 12주 과정: 420시간(주5일, 현장실습 매주 토요일) • 현장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주 과정: 주 1회(7시간)×5주⇒총 35시간 -12주 과정: 주 1회(7시간)×10주⇒총 70시간 • 실습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주 과정: 월 2회(4시간) × 1.5개월⇒총 6시간 -12주 과정: 월 2회(4시간) × 3개월⇒총 12시간
교육 강사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7호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 등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자 • 의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 성폭력 방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자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 등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사회복지 관련 전문 인력 • 실습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 1급 :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2급 :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교육 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3-10>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유형 및 설치·지정 기준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지대학교 • 경남정보대학

자료: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2) 경남정보대학(2013), 「2013년도 사회복지사양성과정 운영계획서」.

〈표 3-7〉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양성교육체계 비교 2

양성교육	건강가정사 ¹⁾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²⁾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가정기본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법 제55조
신청 및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위탁기관에 제시되어 있는 기관 및 학교에 입학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근거 없음
교과목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과목(5), 관련과목(7):기초이론(4), 상담교육 등 실제(3) 60여 가지 교육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가정론 -건강가정현장실습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가족과 젠더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 치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교육(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의 기본가치 이해, 아동복지법의 이해 등 (32) -초기조사와 사례계획, 위기개입 등(32) -아동 학대와 방임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 통합적 접근방법(16) 전문교육(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와 개입방법(8), 학대 유형별 상담사례 실습(12)
교육 기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간: 1학기 이상 교육방법: 집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간: 연 1~2회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 강사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가정 분야 전문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분야 전문 인력
교육 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취득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료: 1)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2) 여성가족부(2010),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 아동복지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44 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연구

〈표 3-8〉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양성교육체계 비교 3

양성교육	가정폭력 상담원 ¹⁾	성매매방지 상담원 ²⁾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2(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신청 및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의 상담원 자격요건 개별기준을 충족한 자 • 성매매방지시설 설립준비자 • 여성폭력방지기관 종사자 및 근무 경력자
교육과정 및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종 교육과정(소양분야, 전문분야 I, 전문분야 II, 전문분야 III) • 15개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복지 및 정책 -여성학 · 여성복지 및 정책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가정폭력의 이해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상담심리개론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종 교육과정(소양분야, 전문분야(이론), 전문분야(실무), 실습) • 18개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 -성매매 관련 법 및 정책 · 제도에 대한 이해 -자활 관련 법 · 정책 -법률지원 실무(수사절차의 이해 포함) -여성주의 상담 -상담사례 연구 및 상담원 자기성장훈련 -관련 기관 방문과 성매매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서의 현장실습 등
교육 기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3주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월(연 2회) •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 강사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 · 사회학 · 심리학 · 법학 · 가정관리학 · 의학 · 간호학 · 교육학 · 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가정폭력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5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 · 사회학 · 심리학 · 법학 · 가정관리학 · 의학 · 간호학 · 교육학 · 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없음
교육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자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표 구성 (<http://www.stop.or.kr/>).

〈표 3-9〉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양성교육체계 비교 4

양성교육	임상심리전문가 ¹⁾
법적근거	• 법적 근거 없음
신청 및 응시자격	•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의 감독 하에 3년(박사는 2년)의 수련을 마친 자
교육과정 및 교과목	• 기초과목: 성격심리학, 인지 및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임상심리학 연구방법론 • 임상과목: 정신 병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
교육 기간 및 방법	• 교육기간: 수련생 등록 후 3년간의 수련 심사 후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응시 가능 •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 강사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하에 3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친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하에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친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취득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하에 1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의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혹은 교육경력을 갖추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위의 각 항에서 규정한 임상심리학 전공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과목을 3과목 9학점 이상,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을 1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수련위원회에 대학원 성적표를 제출하여 이수과목의 적절성을 인정 받은 경우에 한한다. 유사과목일 경우, 수련위원회에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고급 임상심리학, 정신 병리학, 심리진단(또는 심리평가), 심리치료, 임상실습, 신경심리평가, 행동평가 등.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심리통계, 실험설계, 자료 분석, 중다변인분석법 등.
교육위탁기관	• 한국임상심리학회

자료: 1) 한국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표 구성(<http://www.kcp.or.kr/>).

〈표 3-10〉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유형 및 설치·지정 기준

구분	운영기관 유형 및 기준
교육훈련시설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기술대학, 각종학교 • 법률구조법인·사회복지법인 •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지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시설에는 강의실, 실습실, 교수 연수실,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은 교수 연구와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은 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체 강의실만으로 교육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에 적합한 다른 장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교육인원 1인당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화장실·급수시설·소방시설·방음장치·채광시설·환기시설·냉난방시설·조명시설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자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참조하여 표 구성.

2. 국외 정책동향

가. 미국

미국 주요 기관의 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캘리포니아 연합, 텍사스 협회, 로드아일랜드 연합, 아칸소 연 합, 콜로라도 연합, 플로리다 연합, 조지아 네트워크, 켄터키 연합, 오레곤 성폭력 대책 위원회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들 기관에서의 종사자 교육의 내용으로 교육기관, 대상자, 교육과정 및 교과목, 교육비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장소 등을 파악하였 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1〉 미국 성폭력관련 종사자 정책동향 1

구분	캘리포니아 연합 ¹⁾	텍사스 협회 ²⁾	로드아일랜드 연합 ³⁾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Californi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xas Association Against Sexual Assau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Rhode Island Sexual Assault Coalition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간위기센터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피해자 옹호자, 상담, 형사사법 및 일반 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장-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의 개요 -차별과 탄압 -아동 성적 학대 -청소년 성폭행 / 성적학대 -위기 개입 -의뢰 수단 및 방법 II장-지역사회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 대응 -의료 -법률 집행 -소송과 재판 -통계 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코올 및 약물 성폭행 -피해자의 권리 -신고처리절차: 피해자 연락처 강간 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범죄자의 내계(The mind, 마음속의 세계) 약물 성폭행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 : 믿음의 배신 의사소통 및 인지 장애 피해자와의 인터뷰 장애인 성적 학대 우리들 속의 사이코패스 (Psychopaths Among Us) 노인 성폭행 성희롱 여성 성범죄자 성폭력의 거짓과 진실 청년 성폭력 문제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문제 윤리 인신 매매 약물중독 생존자와의 작업 (Working with Addicted Survivors) 스토킹 & 사이버스토킹 워킹 더 워크(Walking the Walk): 성폭행 인식 훈련(A Sexual Violence Awareness Exercise)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성적 학대 다문화 문제 및 성폭력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 레이더망 밖에서의 따돌림 (BULLYING BELOW THE RADAR), 노상성희롱 (Street Harassment), (직장 내에서)성희롱과 성폭력의 연속 주변인(목격자, 방관자)개입 (Bystander Intervention): 성폭력 예방 전략 패널 토론 및 사례연구: 10대의 사실폭로에 관한 문제들
교육비용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 각 워크숍 당 \$30.00
교육시간	• 40시간	(알 수 없음)	• 36시간
교육방법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일 오후6~9시 하루 3시간씩 교육
교육장소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 훈련시설

자료: 1) The Californi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표 구성(<http://www.rapetraumaservices.org/>); 2) Texas Association Against Sexual Assault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표 구성(<http://www.taasa.org/>); 3) Rhode Island Sexual Assault Coalition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표 구성(<http://www.dayoneri.org/>)

〈표 3-12〉 미국 성폭력관련 종사자 정책동향 2

구분	아칸소 연합 ¹⁾	콜로라도 연합 ²⁾	플로리다 연합 ³⁾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kansas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lorado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Florida Council Against Sexual Violence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사, 경찰 및 경찰 감독자, 강간위기센터 직원 피해자 지원 아카데미, 노스웨스트 아칸소 여성의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
교육과정 및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 대학교 학생 -사실 지역사회의 법의학 간호 경찰 및 경찰서 -고급(반) 성폭력(Advanced Sexual Assault) -성폭력 수사 -성폭력 수사 및 대응 -트라우마의 신경 생물학 (Neurobiology of Trauma) -강간문화(Rape Culture)/약물 및 알코올 성폭행 강간위기센터 직원 -옹호 교육 -윤리 및 비밀보장 피해자 지원 아카데미 -기본 및 고급(반) 성폭력 (Basic and Advanced Sexual Assault) 노스웨스트 아칸소 여성의 쉼터 -성폭력 옹호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행 101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본옹호 스토킹과 성폭력 사이의 교차점 성폭력의 예방 친밀한 사립(과거현재 배우자 등 Intimate Partner)에 의한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조사: 피해자와의 작업 -성폭력 트라우마에 의한 반응 -강간 피해자 이해 -피해자의 권리와 법률 법률 집행과 검사 (Law Enforcement and Prosecutors): 수많은 성적 사건 승소를 위한 공동작업 -조사의 요소 -까다로운 사건의 증거 -법의학 시험 및 독물학 기록 (Forensic Exams and Toxicology Reports) -프리텍스트콜(Pretext Calls) -윌리엄스 규칙 및 브래디 증거(Williams Rule and Brady Evidence) -성공적인 기소 및 사건 기각
교육비용	(알 수 없음)	• 무료	(알 수 없음)
교육시간	• 하루(예: 5월 9일, 오후1~2시, 5~7시, 오전8:30~4:30 등)	• 연 2회	(알 수 없음)
교육방법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교육장소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자료: 1) Arkansas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표 구성(<http://www.acasa.us/events.html>);
 2) Colorado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표 구성(<http://www.ccasa.org/>); 3)
 Florida Council Against Sexual Violence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표 구성(<http://fccasv.org/>).

〈표 3-13〉 미국 성폭력관련 종사자 정책동향 3

구분	조시아 네트워크 ¹⁾	켄터키 연합 ²⁾	오레곤 성폭력 대책 위원회 ³⁾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orgia Network to End Sexual Assau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Kentucky Association of Sexual Assault Progr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Oregon Sexual Assault Task Force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사, 법집행 임원, 옹호자, 검찰관 및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제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옹호자(Advocate)
교육과정 및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 성폭력 수사법 집행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사건의 단서 개발(Lead development) -피해자 인터뷰 -용의자 인터뷰 -사건 파일 개발 -법정 증인 -증거 사정 등 기본 법 집행 교육: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과 강간의 합법적 정의 -가해자의 강간 위인의 복잡성 -폭행 피해자의 생각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명세 -성폭력 후유증 : 장·단기적 의료/신체적, 사회적, 재정적, 심리적 영향 -성폭력 공개/보고를 위한 챌린지 (Challenge of disclosing/reporting sexual assault) -2차 피해 (Secondary victimization) -조사 과정 -피해자와 상담하기 위한 팁 -증거 수집: 증거의 종류, 사진증거, 상해, 폭력 -법률 집행 법적 책임 -거짓과 고정 관념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대응팀의 기본원칙 법률 / 의료 시험 범죄 실험 과정 약물 성폭행 성병 감염 정형손상 (Patterned Injuries¹⁾) 과 사진 성범죄에 대한 켄터키 법률 옹호의 기본원칙 경찰관의 역할 강간의 공동 대응 사생활 및 비밀보장 문제 기소 및 공판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역학관계 (Sexual Assault Dynamics) 피해자 충격 효과적인 옹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법 피해자 책임전가 문화적 능력 ~을 위한 옹호(Advocating for Survivors of) -인신 매매 피해자 -장애인 피해자 -청소년 피해자 -성범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 및 체제 변호 • 의료 대응 및 변호 • 형사 사법 대응 • 피해자의 권리와 형사 사법 • 민사 법적제재 • 지속적인 변호 • 문서화 및 비밀보장 •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이민자 및 난민자 • 성폭력 지해자로서의 성소수자 (LGBTIQ)
교육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 성폭력 수사법 집행 교육: 2일 무료 기본 법 집행 교육: 1일 무료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교육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 오전8~오후 5시까지 실시 	(알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시간
교육방법	(알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4일(오전8시~오후5시) 	(알 수 없음)

자료: 1) Georgia Network to End Sexual Assault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표 구성(<http://gnesa.org/>); 2) Kentucky Association of Sexual Assault Programs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표 구성(<http://www.kasap.org/>); 3) Oregon Sexual Assault Task Force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표 구성(<http://oregonsatf.org/>).

1) 부검용어임. 정형손상(定型損傷) patterned injury → 본뜬 손상: 물체의 모양을 알 수 있는 상처.

제2절 보수교육 관련 정책동향

1. 국내정책 동향

가. 성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정책

1) 보수교육 관련 법적 근거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두고 있다.

제20조 1항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0조에 근거한 보수교육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보수교육 내용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와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과정, 전문 과정, 고급과정 등 3개 과정, 5개 개설강좌에 총 28개교과목으로 구성된다.

일반과정에는 상담실무자과정으로 8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전문과정은 3개 영역의 개설강좌로 피해자 프로그램, 행위자 프로그램, 상담전문가 과정으로 편성되며, 피해자 프로그램은 5개 교과목, 행위자 프로그램은 6개 교과목, 그리고 상담 전문가 과정은 5개 교과목으로 총 16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고급과정은 상담사례연구로 총 4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교과목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3-14〉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

교육과정	개설강좌	교육내용(과목)
일반과정	상담실무자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이론 • 상담구조화 •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 상담원의 소진예방·자기치유 • 피해자 의료 지원 • 피해자 수사 및 법률 지원 • 피해자 지원 연계체계 • 성폭력 관련 법제
전문 과정	피해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프로그램 목적과 구성 • 관계형성 •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 • 피해자의 문제해결중심 접근
	행위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상담의 형식과 내용 • 행위자 상담 모델과 배경이론 • 알코올 상담 • 자기통제 기술 • 대인관계 기술 • 의사소통 기술
	상담 전문가 과정 (장애인·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성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 폭력노출아동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의 적용 • 아동 성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 폭력피해 수사·재판 실무
고급과정	상담사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 (집단)상담 실습 • 역할연습 • 워크숍

자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3) 보수교육 기간 및 방법

보수교육 기간은 2일 이상이며, 보수교육 방식은 숙박 또는 비숙박의 집합교육을 원칙적으로 하며, 인터넷 강의 등도 활용할 수 있다.

4)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강사기준은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근거하며, 전공분야는 사회복지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범죄학, 의학, 간호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유사분야 등을 포괄한다. 대상기관 및 경력은 첫째,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전임강사 이상 또는 3년 이상 강사 경력자 등이 해당되며, 둘째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법인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자, 셋째는 의사 및 변호사, 넷째는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다섯째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표 3-15〉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강사 자격기준

관련 법	분야	대상기관 및 경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법 제30조~제38조	• 사회복지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범죄학, 의학, 간호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유사분야	• 평생교육시설에서 전임강사 이상 •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 사회복지학, 심리학, 법학, 범죄학, 의학, 간호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유사분야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 특별법에 따른 법인 • 대학 또는 전문대학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자
	• 의학 및 법학	• 의사 및 변호사 • 담당교육과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방지업무 담당 공무원
		•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자

자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5) 보수교육 위탁기관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다. 대상기관은 첫째, 운영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며, 둘째,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셋째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이다.

〈표 3-16〉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운영주체	운영기관 유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여성정책 관련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교육기관

자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참조하여 표 구성.

나.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정책

1) 가정폭력 상담원 보수교육 관련 법적 근거

가정폭력 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에 두고 있다. 제8조 4의 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의 2항에 근거한 보수교육 위탁운영기관,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보수교육 내용

가정폭력 상담원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와 교육내용을 보면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과정, 전문 과정, 고급과정 등 3개 과정, 5개 개설강좌에 총 28개 교과목으로 구성되며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동일하다.

3) 보수교육 기간 및 방법

보수교육 기간은 2일 이상이며, 보수교육 방식은 숙박 또는 비숙박의 집합교육을 원칙적으로 하며, 인터넷 강의 등도 활용할 수 있다.

4)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가정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강사기준은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근거하며, 전공분야는 사회복지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범죄학, 의학, 간호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유사분야 등을 포괄한다. 대상기관 및 경력은 첫째,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전임강사 이상 또는 강사 경력자 등이 해당되며, 둘째는 여성정책관련 기관, 법인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부설 연구기관 경력자, 셋째는 의사 및 변호사, 넷째는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다섯째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표 3-17〉 가정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강사 자격기준

관련 법	분야	대상기관 및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법 제30조~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범죄학, 의학, 간호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유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시설에서 전임강사 이상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학, 심리학, 법학, 범죄학, 의학, 간호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유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특별법에 따른 법인 대학 또는 전문대학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학 및 법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및 변호사 담당교육과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자

자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5) 보수교육 위탁기관

가정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다. 대상 기관은 첫째, 운영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정책관련 기관이며, 둘째,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셋째는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표 3-18〉 가정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운영주체	운영기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 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구조법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관

자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하여 표 구성

다. 성매매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정책

1) 성매매방지 상담원 보수교육 관련 법적 근거

성매매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보수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3에 두고 있다.

제11조 3의 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2항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근거한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및 방법, 위탁기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보수교육 내용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와 교육내용을 보면 교육과정은 실무과정에 2개 교과목, 전문 과정에 4개교과목으로 총 6개교과목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3-19〉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내용(과목)
실무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회계 • 사회복지 및 여성복지 일반에 관한 사항
전문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의료·주거·법률 지원체계 • 통합지원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 지원 대상별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 대표자의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등

자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3) 보수교육 기간 및 방법

보수교육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교육방식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기준은 관련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보수교육 위탁기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동 시행령 제5조의2 에 근거한다. 대상기관은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고, 둘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표 3-20〉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운영주체	운영기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 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자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참조하여 표 구성

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정책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동 시행령 제26조,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두고 있으며,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사회복지사에게 20만원의 과태료와 해당시설장이 보수교육으로 사회복지사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13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수교육 내용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제시된 기준이 되는 교육내용은 크게 기초영역, 미시영역, 거시영역 그리고 중간영역 등 4개영역의 총 7개 교과목으로 구성되며,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4가지 교육영역을 기준으로 영역별로 다양한 교육과목을 개설 운영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과정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첫째, 사회복지기관 및 현재 종사하는 영역의 근무연수와 직급수준에 따라 구별하여 개설하여야 되고, 둘째, 종사영역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차별화해야 한다.

〈표 3-21〉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내용(과목)
기초(Basic)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Social Work Ethics & Values) • 사회복지조사연구(Social Work Research) • 사회복지인권(Social Work Human Rights)
미시(Micro)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
거시(Macro)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Issues and Law of Social Welfare Policy) • 특별 분야(Special Field)
중간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3) 보수교육 기간 및 방법

보수교육방법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시 다양한 교육매체(인쇄, 녹음, 출판, 방송, 멀티미디어 등)를 적절하게 활용하며, 교육목적과 내용에 따라 교육 형태는 참여형 토론회, 소모임 활동, 솔루션팀 운영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자격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석사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전임강사, 또는 학사 이상의 7년 이상 실무자, 5급과 6급 공무원, 그리고 심리학, 상담학, 행정학 및 경영학 등 특정분야의 전임강사 및 7년 이상 실무자 등이 포함된다.

〈표 3-2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강사 자격기준

강사유형	기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1급 자격소지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두 개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교육법 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전임 강사 이상인 자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7년 이상 재직자 ※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실무경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의 경력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이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 사회복지관련 업무 5년 이상인 자 • 5급 이상: 사회복지관련 분야 재직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회계사, 세무사, 노무사변호사, 의사 등)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전임강사 이상(심리학, 상담학, 행정학, 경영학 등)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5) 보수교육 위탁기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복지인력개발원, 국립재활원,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매년 교육실시기관으로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3-2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위탁기관 범위	위탁기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협회 포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포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립재활원 • 사회복지분야 시설협회로 최근 3년간 교육 실적에 있는 비영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운영규정 등에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내용 명시 • 보수교육(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담당 인력 각 1인 이상 배치 • 보수교육에 적합한 장소 및 관련 기자재 확보 • 운영지침에 의한 교육계획수립과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마. 건강가정사 보수교육 정책

1) 건강가정사 보수교육 관련 법적 근거

건강가정사를 위한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안내」 직원복무 부분에 모든 직원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간 3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업무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보수교육 내용

건강가정사의 보수교육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위탁기관인 한국건강진흥원에 개설된 과정 및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교육과정은 크게 신입직원과정, 리더십 과정, 직무과정으로 각 과정에 필수와 선택으로 개설되었다.

신입직원과정은 필수 3과목으로 구성되었고, 리더십 과정은 기본과 향상과정으로 구분되어 직급별로 각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직무과정은 입사 3년 미만의 기초과정과 3년 이상의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직무공통과 업무별로 교과목이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교과목은 〈표 3-24〉와 같다.

3) 보수교육 기간 및 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안내」에 의하면 보수교육은 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되며, 일부 광역센터에서 운영할 경우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센터는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상담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을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3-24〉 건강가정사의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

교육과정	신입직원과정	리더십과정	직무과정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직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사업 • 건강가정사의 사명과 역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급별 각 리더십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 기본 - 총괄팀장기본 - 팀장기본 - 팀원기본 • 향상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 세미나 - 총괄팀장향상과정 - 팀장향상과정 - 팀원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공통 및 업무별 각 직무과정 (교육문화/상담/운영지원사업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과정(입사 3년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이해 I - 교육문화사업 실무 I - 상담운영실무 I - 운영지원 실무 I • 심화과정(입사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이해 II - 운영지원 실무 II - 추가개발예정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정 • 강사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급별 선택과정 운영 • 주제별 강사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적으로 직무별 선택과정 운영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hf.or.kr/>) 참조하여 표 구성.

4)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위탁기관인 한국건강진흥원에서는 신입직원교육과정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내 분야별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교육훈련을 통해 강사를 양성하여 주제별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다.

〈표 3-25〉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강사선발과정

교육명	대상	교육목표 및 구성내용
내부강사 선발과정	센터직원 및 추천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의 강사의 발굴 및 양성, 전문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 강의내용 개발 - 강의전략 수립 및 진행능력 개발 등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hf.or.kr/>) 참조하여 표 구성.

5) 보수교육 위탁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안내」에 의하면 직원교육은 의무적인 연간 30시간 중에서 반드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10시간 이상을 실시해야하며, 광역센터에서 주최하는 교육도 5시간 한도 내에서 진흥원 교육 시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정책

1)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관련 법적 근거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보수교육의 법적인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55조 1항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보수교육 내용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보수교육과정의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위탁기관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보면, 크게 기초 보수교육, 심화교육, 직급별 교육 세 과정에서 8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표 3-26〉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과목(내용)	
기초 보수교육	• 법률교육	• 전산교육
심화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심화교육 • 피해아동조사면접기술 심화교육	• 피해아동조사면접기술 강사TF운영
직급별 교육	• 슈퍼바이저 워크숍 • 학대피해아동전담보호시설 종사자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심리치료과정(임상심리 치료 전문 인력교육)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보수교육자료.

3) 보수교육 기간 및 방법

교육방식은 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간은 연간 1회에서 9회까지 실시하고 있다.

4)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5) 보수교육 위탁기관

아동복지법 제55조 2항에 근거하면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법적 근거에 의하여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보수교육은 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 타 분야 보수교육 법적 근거와의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시설 종사자와 타 전문가와의 보수교육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보수교육실시에 대한 법적근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은 각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성매매 전문상담원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실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2항, 동 시행령 제26조, 동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미이수한 사회복지사에게 20만원의 과태료와 해당 시설장이 보수교육으로 사회복지사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은 아동복지법 제55조 1항에 근거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 비해, 건강가정사는 보수교육실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다만 「건강가정지원사업 안내」에 연간 30시간 이상 업무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

을 뿐이다. 이와 같이 성폭력 전문상담원은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가정사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에서도 동일하며 특히 국가자격제도가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에 한해서만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수교육과정 및 교과목 구성을 보면, 성폭력과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은 일반, 전문 및 고급 등 3개 과정, 5개 개설강좌에 총 28개교과목으로 운영되며, 성매매 전문상담원은 실무 및 전문 등 2개 과정 6개 교과목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기초, 미시, 거시, 중간 등 4개 교육영역으로, 건강가정사는 신입직원교육, 직무역량과정, 리더수비역량과정 등으로 운영되며,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은 기초 보수교육, 심화교육 및 직급별 교육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의 보수교육과정과 교과목은 상담 실무와 전문 과정 비해 고급과정의 교과목 구성이 제한적이며 직무 및 직급을 반영한 교과목 구성이 부족하다. 성매매 전문상담원은 타 분야에 비해 전문상담보다 일반교육에 치중해 있으며 교과목 개설도 포괄적이지 않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사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이며, 건강가정사 및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은 경력 및 역할 중심으로 구성되어 보수교육은 분야별로 차이를 보인다.

보수교육방식은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타 분야와 대동소이하게 법적으로는 집합교육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주로 집합교육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보수교육 강사 자격을 보면 성폭력과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은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자 또는 연구경력자, 의사 및 변호사, 관련분야 공무원 및 5년 이상 시설종사자 등으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도 강사자격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석사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전임강사, 학사 이상의 7년 이상 실무자, 5급과 6급 공무원, 특정분야 전임강사 및 7년 이상 실무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상담원과 사회복지사는 교육 강사 자격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가지며 자격요건이 체계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성매매 전문상담원, 건강가정사와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은 교육 강사 자격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자격요건도 명시된 부분이 없다.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전문상담원과 사회복지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건강가정사는 부재하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의 교육위탁기관 요건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과 교육기관 등으로 주로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수행되고 있다. 성매매 전문상담원도 동일한 요건으로 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복지인력개발원, 국립재활원,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아동복지단체나 기타 교육훈련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수교육에 대한 근거와 운영지침이 없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표 3-27〉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보수교육체계 비교 1

보수교육	성폭력 전문상담원 ¹⁾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²⁾
법적근거 및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 동 시행령 제8조 동 시행규칙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 동 시행령 제4조 동 시행규칙 제11조 2
	• 법적 근거 없음	• 법적 근거 없음
교육과정 및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종 교육과정 (일반과정, 전문 과정, 고급과정) 28개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종 교육과정 (일반과정, 전문 과정, 고급과정) 28개 교과목
교육 기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일 집합교육(숙박 또는 비숙박) 및 인터넷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일 집합교육(숙박 또는 비숙박) 및 인터넷 교육
교육 강사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임강사 또는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여성정책기관, 법인 및 연구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자 의사 및 변호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시설 5년 이상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임강사 또는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여성정책기관, 법인 및 연구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자 의사 및 변호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시설 5년 이상 종사자
교육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기타 여성정책 관련 기관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기타 여성정책 관련 기관 교육기관

자료: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표 3-28〉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보수교육체계 비교 2

보수교육	성매매 전문상담원 ¹⁾	사회복지사 ²⁾
법적근거 및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3 동 시행규칙 제5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2항 동 시행령 제26조 동 시행규칙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교육 미이수자: 20만원 보수교육으로 불이익 처분자: 100만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종 교육과정 (실무과정, 전문 과정) 6개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교육영역 (기초영역, 미시영역, 거시영역, 중간영역) 7가지 교육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조사연구 -특별 분야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인권
교육 기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8시간~30시간 이내 집합교육(숙박 또는 비숙박) 및 인터넷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8시간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교육 강사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 1급소지자, 사회복지학 분야 두 개 이상 학위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인 교수 사회복지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현장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실무자 사회복지사 1급자격소지자로 관련 업무 5년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 사회복지분야 5급 이상 공무원 특정분야 전문가, 특정분야 전문가로 전임강사 이상, 특정분야 전문가로 실무경력 7년 이상자
교육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정책 관련 기관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재활원 사회복지분야 시설협회로서 최근 3년간 교육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자료: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2) 사회복지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표 3-29〉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보수교육체계 비교 3

보수교육	건강가정사 ^{1) 2)}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3) 4)}
법적근거 및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없음 • 사업안내에 연간 3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업무관련 교육 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제5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없음
교육과정 및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교육과정(신입직원교육, 직무역량과정, 리더십역량과정) • 신입직원교육과정: 필수3개교과목+선택 교과목 • 직무역량과정: 기초과정4개교과목+심화과정 3개교과목+직무별 선택과정 • 리더십 과정: 센터장, 총괄팀장, 팀장 및 팀원별 기본과정+향상과정+직급별 선택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교육 -전산교육 • 심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심화교육 -피해아동조사면접기술 심화교육 -피해아동조사면접기술 강사TF운영 • 직급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슈퍼바이저 워크숍 -학대피해아동전담보호시설 종사자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심리치료과정(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 교육)
교육 기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30시간 이상 • 집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9회기 진행/1회기 당 3~35시간 • 집합교육
교육 강사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분야별 전문 인력
교육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건강가정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료: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홈페이지 참조하여 표 구성;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안내; 3) 아동복지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보수교육자료.

아.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현황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전담하여 실시되고 있다.

교육목표는 크게 6가지로 첫째, 경력별·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상담 전문성 향상, 둘째, 대상별 상담현장 적용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이론 및 상담기법 습득,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행위자 상담을 위한 사정능력 및 상담기술 향상, 넷째, 성폭력피해자 치유 및 청소년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능력 획득, 다섯째, 아동 및 장애인 성

폭력 예방과 상담 전문성 향상, 여섯째, 여성폭력관련 상담원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등이다.

최근 2년간 보수교육 현황을 보면 2011년은 23회에 걸쳐 568명이 보수교육을 받았으며, 2012년은 24회에 걸쳐 600명이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보수교육 과정 및 시간을 보면 보수교육과정은 크게 기본과정 6회, 전문과정 13회, 고급과정 4회가 실시되었다. 기본과정은 6개 교과목에 49시간이 투입되었고, 전문과정은 13개 교과목에 252시간이, 고급과정은 4개 교과목에 24.5시간이 투입되었다. 교육기간은 세부과정 당 2박 3일, 3박 4일, 그리고 1박 2일로 실시되었으며, 교육인원은 세부과정 당 13~33명으로 총 568명이 참여하였다.

2012년에 실시된 보수교육과정은 일반과정 5회, 전문 과정 15회, 고급과정 4회로 운영되었다. 일반과정은 3개 교육과정에 55.5시간이, 전문과정은 12개 교육과정에 340시간이, 고급과정은 3개 교육과정에 60시간이 투입되었다. 교육기간은 세부과정 당 2박 3일 또는 1박 2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인원은 세부과정 당 13~37명으로 총 600명이 참여하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2011년과 2012년에 실시된 보수교육과정은 전문과정과 고급과정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기본과정과 일반과정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기본과정은 상담이론과정을 1~4차에 걸쳐 단계별로 편성된데 비해, 일반과정은 일반상담이론 외에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68 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연구

〈표 3-30〉 2011년도 여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원 보수교육 일정 및 교육인원

교육과정	세부과정 명 및 회수	일시	교육기간 (시간)	교육인원		
				남	여	합계
기본과정 (6회)	상담이론과정 1차	4월 19일(화)~4월 22일(금)	3박4일(28시간)	2	20	22
	상담이론과정 2차	4월 26일(화)~4월 29일(금)		0	22	22
	상담이론과정 3차	9월 6일(화)~9월 9일(금)		1	26	27
	상담이론과정 4차	9월 19일(월)~9월 22일(목)		1	27	28
	상담원소진예방 I (1차)	5월 16일(월)~5월 18일(수)	2박3일(21시간)	0	23	23
	상담원소진예방 I (2차)	11월 9일(수)~11월 11일(금)		1	28	29
전문 과정 (13회)	가정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 I (1차)(2회)	5월 24일(화)~5월 27일(금)	3박4일(28시간)	1	26	27
	가정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 I (2차)	8월 23일(화)~8월 26일(금)		0	27	27
	가정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II	8월 17일(수)~8월 19일(금)	2박3일(21시간)	3	21	24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I (1차)	5월 31일(화)~6월 3일(금)	3박4일(28시간)	3	20	23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I (2차)	10월 17일(월)~10월 20일(목)	3박4일(28시간)	0	26	26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II	6월 29일(수)~7월 1일(금)	2박3일(21시간)	3	22	25
	성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 I	8월 30일(화)~9월 2일(금)	3박4일(28시간)	0	30	30
	성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II	7월 20일(수)~7월 22일(금)	2박3일(21시간)	0	28	28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교육	7월 12일(화)~7월 15일(금)	3박4일(28시간)	3	30	33
	1366상담원 교육 I	6월 14일(화)~6월 16일(목)	2박3일(21시간)	0	22	22
	1366상담원 교육II	10월 5일(수)~10월 7일(금)		0	22	22
	장애인성폭력상담원 교육	10월 11일(화)~10월 14일(금)	3박4일(28시간)	1	23	24
	아동성폭력상담원 교육	9월 27일(화)~9월 30일(금)		1	33	34
고급과정(4회)	가정폭력 상담사례 워크숍(1차)	10월 24일(월)~10월 25일(화)	1박2일(13.5시간)	1	12	13
	가정폭력 상담사례 워크숍(2차)	10월 27일(목)~10월 28일(금)		0	16	16
	성폭력 상담사례 워크숍	11월 3일(목)~11월 4일(금)		0	16	16
	여성폭력관련시설 대표 소장 및 전문가 평가회의 워크숍	11월 22일(화)~11월 23일(수)	1박2일(11시간)	1	24	25
합계				22	546	568

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1). 2011년도 여성폭력시설 상담원 보수교육 결과보고

〈표 3-31〉 2012년도 여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원 보수교육 일정 및 교육인원

교육과정	세부과정 명 및 회수	일시	교육기간 (시간)	교육인원		
				남	여	합계
일반과정 (5회)	일반상담이론과정(2회)	3월 26일(월)-3월 28일(수)	2박3일(21시간)	1	32	33
		9월 4일(화)-9월 6일(목)		-	34	34
	여성주의상담 이론과 실제(1회)	4월 18일(수)-4월 19일(목)	1박2일(13.5시간)	-	24	24
	상담원 소진예방 프로그램(2회)	5월 15일(화)-5월 17일(목)	2박3일(21시간)	-	21	21
11월 6일(화)-11월 8일(목)		3		28	31	
전문 과정 (15회)	가정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 I (2회)	4월 24일(화)-4월 26일(목)	2박3일(21시간)	2	35	37
		5월 30일(수)-6월 1일(금)		-	28	28
	가정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 II(1회)	8월 7일(화)-8월 9일(목)	2박3일(21시간)	1	22	23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I (2회)	6월 12일(화)-6월 14일(목)	2박3일(21시간)	-	20	20
		10월 9일(화)-10월 11일(목)		1	28	29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II(1회)	6월 26일(화)-6월 28일(목)	2박3일(21시간)	-	23	23
	성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 I (1회)	7월 17일(화)-7월 19일(목)	2박3일(21시간)	-	27	27
	성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 II(2회)	3월 21일(수)-3월 23일(금)	2박3일(23시간)	-	13	13
		4월 4일(수)-4월 6일(금)		1	29	30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교육(1회)	7월 10일(화)-7월 12일(목)	2박3일(21시간)	-	31	31
	1366상담원 교육 I (1회)	6월 19일(화)-6월 21일(목)	2박3일(21시간)	-	22	22
	1366과 여성폭력관련시설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프로그램(1회)	5월 22일(화)-5월 24일(목)	2박3일(21시간)	-	22	22
	이주여성보호시설 상담원 교육(1회)	9월 11일(화)-9월 13일(목)	2박3일(21시간)	-	13	13
	장애인성폭력상담원 교육(1회)	7월 24일(화)-7월 26일(목)	2박3일(21시간)	1	28	29
아동성폭력상담원 교육(1회)	9월 18일(화)-9월 20일(목)	2박3일(21시간)	-	35	35	
고급과정 (4회)	가정폭력 상담사례 워크숍(2회)	5월 9일(수)-5월 10일(목)	1박2일(21시간)	-	14	14
		10월 29일(월)-10월 30일(화)	1박2일(13.5시간)	4	13	17
	성폭력 상담사례 워크숍(1회)	10월 24일(수)-10월 25일(목)	1박2일(13.5시간)	4	16	20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평가회의워크숍(1회)	11월 13일(화)-11월 14일(수)	1박2일(12시간)	2	22	24
합계				20	580	600

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2). 2012년도 여성폭력시설 상담원 보수교육 결과보고.

2)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원스톱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 성폭력통합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주로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에서 전담하여 실시되고 있다. 지원단에서는 크게 입문교육, 보수교육, 그리고 종사자소진방지프로그램 등 4종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입문교육 과정은 근무기간 1년 미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2박 3일간 20시간 실시되고, 보수교육 과정은 실무과정, 사례회의, 슈퍼비전으로 구성되며, 전문교육 과정은 상담, 심리, 의료직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은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2회 실시된다.

최근 2년간 보수교육 현황을 보면, 2011년은 3개 교육과정에 1,192명이 보수교육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3개 교육과정에 938명이 보수교육을 받았다.

2011년의 보수교육 과정 및 교과목을 보면 종사자 입문교육이 지역 센터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소양 및 현장적응력 향상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종사자 보수교육 과정은 직군과정에 5개 교과목이, 심화과정에는 6개의 교과목이 운영되었으며, 공통적으로 법교육과 세무교육이 함께 포함되었다. 지역 센터 워크숍 과정은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직원에 대한 격려, 심신이완, 센터 직원 간 팀워크 강화 및 센터 간 교류직무 등이 포함되었다.

2012년에는 지역 센터와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종사자 입문교육은 아동(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및 정책,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이해 등을 다루었다. 종사자 보수교육과정은 직군과정에 6개 교과목이, 심화과정에 7개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종사자워크숍은 지역 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1회 실시되었으며 2011년과 내용이 동일하였다.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에서 2011년과 2012년에 실시된 보수교육과정은 보수교육을 받는 대상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센터 직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아동 및 장애인성폭력, 간호 및 임상치료 등에 집중되었고, 센터직원 외에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심리치료, 법률 및 의료지원, 가정·학교폭력 등 일반적인 것을 다루었다.

〈표 3-32〉 2011의 보수교육과정년도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보수교육 일정 및 교육인원

교육과정	세부과정 명 및 교육주제		참석기관명	참여인원		
종사자 입문교육(1회)	기본소양 및 현장적응력 향상: 지역 센터 신규직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95		
종사자 보수교육	직군	상담1		346	60	
		상담2			68	
		간호			52	
		행정			60	
		임상심리/심리치료			60	
		관리자			46	
	심화	임상평가		156	22	
		아동성폭력			39	
		장애인성폭력			32	
		가정폭력			22	
		간호			15	
		임상치료			26	
	법교육			37		
	세무교육			22		
지역 센터 워크숍	1차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심신이완, 지지, 센터 직원 간 팀워크 강화 및 센터 간 교류직무	436	254		
	2차			182		
합계				1,192		

자료: 여성·아동폭력 중앙지원단(2011). 2011년도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결과보고

〈표 3-33〉 2012년도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보수교육 일정 및 교육인원

교육과정	세부과정 명 및 교육주제		참석기관명	참여인원		
종사자 입문교육 (1회)	아동(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및 정책, 사례관리, 아동/청소년의 이해 등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기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등)	109		
종사자 보수교육	직군	상담1차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기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등)	71	
		상담2차			64	
		관리자			43	
		간호			52	
		심리치료			63	
		행정			61	
	심화	법률지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기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등)	37
		임상평가				22
		가정/학교폭력				20
		심리치료1				22
		법률지원				34
		의료지원				20
	심리치료2		16			
종사자 워크숍 (1회)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심신이완, 지지, 센터 직원 간 팀워크강화 및 센터 간 교류직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304		
합계				938		

자료: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2012). 2012년도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기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결과보고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종사하는 건강가정사의 보수교육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전담하여 실시되고 있다. 최근 2년간 실시된 보수교육 현황을 보면, 2011년은 64회에 걸쳐 2,077명이 보수교육을 받았으며, 2012년은 34회에 걸쳐 2,274명이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보수교육과정 및 교과목, 기간 등을 보면 교육과정은 크게 실무역량 강화과정이 9회에 걸쳐 7개 교과목이 운영되었고, 사업역량 강화교육은 45

회에 걸쳐 3개 교과목이 실시되었다. 교육기간은 세부과정별로 1일 또는 1박 2일로 실시되었으며, 교육인원은 세부과정 당 43~183명, 권역별 상담 슈퍼비전 및 교육은 1,181명이 참여하였다.

2012년에 실시된 보수교육과정은 직급교육과정 9회, 직무 전문 과정 7회, 전문가 양성 및 핵심인재육성 과정 14회, 정책 감수성 교육과정 3회, 종사자워크숍 1회가 실시되었다. 교육기간은 세부과정별로 1일 또는 1박 2일로 실시되었으며, 교육인원은 세부과정 당 10~114명이, 종사자워크숍은 494명이 참여하였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2011년과 2012년에 실시된 보수교육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2011년은 신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설된 실무와 사업역량 강화 중심의 교육과정인데 비해, 2012년은 직무와 직급, 경력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종사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균형 있는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74 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연구

〈표 3-34〉 2011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일정 및 교육인원

교육과정	세부 과정명 및 회수	일시	교육기간 (시간)	참여 인원
실무역량 강화과정	신입종사자교육(1회)	6월 17일(금)	1일(6시간)	96
	프로그램 기획 교육(2회)	3월 30일(금)	1일(6시간)	183
		6월 3일(금)		
	회계실무교육(1회)	5월 27일(금)	1일(6시간)	104
	홍보전략교육(1회)	5월 26일(목)	1일(6시간)	139
	성과관리 및 조직 커뮤니케이션 교육(2회)	7월 26일(화)~7월 27일(수)	1박2일(12시간), 1일(6시간)	132
		10월 27일(목)		
사업 멘토링 교육(1회)	3월 29일(목)	1일(6시간)	50	
UCC 및 영상물 활용 교육 (1회)	4월 26일(화)	1일(6시간)	43	
사업역량 강화교육	아버지교육 강사과정(7회)	2월 15일(화)~12월 6일(화)	7일(42시간)	62
	권역별 상담 슈퍼비전 및 교육(37회)	2월 22일(화)~11월 25일(금)	37일(222시간)	1,181
	가족친화문화기획 교육(1회)	9월 29일(목)~9월 30일(금)	1박 2일(12시간)	87
합계				2,077

주: 전국 1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약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1). 2011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결과보고.

〈표 3-35〉 2012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일정 및 교육인원

교육과정	세부과정명 및 회수	일시	교육기간(시간)	참여인원
직급교육 과정	신입직원교육 1차(2회)	3월 27일(화)~ 3월 28일(수)	1박2일(12시간)	99
	신입직원교육 2차(2회)	9월 25일~9월 26일	1박2일(12시간)	69
	센터장(관리자): 노무관리 교육(1회)	5월 30일	1일(6시간)	77
	조직 활성화 과정: 총괄팀장(2회)	8월 22일~8월 23일	1박2일(12시간)	75
	리더십 및 갈등관리 교육: 팀장이상(1회)	6월 21일	1일(6시간)	64
	셀프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실무자(1회)	6월 22일(목)	1일(6시간)	114
직무전문 과정	사업담당자 직무교육: 교육담당자 교육(1회)	11월 22일	1일(6시간)	95
	사업담당자 직무교육: 상담담당자 교육(1회)	7월 13일	1일(6시간)	67
	돌봄 사업 교육(1회)	9월 11일	1일(6시간)	82
	홍보실무교육 1차(1회)	4월 18일	1일(6시간)	86
	홍보실무교육 2차(1회)	6월 27일	1일(6시간)	33
	회계실무교육(1회)	10월 25일	1일(6시간)	83
	개인정보 처리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1회)	7월 24일	1일(6시간)	110
전문가 양성 및 핵심 인재육성 과정	아버지교육 강사과정(2회)	12월 4일~12월 5일	1박2일(12시간)	10
	이혼전후 상담교육 1차: 가족상담 전문가(6회)	5월~7월	6일(36시간)	57
	이혼전후 상담교육 2차: 가족상담 전문가(6회)	9월~11월	6일(36시간)	47
정책 감수성 교육과정	녹색 감수성 및 노동인권 감수성 교육(1회)	4월 27일(금)	1일(6시간)	37
	성인지 및 다문화 감수성 교육(1회)	7월 6일	1일(6시간)	61
	인문 문화 감수성 교육(1회)	10월 24일	1일(6시간)	63
종사자 워크숍	종사자 워크숍(1회)	11월 1일~11월 2일	1박2일(12시간)	494
합계				2,274

주: 전국 14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약 5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1). 2011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결과보고.

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보수교육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전담하여 실시되고 있다. 2006~2013년까지 최근 8년간 실시된 보수교육 현황을 보면, 공통적으로 기초 보수교육과정, 심화교육과정, 직급별교육과정이 운영되었으며, 2007년과 2012년만 직급별 교육과정이 실시되지 않았다. 교육과정별 교육과목은 1~3개로 운영되며, 기초보수교육과정은 8년간 법률, 전산교육, 업무수행지침, 신변안전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심화교육과정은 2006~2010년까지는 케이스컨퍼런스, 성학대 전문상담원 교육, 행위자치료 전문상담원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2011~2013년에는 현장조사전문가교육, 피해아동조사면접기술 교육 등이 강화되었다. 직급별 교육은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교육, 슈퍼바이저 워크숍이 주를 이루다가 최근 상담원 소진 예방프로그램과 학대피해아동전담 보호시설 종사자교육 등이 개설되었다. 교육과정별 실시회수는 1~10회까지 운영되었고, 교육시간은 3~35시간까지 투입되었으며, 교육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되었다.

〈표 3-3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현황

연도	교육 분류	교육명	실시 회수	교육시간 (1회당)	참가자 교육비 부담
2006	기초 보수교육	-	-	-	-
	심화교육	케이스컨퍼런스	2	4시간	무료
	직급별 교육	슈퍼바이저 워크숍	2	-	무료
2007	기초 보수교육	법률교육 전산교육	1 1	6시간 5시간	무료 무료
	심화교육	케이스컨퍼런스 성학대전문상담원교육	1 1	4시간 12시간	무료 무료
	기초 보수교육	법률교육 전산교육	1 1	6시간 5시간	무료 무료
2008	심화교육	외부전문가사례슈퍼비전 케이스컨퍼런스 성학대전문상담원교육	4 1 4	3시간 4시간 12시간	무료 무료 무료
	직급별 교육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	1	6시간	무료
	기초 보수교육	법률교육 전산교육 업무수행지침 교육	2 1 4	6시간 5시간 7시간	무료 무료 무료
2009	심화교육	성학대전문상담원교육 행위자치료 전문상담원교육	1 3	23시간 23시간	무료 무료
	직급별 교육	슈퍼바이저워크숍	6	18시간	무료
	기초 보수교육	법률교육 전산교육 상담원 신변안전교육	2 2 8	6시간 5시간 5시간	무료 무료 무료
2010	심화교육	케이스컨퍼런스 성학대전문상담원교육 행위자치료 전문상담원교육	7 1 2	4시간 22시간 33시간	무료 무료 무료
	직급별 교육	슈퍼바이저 워크숍	2	12시간	무료
	기초 보수교육	법률교육 전산교육 전산시스템 사용자교육	2 1 10	4시간 5시간 6시간	무료 무료 무료
2011	심화교육	케이스컨퍼런스 현장조사전문가양성교육 현장조사전문가양성교육 심화교육 행위자치료전문상담원양성교육 행위자치료전문상담원 워크숍	7 2 1 3 2	4시간 31시간 3시간 18시간 12시간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직급별 교육	슈퍼바이저 워크숍 아동보호전문기관심리치료과정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교육)	2 1	9시간 35시간	무료 무료
	기초 보수교육	법률교육 전산교육	1 2	4시간 5시간	무료 무료
2012	심화교육	현장조사전문가양성교육 피해아동조사면접기술 (NICHD Protocol) 강사TF 워크숍 피해아동조사면접기술 (NICHD Protocol) 심화교육	1 1 9 1	21시간 3시간 3시간 15시간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직급별 교육	상담원 소진예방프로그램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교육	1 1	15시간 5시간	무료 무료

〈표 3-36〉 계속

연도	교육 분류	교육명	실시 회수	교육시간 (1회당)	참가자 교육비부담
2013	기초 보수교육	법률교육	1	4시간	무료
		전산교육	1	5.5시간	무료
	심화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심화교육	1	6시간	무료
		피해아동조사면접기술 (NICHD Protocol) 심화교육	2	11시간	무료
		피해아동조사면접기술 (NICHD Protocol) 강사 TF 운영	4	3시간	무료
	직급별 교육	슈퍼바이저워크숍	1	5시간	무료
		학대피해아동전담보호시설 종사자교육	1	6시간	무료
		아동보호전문기관심리치료과정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교육)	1	35시간	무료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보수교육자료.

2. 국외정책 동향

국외정책 동향은 미국의 보수교육 정책인 성폭력 예방스펙트럼, 오레곤 주의 학제 간 연계지원 시스템, 성폭력보수교육 실시기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성폭력 예방스펙트럼(Sexual Violence and the Spectrum of Prevention)²⁾

미국 전국성폭력지원센터(NSVRC)에서는 성폭력 종식을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서 6 단계의 예방스펙트럼의 중요성을 2006년에 새롭게 제기한 바 있다. 즉, 개개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함에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현재의 규범을 존중과 안전, 평등과 건강한 관계와 성(sexuality)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규범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총체적인 예방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성폭력예방스펙트럼은 지역사회해결을 지향하는(toward a community solution) 실천전략으로서, 성폭력 예방정책을 개발하는 입법자 및 실천 활동가들을

2) 여기에 소개된 내용은 Rachel Davis, Lisa Fujie Parks, Larry Cohen(2006), Sexual Violence and the Spectrum of Prevention: Towards a Community Solution, National Sexual Violence Resource Center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Larry Cohen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것은 광범위한 규모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자 디자인된 것으로써, 개인적 수준의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 및 규범을 포함한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스펙트럼은 6단계의 개입을 기본으로 한다. 이와 같은 스펙트럼 전략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폭력예방, 교통안전, 영양공급, 물리적 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문제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용, 전반적인 전략을 만들어 내도록 돕는다.

여섯 가지의 예방 스펙트럼의 활동들은 조정개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각 단계들이 함께 사용될 때 이 스펙트럼은 보다 강력한 전환의 힘을 가진다. 스펙트럼의 각 단계들 간의 상호 관련성, 또는 시너지(synergy)는 대변인들이나 실천 활동가들로 하여금 최상의 예방활동의 결과를 가지도록 해준다.

보수교육 관련 정책으로는 레벨 3단계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제공자들 교육하기 영역이 해당된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의 전문영역과 정보, 기술, 동기들을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의뢰인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생활 서비스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부모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행동과 그에 따른 상처 및 병리현상들에 대해 충고하도록 하는 훈련을 받는다. 이것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근본적으로 그들 자신만의 성폭력예방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도록 교육받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버지니아 보건복지부는 사회생활 서비스전문가들에게 어떻게 남성과 소년들로 하여금 성폭력 예방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와 같은 주제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다.

실천가들 간의 훈련 및 네트워크 형성은 혁신적인 접근법을 통해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성폭력방지연대(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의 예방 네트워크는 웹상의 회의와 대화를 통하여 조직되고, 무료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메일전송을 하고 있다.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적절한 훈련과 더불어 의사, 교사, 법 집행가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가 등은 예방정책의 매우 효과적인 옹호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을 확장시킴으로써 성폭력 예방에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³⁾

3) 여기에는 기자들, 건물소유주들/관리자들, 영화 제작자들, 도서관 사서들, 노인센터의 직원들 그리고 레저 센터의 직원들, 방송국의 DJ, 교도관, 바텐더 그리고 보험정책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성폭력 예방훈련으로 이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보다 잘 실천하게 될 것임. 예를 들어 기자들은 예방차원의 관점에서 성폭력에 대하여 보도할 수 있을 것이며 두려움이나 잘못된 신화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해결방안에 대한

“서비스공급자들 교육하기”의 대표적 사례는 ‘안전한 장소(Safe Place)’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존중프로그램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성을 상담과 교육을 통해 촉진하는 초등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한 학교들은 학교 행정가들, 상담교사들, 학교자원 담당자, 교사, 학부모 대표 등과 리더십 팀을 형성하고, 이 팀은 긍정적인 학교 풍토를 촉진시키고, 괴롭히기, 성적 학대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그 핵심적인 요소는 이러한 폭력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학교 직원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실제 2003~2004년 동안 3,575명의 학교 행정가들, 학교 구성원, 학부모와 다른 전문가들이 훈련을 받았다.

나. 오레곤(Oregon) 주의 학제 간 연계 지원시스템 구축

전국 규모로 학제 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당 분야의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오레곤(Oregon)주는 9개 분야에서 1,000명 이상의 전문가를 양성했다고 한다. 9개 분야로는 ‘지원자(advocates)’, ‘청소년 법률(juvenile justice)’, ‘경찰(law enforcement)’, ‘검찰(prosecutors)’, ‘교정(corrections)’, ‘가해자 치료 및 관리(offender treatment/management)’, ‘인권지원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 ‘간호사 및 의료진(nurses and medical staff)’, ‘기타 성폭력 생존자 또는 가해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오레곤(Oregon)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성폭력 간호 심사관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으로 이는 성폭력사건 및 가해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오레곤 주는 “SANE 자격제도(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Certification & Re-certification)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즉,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정증언평가 자격제도를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있다.⁴⁾ 구체적인 사례로는 위기 개입(Crisis Response)⁵⁾, 장기적 지원(Long Term Support)⁶⁾, 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임.

4) 미국의 법적인 제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의 역할이 아주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비밀을 보장하면서 하루 24시간 가능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함. 성폭력 지원자들은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로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줌.

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Support for Others Involved With the Survivor)⁷⁾ 등이 있다.

다. 성폭력 보수교육기관 사례

1) 오레곤 성폭력 대책 위원회(Oregon Sexual Assault Task Force)

오레곤 성폭력 대책위원회(Sexual Assault Task Force)는 오레곤에서 청소년과 성인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옹호자 집단과 여러 학문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의 요청에 의해 1999년 법무부 장관 하디 마이어스에 의해 조직되었고, 2003년 비영리, 비정부 조직으로 통합되었다.

교육대상자는 크게 4종의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첫째, 등록간호사(RN), 전문 간호사(NP), 간호보조(PA), 의료장비사(MD) 등 자격증소지자, 둘째, 간호 또는 임상 경험 2년 이상인 자, 셋째, 등록간호사(RN), 전문 간호사(NP), 간호보조(PA), 의료장비사(MD) 과정에 참여한 자, 넷째 의료센터에 지원하기 위해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크게 4종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기록 과정, 의료기록에 특정한 신체검사 실시과정, 증거수집 및 보존과정, 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종합적 대응 과정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교육방법은 집합 및 숙박교육으로 실시되며, 교육기간 및 시간은 3박 4일로 총 40시간동안 이루어진다. 교육비용은 동일한 주 내에서 교육 받을 경우는 300달러, 다른 주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는 500달러를 부담한다.

-
- 5)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의료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병원까지 교통을 제공하거나, 동행하면서 도와줌. 경찰에 보고하도록 도와주고 위기 시 보호시설을 안내해 준다. 비평가적인 태도로 정서적인 지원을 해줌. 모든 가능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기도 한다.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줌.
 - 6)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은 일대일의 정서적인 지원, 정보제공 및 의뢰, 추가적인 의료 및 법적인 지원 등이 포함됨. 예를 들면, 법정에 동석하고 재판의 전 과정에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고, 변호사 선임, 가해자의 선고 등에 적극적으로 도와줌. 또한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명령도 받아 준다. 또한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사회적 지원도 포함됨. 성폭력에 의한 외상 치료 및 자기관리까지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줌. 즉, 성폭력의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적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임.
 - 7) 성폭력피해자인 당사자뿐만 아니고 가족, 파트너, 친구도 성폭력피해의 후유증을 경험함.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 주변 인물들의 간접적인 피해후유증을 도와주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관해서도 도움을 줌.

2) 플로리다 위원회(Florida Council Against Sexual Violence)

플로리다위원회는 피해자, 성폭력 생존자에게 성폭행 위기극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전국적인 비영리 단체이다. 동 위원회에서는 성폭력 간호 심사관인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6종으로 성폭력 대응팀 역할과정, 의료 등 법의학 역사과정, 법의학 문서 검토과정, 외상확인과정, 증거수집 및 처리과정, 법정 준비 및 증언과정 등이 실시된다.

교육방법은 집합 및 숙박교육으로 실시며, 교육기간 및 시간은 5~9주간에 걸쳐 매주 목요일에 실시되며, 총 40시간 운영된다. 교육비용은 350달러를 부담한다.

3) 범죄피해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센터(Office For Victims Of Crime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범죄피해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센터(OVCTTAC)는 피해자서비스 제공자들과 범죄피해자지원 전문가들을 훈련시키고 기술지원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교육대상자는 크게 4종의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첫째, 자원봉사자, 둘째, 강간 위기센터 직원, 셋째, 성폭력 관련 간호사, 의사, 법집행임원 등이고, 넷째, 특정 성폭력 교육을 받지 않은 전문상담원 및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 전문가 등이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11개 과정으로 기본적인 이론부터 성폭력 실태 및 영향, 피해자 옹호, 상담과정의 대리외상에 이르기까지 기본단계부터 심화단계까지 포괄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방법은 집합 및 숙박교육으로 실시며, 교육기간은 교육과정 당 1~3일에 걸쳐 실시된다.

〈표 3-37〉 미국의 성폭력 보수교육기관 사례 1

구분	오레곤 성폭력 대책 위원회 ¹⁾	플로리다 위원회 ²⁾
교육기관명	• Oregon Sexual Assault Task Force	• Florida Council Against Sexual Violence
대상자	• RN, NP, PA, MD 자격증 소지자 • 간호 또는 임상 경험 2년 이상인 자 • 적극적으로 RN, NP, PA, MD에 참가한 자 • 의료 센터에 지원하기 위해 참석한 자	• 의료 전문가(성폭력 간호 심사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 성폭력 피해자 의료기록 • 의료기록에 특정한 신체검사 실시 • 증거 수집 및 보존 • 성폭행 피해자/환자에게 피해자 중심 및 종합 대응 등	• 성폭행 대응 팀 역할 • 의료 법의학 역사 • 평가/법의학 문서 • 외상 확인 • 증거 수집 및 처리 • 법정 준비 및 증언
교육방법	• 집합 및 숙박교육	• 집합 및 숙박교육
교육기간 및 시간	• 3박 4일 • 40시간	• 5~9주(매주 목요일) • 40시간
교육비용	• \$300: 같은 주일 경우 • \$500: 다른 주일 경우	• \$ 350

자료: 1) 오레곤 성폭력대책위원회(Oregon Sexual Assault Task Force) 홈페이지(<http://oregonsatf.org/>)에서 참조하여 표 구성; 2) 플로리다 연합(Florida Council Against Sexual Violence) 홈페이지(<http://fcasv.org/>)에서 참조하여 표 구성

〈표 3-38〉 미국의 성폭력 보수교육기관 사례 2

구분	범죄피해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센터
교육기관명	Office For Victims Of Crime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대상자	자원봉사자 또는 강간위기센터 직원, 간호사, 의사, 법집행임원, 특정 성폭력 교육을 받지 않은 전문상담원 및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 및 전문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개 및 개요(introductions and overview) • 성폭력 옹호자, 상담원은 무엇인가?(what is sexual assault advocacy/counseling?) • 성폭력의 실태(realities of sexual assault) • 성폭력의 영향(impact of sexual assault) • 일반적인 옹호상황에서의 절차들(procedures in common advocacy situations) • 보수교육과 기술훈련(recovery education and skills training) • 연민 피로와 자기관리(compassion fatigue and self care) • 최종 결과 및 평가(wrap-up and evaluation) • 연민 피로/대리외상(Compassion Fatigue/Vicarious Trauma) • 성폭행 사례의 DNA: 경찰서, 성폭력 법의학 심사관/성폭력 간호 심사관 및 피해자 옹호자의 역할(DNA in Sexual Assault Cases: The Role of Law Enforcement, SAFE/SANE Nurses, and Victim Advocates) • 성폭력 옹호 / 상담 교육(Sexual Assault Advocate/Counselor Training)
교육시간	• 1~3일
교육방법	• 집합 및 숙박교육

자료: 범죄피해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센터(Office For Victims Of Crime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홈페이지(<https://www.ovcttac.gov/>)에서 참조하여 표 구성

제3절 자격관리 관련 정책동향

1. 국내 정책동향

종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별표 1’에 따르면, 일반기준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제2호의 해당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고, 개별기준에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

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그리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종사자 등 상담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기준도 함께 제시된다.

시험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국가시험의 형식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강가정사의 경우 국가시험은 아니지만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 기말 고사를 실시하고 있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정기시험은 매년 1~2월중에 행하며, 시험일시, 장소 및 기타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제의에 한국심리학회장이 공고한다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성폭력상담원, 가정폭력상담원, 성매매방지 상담원과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평가방법에 대한 원칙적 기준은 없으며, 교육기관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평가 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⁸⁾으로 사회복지사의 경우 필기시험으로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가 합격예정자로 결정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반면에 성폭력상담원, 건강가정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경우 자체평가를 실시하긴 하지만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이 주어진다.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하며, 임상심리전문가의 필기 및 면접 시험합격 판정은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필기시험은 기초과목과 임상과목으로 나누어 판정한다. 합격판정의 기준은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각각에서 전체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모두에서 합

8) Q-net(<http://www.q-net.or.kr>).

격판정을 받게 되면 필기시험 합격증이 교부된다.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공식합격일로부터 5년 후 해당연도의 자격시험 종료일까지로 한다. 이 유효기간은 기초과목과 임상과목에 대해 각각 별도로 적용된다. 면접시험은 자격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험위탁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2항에 의거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 임상심리전문가는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실시하고 있고, 성폭력상담원, 가정폭력상담원, 성매매방지 상담원,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표 3-39〉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자격관리체계 비교 1

양성교육	전문상담원 ¹⁾	사회복지사 ²⁾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1항(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시험 실시와 평가 방법 및 합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필기시험(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시험 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하여 표 구성;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참조하여 표 구성

〈표 3-40〉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자격관리체계 비교 2

양성교육	가정폭력상담원 ¹⁾	성매매방지상담원 ²⁾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여성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시험 실시와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실시
시험 및 합격기준 시험 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근거 없음

자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표 3-41〉 성폭력시설 전문상담원과 타 전문가와의 자격관리체계 비교 3

양성교육	건강가정사 ¹⁾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²⁾	임상심리전문가 ³⁾
법적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3항	• 아동복지법 제43조	• 법적근거 없음
자격기준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 15'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이수 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자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석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하에 3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친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하에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친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취득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하에 1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의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혹은 교육경력을 갖추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⁹⁾
시험 실시와 평가 방법 및 합격기준	• 자체평가 실시(중간·기말고사)	• 자체평가 실시(개인+조별 평가)	• 수련생 등록→3년간의 수련심사→필기시험→면접시험→자격위원회의 자격심사→자격증 수여
시험 위탁기관	• 비해당	• 비해당	• 한국임상심리학회

자료: 1)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2)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참조하여 표 구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3) 한국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표 구성 (<http://www.kcp.or.kr>).

9) 1~4항에서 규정한 임상심리학 전공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과목을 3 과목 9학점 이상,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을 1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수련위원회에 대학원 성적표를 제출하여 이수과목의 적절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유사과목일 경우, 수련위원회에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2)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고급 임상심리학, 정신 병리학, 심리진단(또는 심리평가), 심리치료, 임상실습, 신경심리평가, 행동평가 등. (3)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심리통계, 실험설계, 자료 분석, 중다변인분석법 등.

다음으로 교과목과 이수해야 하는 학점 및 이수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42>에 제시된다.

<표 3-42> 자격취득 및 이수를 위한 교과목 편성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	
		대학원	(전문) 대학
성폭력 전문상담원	<표 3-1> 참고	비해당	비해당
가정폭력상담원	<표 3-3> 참고	비해당	비해당
성매매방지상담원	<표 3-5> 참고	비해당	비해당
사회 복지사 ¹⁾	필수 과목	6과목 18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이상
	선택 과목	2과목 6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이상
	시험 과목	비해당	비해당
건강 가정사 ²⁾	핵심 과목	4과목 이상	5과목 이상
	관련 과목	2과목 이상	3과목 이상
아동 학대전문상담원	기본교육		32시간
	전문교육		32시간
	초기조사와 사례계획(8), 위기 개입(6), 아동 분리과 배치(6), 학대 유형별 개입방법(12)		16시간
임상심리전문가 ⁴⁾	기초과목		※임상수련 1년 이상 응시가능
	임상과목		※임상수련 3년 이상 응시가능

자료: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참조하여 표 구성.; 3) 아동복지법 시행령 참조하여 표 구성.; 4) 한국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표 구성(<http://www.kcp.or.kr>)

2. 국외 정책동향

가. 미국의 성폭력관련 종사자 자격관리 제도

미국의 자격관리 동향으로 텍사스의 옹호자(advocate), 켄터키 주의 성폭력 간호 심사관, 캘리포니아의 성폭력 심사관 등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들 제도의 자격관련 법적근거, 교과목 편성, 자격기준, 기간 및 시간, 강사 자격, 시험요구 사항 등은 다음에 제시된 <표 3-43> 및 <표 3-44>와 같다.

<표 3-43> 미국의 성폭력 관련 자격관리 제도 1

양성교육	텍사스의 옹호자(advocate) ¹⁾	켄터키 주의 성폭력 간호 심사관 ²⁾
자격관련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CRISIS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상)
교과목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RULE § 62.76 -성폭력 역할관계(8시간 이상 의무, 2시간 자습 가능) 성폭력 역할관계는 다음 주제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 :성폭력의 역사적 관점,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의 거짓과 사실, 성폭력이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신상명세, 범죄자 신상명세, 다른 중요한 사람들의 신상명세, 성폭행 통계자료 -체제 대응 :아동 및 성인 보호 서비스, 응급실 규칙, 법정/의료 시험, 성폭력 간호 심사관의 역할, 피해자의 임신 예방, 성병 감염, 약물 성폭행, 형사사법 체제의 개요, 경찰관의 역할, 성폭력에 관한 법률, 법률 자원과 치료, 법적 자원 및 제재, 피해자의 권리장전, 피해결과 진술, 범죄 피해자의 보상개요 -피해자들과의 작업(Working with survivors) :비밀보장, 윤리, 옹호자의 역할, 2차적 피해, 스트레스와 소진, 자기 관리, 자기 보호, 의사소통과 경청 능력, 위기 개입, 자살 사정 기술, 역할극, 의사소통과 경청 능력, 위기 개입, 자살 사정 기술, 역할극 -직업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식기 검사, 반사경 시험, 시각화 기법 및 장비: 26시간 모의 성폭행 병력 청취(history taking)와 기술 평가 시험: 10시간 법원에서 재판 및 모임 참관: 16시간 강간 위기 피해자의 옹호자 또는 성폭력 개별 치료가 가능한 정신 건강 전문가와의 만남: 4시간 법집행 종사자들과의 만남: 4시간
자격기준	(알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 훈련켄터키에서 현재 간호사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 당국(board)에서 승인한 SANE 교육과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을 이수한 자 신청자가 유사 과정을 수료한 경우 이 관리 규정 제 2 항 (3) 호 (D) 3A, B, C, G, K, 그리고 1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적어도 다섯 5시간의 SANE 과정의 해당 부분을 완료해야 한다. 유사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승인한 평생교육 과정을 이 법률에서 명시된 주제를 포함하여 적어도 5시간 제공해야 한다.
기간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RULE § 62.76 -3개월 이내에 40시간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시간: 40시간 이상 임상실습: 60시간 이상

〈표 3-43〉 계속

양성교육	텍사스의 옹호자(advocate) ¹⁾	켄터키 주의 성폭력 간호 심사관 ²⁾
강사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LE §62.77 -교육주제와 관련된 경험이 최소 1년 이상인 지역 프로그램 직원, 만약 위기개입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위기개입경험이 요구됨. -최소 500시간 서류로 기록된(documentated) 된 봉사활동 경력과 그 중에서 100시간 이상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봉사자들 -해당 분야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과정의 주제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 분야 교수
시험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LE §62.78 -모든 교실과 자율학습 교육이 완료되면, 테스트는 연수생을 관리해야 함. -지역프로그램은 70% 혹은 그 이상의 시험 점수를 받아 직접 서비스에 자격이 있는 직접서비스 옹호자(대변인)가 필요함. -시험 문제는 최소한 50개 이상이어야 함. -시험은 교육내용을 따라야 함 -시험은 성폭력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험은 옹호자의 기밀 인사/직원 봉사 파일에 보관되어야 함 	

자료: 1) Texas Secretary of State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표 작성(<http://www.sos.state.tx.us/>); 2) The Kentucky Association of Sexual Assault Programs, Inc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표 작성(<http://kyasap.brinkster.net/>)

〈표 3-44〉 미국의 성폭력 관련 자격관리 제도 2

구분	캘리포니아의 성폭력 심사관 ¹⁾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없음
교과목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과목 (14개 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세팅의 법의학 소개 3.0 -의료 세팅의 범죄 현장 보존 및 사망 조사1.0 -의료계 전문가에 의한 법정 증언 2.0 -가정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접근 1.0 -정신 건강 사정에 법정 접근 1.0 • 선택 과목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관리 전문가를 위한 법의학 병리학 소개 2.0 -임상 윤리 2.0 -법정 시사점 : 이전 성인 1.0 -무덤 힘과 화기 부상의 법의학적 접근2.0 - '법의학 간호' 직업의 고려 사항 2.0 -의료계 세팅 에서 법의학 사진 1.0 -학대 부상의 법의학 접근 2.0 -성폭행 시험 교육 : 성인 / 청소년 4.0 -성폭행 심사관 교육 : 소아 4.0 -미국 군사 법정 문제 2.0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개의 단원 온라인 코스를 완료 • 모든 과제, 중간 및 기말 시험을 완료. -성공적으로 과정을 완료하는 참가자는 수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참고 : 성폭행 심사관이 되기 위한 실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 전문 간호사, 의사의 조수, 또는 의사로서 면허를 취득해야한다. • 임상 및 비 임상 활동을 최소 45 시간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의 지도아래 성공적으로 완료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임상지도자 자격을 얻기 위해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상지도자제도 계획, 임상 멘토링과 실천을 위해 자신의 지역 SANE 프로그램에 문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간호사는 자신의 직장 책임 보증을 드는 것을 권고합니다.
기간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달(8월 13일-10월 11일)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자료: 1)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표 작성(<http://www.extension.ucr.edu/>).

제4절 안전 관련 정책동향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들은 심각하고 복합적인 외상피해와 함께 극심한 심리적 손상감을 호소하는 성폭력피해자와 가족 등 피해자의 주변사람들에게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람과 깊은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외상을 목격하고 지원하면서 대리외상으로 인한 충격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과도하게 요구되는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현실적으로 성폭력피해 사건처리과정에서 경험하는 가해자 측으로부터의 폭력과 위협, 그리고 일부 피해자 측으로부터의 불평과 과도한 서비스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의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로 3년마다 있는 평가를 통해 시설마다 상해보험가입, 인근 경찰지구대와의 연계체계 강화, 사설보안시스템 가입, 가스총 등 신변보호도구의 구비, 출입문의 안전장치 강화 등 관련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성폭력가해자 또는 피해자,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로부터 받는 위협과 폭력에 대한 실질적 대응측면에서는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조치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보호 장치로써 종사자에 대한 폭력과 위협에 대비한 국가의 정책적인 대응은 2009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에서 아동학대보호 전문기관 종사자의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매뉴얼¹⁰⁾을 제공한 것이 전부이다. 특히 최근 들어 불량 민원인에 의해 신변안전을 위협받는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 혹은 병원 응급실의 사례, 그리고 114 등 전화상담원의 피해가 언론 매체에 보도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에 의한 제도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들은 완벽하기 어려운 관련법과 제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심리·정서적 손상과 외상의 고통에 민감하게 공감하는 가운데 상담원 스스로 한계에 부딪치고 신체·정서·행동·업무상 상당한 정도의 소진을 경험한다. 상담 등 서비스지원과정에서 오는 소진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치유방안마련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동료의 지지와 상담사례연구,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10) 아동학대 신고자 및 상담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대응요령(2009)

인 자문,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강화와 보상, 조직의 업무체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상담원의 소진 예방조치 필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원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만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담원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지원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분노와 불안과 취약함과 혼돈을 지켜보고 감정적인 측면을 섬세하게 다뤄주면서 그들 내부의 자원과 강점을 찾아내고 강화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된다.

피해의 치유 과정은 단선적이기보다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는 나선형의 과정을 거친다. 상담원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로 인해 받은 불쾌한 감정과 고통을 다 걷어 내고 건강한 기운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옆에서 버텨주고, 끈질기게 기다려주고, 울타리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함을 나눠주게 된다. 또한 상담원은 피해자의 페이스에 맞추어 치유 과정이 진행되도록 상담 과정과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원은 자신이 피해자의 상처로부터 어떻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는지를 파악하여 피해자의 문제를 돕는 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 작업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고 고도로 몰입하는 정서적인 작업이며, 전체를 조망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시키는 과학적이고 고도로 지적인 작업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담원은 피해자의 모든 고통을 흡수하여 압도되기도 한다. 또한 억압해 두었던 상담원 자신의 문제가 통제할 수 없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과정에서 상담자들은 흥분과 깊은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는 상태가 상담원 자신의 사생활에까지 침투되면서 상담원은 악몽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고, 남성에 대한 적대감과 사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점차 지쳐간다. 이런 경우, 상담원은 스스로를 무장하고 피해자의 고통으로부터 거리두기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소진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업무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2. 상담원의 긴장완화를 위한 치유의 필요성

성폭력 피해자지원 상담 활동은 충격적인 경험과 고통을 가진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개입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대담함이 요구된다. 이는 강렬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활동이고 이차적 외상, 연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 소진은 자신의 직업에 높은 동기와 이상을 가지면서, 일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지속적으로 심각한 주제를 다루거나,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을 투여해도 치유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힘들어 하는 내담자에게 열정과 헌신으로 개입했던 상담자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면서 좌절하고 신체적으로도 지치게 된다.

소명감이 높은 상담원은 종종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다. 첫째, 피해자 관계에 깊이 빠져 들어가면서 거절하지 못한다. 둘째, 상담 회기를 늘린다. 셋째, 언제 어디서든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준다. 넷째, 피해자의 좌절과 무력감에 함께 빠지고, 진척이 없는 것에 좌절한다. 다섯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사례를 중단하지 못한다. 여섯째,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지루해 한다. 일곱째,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다. 여덟째, 지나치게 관여하여 피해자를 의존하게 하거나 표면적인 접촉만을 유지하는 등의 현상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원업무를 시작하기 전 초기 성폭력상담원 교육에서 소진방지프로그램을 통해, 위기에 처한 피해자 개입에 필요한 공감이 상담원들에게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으며, 소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소진을 예방 및 해결할 수 있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문제 또는 갈등이 피해자와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원들에게 현장 실습과 사례 슈퍼비전, 전문상담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성폭력피해자지원 전문상담원과 종사자 개인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헌신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활동에 몰입하거나 지원의 성과가 달성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통합지원센터나 상담소 등 성폭력피해자지원 조직의 과도하고 비체계적인 업무 구조나 적절한 보상 체계의 미비 등으로 압박감을 느낄 때, 자신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에서 오는 소진을 해소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상담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새롭게 만드는 방법과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관 차원에

서 이러한 방법과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

3. 상담원의 소진 예방을 위한 슈퍼비전의 필요성

성폭력피해자지원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가족, 가해자 상담을 위해서는 성폭력 실태에 대한 이해, 여성주의 상담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인간 심리와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상담 기술 훈련, 성폭력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대한 사례관리 경험, 슈퍼비전을 통한 훈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 지도감독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담자에게 이익대신 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상담원 자신의 소진이 심화될 수 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전문 상담원 활동을 살펴보면, 첫째, 성폭력상담원자는 여성주의적 관점, 성폭력상담분야의 이론교육과 상담방법의 훈련 등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둘째, 성폭력피해자의 치유, 성장, 발달을 돕는 고도의 지적·정신적 활동을 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넷째, 성폭력전문상담원 제도를 통한 엄격한 자격기준에 근거하여 활동한다. 다섯째, 표준 이상의 능력신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는다. 여섯째, 사회봉사적 활동을 하며 스스로의 행동 강령을 가지고 있다.

치유 프로그램을 담당할 상담원의 자격을 여성주의 상담, 성폭력피해자 중심 상담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여성학, 상담학,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 관련법과 제도, 사회복지학 관련 교과목 등을 포함한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을 이수하고 상담 실습 훈련을 받은 사람. 둘째, 각 상담 기관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지원 경험과 지속 면접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자. 셋째, 성폭력피해자 치유상담 훈련을 받은 사람(사례연구회, 슈퍼비전, 심화 과정, 보수교육 이수). 넷째,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을 받은 사람. 다섯째, 그 외에 각각의 프로그램에서는 특정하게 요구되는 진행자의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하다.

성폭력 상담과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대한 검토와 지도 즉, 슈퍼비전의 필요는 더욱 중요하다. 치유 상담의 슈퍼비전은 기본적으로 여성주의 상담자로서, 성폭력피해자상

담 현장의 사례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학,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등의 훈련이 되어있는 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상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협의체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소진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성폭력 문제의 여성학적·사회학적·법적·제도적 연구, 성폭력 상담의 유형별 사례 연구, 성폭력 사례 사정도구 개발, 사례개입 기술 연구와 훈련, 상담 사례와 지원 현황의 질적·양적 연구와 자료화가 필요하다. 이를 담당할 인적 자원의 확보, 여성주의 상담 슈퍼바이저의 양성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지원현장의 전문상담원과 종사자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본격적인 협의 체계와 물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자 지원 업무와 매우 유사한 가정폭력과 성매매피해자 지원 상담원, 그리고 아동학대 상담원,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임상심리전문가의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절 시사점

1980년대에 성폭력의 피해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성폭력문제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증가된 성폭력 및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1994년 성폭력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고, 이를 근거로 1990년대 중반부터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정책이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본 장에서 살펴본 정책동향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성폭력업무는 20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 분야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보다 앞서 있는 다른 전문자격을 벤치마킹하여 보다 전문상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사업무 종사자의 자격관리의 검토결과, 성폭력 업무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자격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국가자격화의 방안으로

자격 등급제, 등급별 평가방식, 기존 민간자격자에 대한 인정여부 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나 규제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저조하다. 단기적으로 보수교육 지침 등을 마련하여 성폭력시설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실시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상담원의 자격화 함께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 및 교과목 구성은 상담실무와 전문 과정에 비해 현장 적용에 활용도가 높은 고급과정이 제한적이며 타 분야에 비해 직무 및 직급을 반영한 교과목 구성과 소진 및 대리외상 등의 영역이 미흡하여서 현장에 필요한 사례 및 실습, 역할연습, 워크숍 위주의 고급과정을 확대하고 직무 및 직급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사자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소진예방 및 대리외상 영역까지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수교육방식은 대다수가 집합교육으로 기본과 전문과정은 2박3일과 3박4일 동안 진행되는데 비해 상담사례 및 평가 등의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는 고급과정은 1박 2일의 단기간 실시되어 교육효과가 저조할 가능성이 높아서 교육과정별로 교육기간의 균형적 안배가 필요하다.

여섯째,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은 주로 수도권에 위치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되어 지방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실시주기 또한 지속적이지 않아서 보수교육기회의 불균형이 제기된다. 단기적으로는 보수교육의 기회가 주기적·정기적으로 제공되도록 체계적인 교육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 지역적으로 보수교육기관의 균형적인 설치가 요구된다.

일곱째, 학대 또는 폭력관련 업무의 종사자는 다양한 유형의 위협을 받고 정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빠른 소진이 발생되고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사자를 양성하는데 큰 비용이 소요되고, 숙련된 종사자들이 다른 업무로의 이탈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업무의 종사자들의 신변안전, 정서 심리적 안정, 지속 근무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4장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양성교육 실태 및 욕구

제1절 양성교육의 실태

제2절 양성교육에 대한 욕구

제3절 양성교육 관련 FGI 결과

제4절 시사점



4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양성교육 << 실태 및 욕구

제1절 양성교육의 실태

본 절에서는 성폭력관련 기관 및 양성교육기관의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제공 실태와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이수 실태를 논의한다.

1.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제공 실태

성폭력관련 기관 및 양성교육기관이 2012년 1년간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성폭력관련 기관의 30.5%, 양성교육기관의 100.0%가 2012년에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한 횟수를 살펴보면, 2012년 1년간 성폭력관련 기관은 평균 1.33회, 양성교육기관은 평균 2.26회를 실시하였다. 2012년 1년간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성폭력관련 기관이 기관 당 15.93명, 양성교육기관은 기관 당 44.30명이었다.

따라서 양성교육기관이 실시 횟수와 수료자 수가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관만의 실적에 의한다면, 1년간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양성인원이 성폭력관련 기관 733명, 양성교육기관 1,019명으로 전체 1,752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율, 교육 횟수, 수료자 수

(단위: 개소, %)

구분	양성교육 실시율		양성교육 실시 횟수(2012년)		양성교육 수료자 수(2012년)	
	(분석대상수)	비율	(분석대상수)	평균 횟수	(분석대상수)	평균
성폭력관련 기관	(151)	30.5	(43)	1.33	(42)	15.93
양성교육기관	(23)	100.0	(23)	2.26	(23)	44.30

주: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관련 기관 및 양성교육기관이 2012년 1년간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제공한 주기는 필요할 때만 실시가 3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주기는 연 2회 실시로 성폭력관련 기관의 16.7%, 양성교육기관의 29.2%이었다.

기타 의견이 성폭력관련 기관의 47.6%, 양성교육기관의 33.3%로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 1회와 격년 실시(2년 1회)가 대부분이었다.

〈표 4-2〉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제공 주기(2012년)

(단위: %, 개소)

구분	필요할 때만 실시	연 2회	분기별 1회	월 1회	기타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33.3	16.7	2.4	-	47.6	100.0(42)
양성교육기관	33.3	29.2	4.2	-	33.3	100.0(24)

주: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한 회기 당 평균 교육기간은 1개월이 성폭력관련 기관의 26.8%, 양성교육기관의 29.2%로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기타 의견이 성폭력관련 기관의 56.1%, 양성교육기관의 54.2%로 많았는데, 이러한 의견에는 2~4개월이 대부분이었다.

〈표 4-3〉 양성교육 한 회기 당 평균 기간

(단위: %, 개소)

구분	2~3일	1주	2주	1개월	기타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7.3	4.9	4.9	26.8	56.1	100.0(41)
양성교육기관	-	4.2	12.5	29.2	54.2	100.0(24)

주: 1)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분석대상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이 제시한 양성교육 신청 자격요건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성폭력관련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한 자' 68.5%,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산업, 교육, 전문, 방송, 기술대학 등)' 67.8%, '사회복지 상담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65.8%로 이들 세 조건이 유사한 수준에서 높았다. 양성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졸업자

(산업, 교육, 전문, 방송, 기술대학 등)'이 95.7%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한 자' 82.6%,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78.3%로 이들 세 조건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았다.

〈표 4-4〉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신청 자격요건(중복응답)

(단위: 개소, %)

구분 (분석대상수)	성폭력관련 기관 (146)	양성교육기관 (23)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산업, 교육, 전문, 방송, 기술대학 등)	67.8	95.7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한 자	68.5	82.6
• 사회복지 상담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65.8	78.3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5.2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32.2	39.1
• 보건의료/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39.7	
•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5.8	39.1
• 기타		8.7

주: 1)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분석대상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과목을 살펴보았다. 교육기관의 90% 이상이 제공하고 있는 교과목은 '여성의 인권과 폭력'(성폭력관련 기관 90.9%, 양성교육기관 100.0%), '상담 기초이론'(성폭력관련 기관 93.2%, 양성교육기관 100.0%), '폭력상담의 여성주의적 접근'(성폭력관련 기관 93.2%, 양성교육기관 95.8%),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실제'(성폭력관련 기관 90.9%, 양성교육기관 95.8%), '상담자의 자세·역할 및 윤리'(성폭력관련 기관 90.9%, 양성교육기관 95.8%) 등이었다. 성폭력관련 기관에서는 제공비율이 높지 않으나 양성교육기관에서는 90% 이상 제공하고 있는 교과목으로 '폭력에 대한 이해 및 실태와 대처방안'(100.0%), '유형별 상담 기법/상담 원리와 기법'(100.0%), '상담사례연구 및 실습(시연)'(91.7%) 등이 있었다.

그렇지만 '현실치료'(성폭력관련 기관 45.5%, 양성교육기관 54.2%), '사이코·소시오드라마'(성폭력관련 기관 20.5%, 양성교육기관 62.5%), '공문서 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의 행정업무(성폭력관련 기관 18.2%, 양성교육기관 4.2%)'는 상대적으로 제공비율이 낮았다.

〈표 4-5〉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기관의 교과목(중복응답)

(단위: 개소, %)

구분 (분석대상수)	성폭력관련 기관 (44)	양성교육기관 (24)
• 여성의 인권과 폭력	90.9	100.0
• 대중매체속의 성문화	75.0	66.7
• 상담 기초이론	93.2	100.0
• 폭력에 대한 이해 및 실태와 대처방안	88.6	100.0
• 폭력상담의 여성주의적 접근	93.2	95.8
• 유형별 상담기법/상담 원리와 기법	88.6	100.0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실제	90.9	95.8
• 현실치료	45.5	54.2
• 상담자의 자세·역할 및 윤리	90.9	95.8
• 상담사례연구 및 실습(시연)	79.5	91.7
• 사اي코·소시오드라마	20.5	62.5
• 행정업무(공문서 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	18.2	4.2
• 왜곡된 성의식 바로 잡기		79.2
• 성폭력의 후유증과 치유		75.0
• 기타	34.1	37.5

주: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기실시한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구조를 강의와 실습의 비율에 의하여 파악한 결과, 현장 실습교육보다 강의교육에의 시간배분이 훨씬 많았다. 또한 성폭력 관련 기관이 양성교육기관보다 현장 실습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표 4-6〉기실시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강의와 실습 비율

(단위: 개소, %)

구분	성폭력 관련기관	양성교육기관
•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	82.8	88.5
• 현장 실습교육	17.2	11.5
계(수)	100.0(44)	100.0(24)

주: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전담인력은 2명이 가장 많았다. 또한 양성교육기관이 성폭력관련 기관보다 전담인력이 다소 많았다. 이는 양성교육기관이 성폭력관련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교육 횟수가 더 많고, 실시 주기가 더 짧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활용하는 전담인력 수

(단위: %, 개소)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20.5	45.5	11.4	6.8	15.9	100.0(44)
양성교육기관	12.5	41.7	16.7	12.5	16.7	100.0(24)

주: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을 진행하는 데 활용한 전담인력이 충분한지를 파악한 결과, “보통”이 가장 많았다. 즉, 성폭력관련 기관의 51.2%, 양성교육기관의 45.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렇지만 성폭력관련 기관의 30.2%가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양성교육기관의 37.5%가 ‘충분’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폭력관련 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추진하는 데 인력부족을 다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전담인력 수의 충분성

(단위: %, 개소)

구분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30.2	51.2	18.6	100.0(43)
양성교육기관	16.7	45.8	37.5	100.0(24)

주: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위한 전담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한 지를 파악하였다.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성폭력관련 기관(30.2%)은 총원 전담인력이 2명이라고 한 비율이 6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5명 이상 23.1%, 3명과 4명이 각 7.7%이었다.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양성교육기관(16.7%)은 총원 전담인력이 2명이라고 한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고, 1명과 4명이 각 25.0%이어서 성폭력관련 기관의 총원 필요 전담인력보다는 다소 적었다.

〈표 4-9〉 (부족한 경우) 총원되어야 하는 전담인력 수

(단위: %, 개소)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	61.5	7.7	7.7	23.1	100.0(13)
양성교육기관	25.0	50.0	-	25.0	-	100.0(4)

주: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을 실제 담당하는 강사를 어떻게 확보하는 지를 파악하였다. 기관 내 종사자와 외부강사를 병행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성폭력관련 기관의 86.0%, 양성교육기관의 8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외부강사만 활용하는 경우로 성폭력관련 기관의 9.3%, 양성교육기관의 16.7%이었다. 기관 내 종사자만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는 양성교육기관은 없었으나, 성폭력관련 기관은 4.7%이었다.

〈표 4-10〉 귀 기관에서 강사를 활용하는 방식

(단위: %, 개소)

구분	기관 내 종사자만 활용	외부강사만 활용	기관 내 종사자와 외부강사를 병행하여 활용	기타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4.7	9.3	86.0	-	100.0(43)
양성교육기관	-	16.7	83.3	-	100.0(24)

주: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성폭력관련 기관의 4.7%가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예산부족'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의 응답문항으로 '상담소 내부인력으로 충분하므로'와 '외부전문가와 연계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외부전문가의 활용 필요성이 있고, 활용할 외부전문가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4-11〉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주된 이유

(단위: %, 개소)

구분	상담소 내부인력으로 충분하므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예산이 부족하여	상담소의 위치 때문에	외부전문가와 연계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	계(수)
성폭력 관련 기관	-	100.0	-	-	-	100.0(2)

주: 1) 양성교육기관은 모두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성폭력관련 기관의 95.3%가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교과목과 관련된 이론교육'이 89.7%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정신과 치료’ 64.1%, ‘미술 치료’와 ‘상담사례연구’가 각 56.4%로 비교적 많았다. 그렇지만 ‘성 교육’(41.0%), ‘사이코·소시오 드라마’(38.5%), ‘인성 교육’(17.9%)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양성교육기관이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교과목과 관련된 이론교육이 87.5%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사이코·소시오 드라마’와 ‘상담사례연구’가 모두 58.3%이었으며, ‘정신과 치료’ 54.2%, ‘성 교육’ 50.0% 등이었다. 그렇지만 ‘인성 교육’(25.0%)과 ‘미술 치료’(41.7%)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표 4-12〉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중복응답)

(단위: 개소, %)

구분 (분석대상수)	성폭력관련 기관 (39)	양성교육기관 (24)
• 교과목과 관련된 이론교육	89.7	87.5
• 미술 치료	56.4	41.7
• 사이코·소시오 드라마	38.5	58.3
• 상담사례연구	56.4	58.3
• 정신과 치료	64.1	54.2
• 인성 교육	17.9	25.0
• 성 교육	41.0	50.0
• 기타	23.1	25.0

주: 1)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중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외부강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시설과 연계된 외부강사 인력풀 중에서 선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폭력관련 기관의 73.0%, 양성교육기관의 68.2%가 시설과 연계된 외부강사 인력풀 중에서 외부강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관련 기관의 18.9%, 양성교육기관의 13.6%는 ‘내 부직원과의 연고 및 소개’에 의해 외부강사를 확보하였고, 성폭력관련 기관의 5.4%, 양성교육기관의 18.2%는 ‘학교 및 기관의 추천’에 의하였다.

〈표 4-13〉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강사를 섭외하는 방법

(단위: %, 개소)

구분	내부직원과의 연고 및 소개	시설과 연계된 외부강사 인력풀 중에서 선택	학교 및 기관의 추천	기타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18.9	73.0	5.4	2.7	100.0(37)
양성교육기관	13.6	68.2	18.2	-	100.0(22)

주: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외부강사를 확보하는데 '낮은 급여수준'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즉, 성폭력관련 기관의 67.5%, 양성교육기관의 77.3%가 낮은 급여수준 때문에 외부강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성폭력관련 기관의 17.5%, 양성교육기관의 4.5%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성폭력관련 기관의 7.5%, 양성교육기관의 9.1%가 '장래성과 기회의 부족' 때문에 전문 강사 확보가 어렵다고 하였다.

〈표 4-14〉 귀 기관이 전문 강사를 확보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개소)

구분	낮은 급여수준	질 낮은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	장래성과 기회의 부족	기타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67.5	-	17.5	7.5	7.5	100.0(40)
양성교육기관	77.3	-	4.5	9.1	9.1	100.0(22)

주: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성폭력관련 기관의 86.7%, 모든 양성교육기관이었다.

〈표 4-15〉 양성교육 홍보 수행 비율

(단위: 개소, %)

구분	성폭력관련 기관	양성교육기관
(분석대상수)	(45)	(24)
양성교육 홍보를 수행하는 비율	86.7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성폭력관련 기관의 88.9%, 양성교육기관의 91.7%가 인터넷(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는 홍보방식으로 성폭력관련 기관은 '정기간행물(소식지)'(55.6%), 양성교육기관은 '브로슈어 및 리플릿'(66.7%)이 있었다.

〈표 4-16〉 (홍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홍보를 수행하는 방법(중복응답)

(단위: 개소, %)

구분 (분석대상수)	성폭력관련 기관 (36)	양성교육기관 (24)
• 브로슈어 및 리플릿	36.1	66.7
• 정기간행물(소식지)	55.6	37.5
• 물품이용(스티커, 휴지)	16.7	8.3
• 방송(TV, 라디오)	8.3	20.8
• 인터넷(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등)	88.9	91.7
• 기타	30.6	20.8

주: 1)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양성교육 실시 기관 중 홍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분석대상으로 중복응답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교육비용으로 교육생 1인당 약 24만 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성폭력관련 기관은 평균 24만 4천원, 양성교육기관은 평균 24만 8,300원을 상담원 교육비로 받았다

〈표 4-17〉 양성교육 참여자로부터 받는 교육비용(1인당 평균)

(단위: 개소, 만원)

구분	(분석대상수)	평균
성폭력관련 기관	(43)	24.40
양성교육기관	(24)	24.83

주: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성폭력관련 기관의 95.6%가 양성교육의 실시로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표 4-18〉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가 기관운영에 도움된 비율

(단위: 개소, %)

구분 (분석대상수)	성폭력관련 기관 (45)
도움된 비율	95.6

주: 성폭력관련 기관 중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를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기관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1순위만 살펴보면, ‘전문 인력 확충’에 의한 도움이 7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지역주민의 인식변화’ 9.3%, ‘기관평가에 도움이 됨’과 ‘특성화 사업 개발 가능’이 각 4.7%이었으며, ‘재정지원 확대’는 2.3%에 불과하였다.

〈표 4-19〉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후 (도움이 된 경우의)향상된 점 우선순위

(단위: 개소, %)

구분	성폭력관련 기관	
	1순위	2순위
• 재정지원 확대	2.3	4.7
• 전문 인력 확충	76.7	9.3
• 기관평가에 도움이 됨	4.7	11.6
• 사업운영에 효율성 제고	2.3	27.9
• 특성화 사업 개발 가능	4.7	2.3
• 지역주민의 인식변화	9.3	44.2
• 기타	-	-
계(수)	100.0(43)	100.0(43)

주: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가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스스로 판단하는 양성교육 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문제점이 없다고 한 비율은 성폭력관련 기관의 22.5%, 양성교육기관의 37.5%이었고, 반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한 비율은 성폭력관련 기관의 77.5%, 양성교육기관의 62.5%이었다.

성폭력관련 기관이 제시한 양성교육 과정상의 문제점은, ‘상담사례실습이 부족’ 30.0%, ‘법원 참관이 부족’ 17.5%, ‘교육방법이 일방적인 강의위주’와 ‘행정 실무교육(서류정리, 통계, 보도자료 작성 등)이 부족’이 각 15.0%이었다. 양성교육기관이 제시한 양성교육 과정상의 문제점은, ‘법원 참관이 부족’ 29.2%, ‘상담사례실습이 부족’ 16.7%, ‘비싼 수강료’ 12.5%이었다

〈표 4-20〉 성폭력상담전문 양성교육 과정상의 문제점(중복응답)

(단위: 개소, %)

구분 (분석대상수)	성폭력관련 기관 (40)	양성교육기관 (24)
문제점 없음	22.5	37.5
문제점 있음	77.5	62.5
문제점		
• 교육방법이 일방적인 강의위주였다	15.0	4.2
• 법원 참관이 부족하였다	17.5	29.2
• 상담사례실습이 부족하였다	30.0	16.7
• 교육담당자가 부적절하였다	-	-
• 비싼 수강료	5.0	12.5
• 교육시간(요일, 시간대)이 부적절하였다	10.0	8.3
• 교육장소(거리)가 부적절하였다	7.5	-
• 교육환경(냉방, 환기시설)이 열악하였다	12.5	4.2
• 시청각 자료의 부족	7.5	4.2
• 행정 실무교육이 부족하였다(서류정리, 통계, 보도자료작성 등)	15.0	8.3
• 기타	15.0	4.2

주: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양성교육 실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양성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가장 큰 두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관련 기관의 어려움은 '재정적 부담' 34.9%, '전문 인력 확보' 27.9%이었고, 양성교육기관의 어려움은 '교육생 모집' 33.3%, '재정적 부담' 20.8%이었다.

〈표 4-21〉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개소)

구분	성폭력관련 기관	양성교육기관
•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다	27.9	12.5
• 시설 및 환경이 기관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	7.0	-
• 효과적인 프로그램 관리가 부족하다	2.3	-
•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부족하다	7.0	16.7
• 재정적 부담이 크다	34.9	20.8
• 유사기관 간에 사업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14.0	8.3
• 관련기관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4.7	-
• 교육생 모집이 어렵다		33.3
• 기타	2.3	8.3
계(수)	100.0(43)	100.0(24)

주: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양성교육 실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스스로 판단하는 양성교육 실시 수준을 보면, ‘(매우) 적절’ 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폭력관련 기관의 경우, ‘교육 강사의 전문성’은 ‘(매우) 적절’ 비율이 84.1%로 가장 높았고, ‘교육비용(수강료)의 적절성’은 52.3%로 가장 낮았다. 마찬가지로 양성교육기관의 경우, ‘교육 강사의 전문성’은 ‘(매우) 적절’ 비율이 95.7%로 가장 높았고, ‘교육비용(수강료)의 적절성’이 37.5%로 가장 낮았다.

〈표 4-22〉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수준

(단위: %, 개소)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교육비용(수강료)의 적절성	2.3	11.4	34.1	43.2	9.1	100.0(44)
교육방식의 적절성(이론, 실습)	-	2.3	27.3	52.3	18.2	100.0(44)
교육내용의 다양성	2.3	2.3	20.5	47.7	27.3	100.0(44)
교육 강사의 전문성	-	2.3	13.6	50.0	34.1	100.0(44)
교육시간의 적절성	-	6.8	29.5	38.5	25.0	100.0(44)
교육장소의 접근성	-	6.8	15.9	56.8	20.5	100.0(44)
양성교육기관						
교육비용(수강료)의 적절성	-	29.2	33.3	20.8	16.7	100.0(24)
교육방식의 적절성(이론, 실습)	-	4.3	21.7	39.1	34.8	100.0(23)
교육내용의 다양성	-	-	17.4	43.5	39.1	100.0(23)
교육 강사의 전문성	-	-	4.3	60.9	34.8	100.0(23)
교육시간의 적절성	-	4.3	21.7	52.2	21.7	100.0(23)
교육장소의 접근성	-	-	18.2	54.5	27.3	100.0(22)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2.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양성교육 이수 실태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전문상담원 96.0%, 일반종사자 51.8%이었다. 전문상담원은 당연히 이수하여야 하지만, 아직 이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일반종사자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업무효과를 위해 이수하였거나 기이수한 자가 우선 채용되었다고 하겠다.

양성교육 이수자의 수료시간을 보면, 전문상담원의 67.5%, 일반종사자의 54.4%가 64시간을 수료하였고, 100시간 수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에 관한 규정이 최근에 64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표 4-23〉 양성교육 수료율과 수료시간

(단위: 명, %)

구분	수료율		수료시간 ¹⁾			
	(분석대상수)	비율	64시간	100시간	기타	계(수)
전문상담원	(253)	96.0	67.5	31.3	1.2	100(243)
일반종사자	(110)	51.8	54.4	36.8	8.8	100(57)

주: 1) 성폭력관련 기관 종사자 중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 전문상담원이 받은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의 주관기관을 살펴보았다. 전문상담원의 경우는 성폭력상담소(시설)가 4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반대학 또는 평생교육원 17.2%, 기타 여성 단체(NGO) 14.3% 등이었다. 이와는 달리 일반종사자는 사이버대학 과정이 3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폭력상담소(시설) 19.6%, 기타 여성 단체(NGO) 16.1% 등의 순이었다.

〈표 4-24〉 성폭력 전문상담원 수료증에 명시된 주관기관

(단위: %, 명)

구분	전문상담원	일반종사자
성폭력상담소(시설)	44.1	19.6
가정폭력상담소	3.4	-
기타 여성 단체(NGO)	14.3	16.1
일반대학 또는 평생교육원	17.2	10.7
종교시설(기독교 등 종교법인)	4.2	3.6
사이버대학 과정	5.9	30.4
지자체운영 여성정책관련 기관(여성회관 또는 여성발전센터 등)	8.8	8.9
기타	2.1	10.7
계(수)	100.0(238)	100.0(56)

주: 성폭력관련 기관 종사자 중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에 실제 지불한 1인당 비용은 전문상담원 평균 28만 2백 원, 일반종사자 평균 25만 6천원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4-25〉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이론+실습비용포함)에서 실제 지불한 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분석대상수)	평균
전문상담원	(221)	28.02
일반종사자	(47)	25.60

주: 성폭력관련 기관 종사자 중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후 자질이 향상되었거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파악한 결과, 전문상담원의 81.3%, 일반종사자의 71.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4-26〉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후 자질향상 또는 직무수행 도움 여부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자질 향상 및 도움률
전문상담원	(242)	81.4
일반종사자	(57)	71.9

주: 성폭력관련 기관 종사자 중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으로 인해 향상된 자질로는 전문상담원은 '성폭력 및 관련법에 대한 이해 증가'와 '상담기법에 대한 이해 증가'가 각각 26.2%, 24.1%로 많았다. 일반종사자의 경우는 '성폭력 및 관련법에 대한 이해 증가'와 '업무에 대한 자신감 향상'이 각각 42.5%, 20.0%로 많았다.

〈표 4-27〉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이후 향상된 점 우선순위

(단위: %, 명)

구분	전문상담원		일반종사자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상담기법에 대한 이해 증가	24.1	11.8	10.0	2.7
업무에 대한 자신감 향상	11.0	11.3	20.0	8.1
자긍심 향상	2.1	5.9	-	2.7
성폭력 및 관련법에 대한 이해 증가	26.2	23.1	42.5	27.0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이해도 향상	18.3	18.3	17.5	16.2
상담일지 작성 및 상담 실무능력 향상	1.0	3.2	-	5.4
성폭력관련 상담소 및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증가	17.3	26.3	10.0	37.8
기타	-	-	-	-
계(수)	100.0(191)	100.0(186)	100.0(40)	100.0(37)

주: 성폭력관련 기관 종사자 중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표 4-28〉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통해 습득한 직무내용의 반영 또는 기관 내외의 신임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문상담원	1.7	7.6	33.1	49.2	8.5	100.0(236)	3.55
일반종사자	3.6	14.3	44.6	33.9	3.6	100.0(56)	3.20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전문상담원의 88.1%, 일반종사자의 94.6%로 매우 많았다. 지적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상담원은 '상담사례실습 부족'이 52.5%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으며, 다음은 '일방적인 강의위주의 교육방법' 36.9%, '서류정리, 통계, 보도자료 작성 등 행정 실무교육 부족' 33.1%의 순이었다. 일반종사자는 '일방적인 강의위주의 교육방법'이 46.4%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하였고, 다음은 '상담사례실습 부족' 42.9%, '법원 참관 부족' 32.1%의 순이었다.

〈표 4-29〉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문제점(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전문상담원 (236)	일반종사자 (56)
문제점 없음		11.9	5.4
문제점 있음		88.1	94.6
문제점	교육방법이 일방적인 강의위주였다	36.9	46.4
	법원 참관이 부족하였다	25.8	32.1
	상담사례실습이 부족하였다	52.5	42.9
	교육담당자가 부적절하였다	8.9	19.6
	비싼 수강료	13.1	7.1
	교육시간(요일, 시간대)이 부적절하였다	8.5	8.9
	교육장소(거리)가 부적절하였다	18.6	21.4
	교육환경(냉방, 환기시설)이 열악하였다	11.0	1.8
	시청각 자료의 부족	15.7	7.1
	행정 실무교육이 부족하였다(서류정리, 통계, 보도자료작성 등)	33.1	23.2
기타	1.3	-	

주: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최근 5년 이내에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수료한 비율은 전문상담원의 59.6%, 일반종사자의 64.9%이었다. 성폭력 업무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일반종사자

는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으로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최근 수료율이 높은 것은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최근 수료율이 59.6%나 된다는 사실은 이 분야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음을 시사한다. 즉, 직업안정성에서 문제점이 있음이다.

〈표 4-30〉 최근 5년 이내에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율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수료율
전문상담원	(240)	59.6
일반종사자	(57)	64.9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최근 5년 이내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교육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전문상담원의 48.2%, 일반종사자의 44.5%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일반종사자는 '교육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가 44.5%로 높았다.

전문상담원은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불만족도보다 높았지만, 일반종사자는 2개 항목에서 만족도보다 불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들 두 항목은 '교육방식의 적절성(이론, 실습)'과 '교육장소의 접근성'이었다.

〈표 4-31〉 최근 5년 이내 수료자의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전문상담원						
교육비용(수강료)의 적절성	2.9	18.8	52.2	18.1	8.0	100.0(138)
교육방식의 적절성(이론, 실습)	2.9	11.0	49.3	31.6	5.1	100.0(136)
교육내용의 다양성	3.6	11.7	38.7	36.5	9.5	100.0(137)
교육 강사의 전문성	4.4	8.0	39.4	38.0	10.2	100.0(137)
교육시간의 적절성	1.5	5.1	50.4	37.2	5.8	100.0(137)
교육장소의 접근성	7.2	16.7	41.3	30.4	4.3	100.0(138)
일반종사자						
일반종사자						
교육비용(수강료)의 적절성	-	5.6	66.7	25.0	2.8	100.0(36)
교육방식의 적절성(이론, 실습)	-	20.0	62.9	11.4	5.7	100.0(35)
교육내용의 다양성	-	22.9	45.7	25.7	5.7	100.0(35)
교육 강사의 전문성	5.6	11.1	38.9	38.9	5.6	100.0(36)
교육시간의 적절성	-	13.9	41.7	41.7	2.8	100.0(36)
교육장소의 접근성	2.7	29.7	40.5	24.3	2.7	100.0(37)

주: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 중 최근 5년 이내에 양성교육을 수료한 종사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제2절 양성교육에 대한 욕구

1.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적절한 시간 및 주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시간에 대해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성폭력관련 기관은 100~150시간 미만을 가장 선호하였고(56.6%), 양성교육기관은 100시간 미만을 가장 선호하였다(54.2%). 이와 같이 응답자에 따라 선호하는 양성교육 시간이 상이한 이유는 실제 성폭력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학습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강사인력 확보와 교육과정 수행에서의 부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4-32〉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적절한 시간”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의 의견
(단위: %, 개소)

구분	100시간 미만	100~150시간 미만	150~200시간 미만	200~250시간 미만	기타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33.8	56.6	9.0	0.7	-	100.0(145)
양성교육기관	54.2	41.7	4.2	-	-	100.0(24)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의 적절한 시간에 대해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는 100~150시간 미만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상담원 56.6%, 일반종사자 52.4%). 다음으로는 100시간 미만을 선호하였다(전문상담원 30.5%, 일반종사자 40.0%).

〈표 4-33〉 “양성교육의 적절한 시간”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

(단위: %, 명)

구분	100시간 미만	100~150시간 미만	150~200시간 미만	200~250시간 미만	기타	계(수)
전문상담원	30.5	56.6	10.8	2.0	-	100.0(249)
일반종사자	40.0	52.4	4.8	1.9	1.0	100.0(105)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적절한 주기에 대해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성폭력관련 기관은 연 1회를 가장 선호하였고(50.3%), 양성교육기관은 3개월에 1회와 연 1회를 동일한 비율로 가장 선호하였다(37.5%).

〈표 4-34〉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적절한 주기”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의 의견
(단위: %, 개소)

구분	3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연 1회	기타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11.7	35.2	50.3	2.8	100.0(145)
양성교육기관	37.5	16.7	37.5	8.3	100.0(24)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의 적절한 주기에 대해 일반종사자는 연 1회를 가장 선호하였고(44.8%), 다음은 6개월에 1회(38.1%), 3개월에 1회(16.2%)의 순이었다.

〈표 4-35〉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적절한 주기에 대한 일반종사자 의견

(단위: %, 명)

구분	3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연 1회	기타	계(수)
일반종사자	16.2	38.1	44.8	1.0	100(105)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따라서 전반적으로 양성교육의 주기는 연 1~2회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본적으로 연 1회는 반드시 양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교육대상수에 따라 연 2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프로그램 당 적절한 기간

양성교육의 프로그램 당 적절한 기간에 대해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1개월을 가장 선호하였다. 즉, 성폭력관련 기관의 41.4%, 양성교육기관의 47.8%가 프로그램 당 1개월의 교육기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36〉 “양성교육의 프로그램 당 적절한 기간”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의 의견

(단위: %, 개소)

구분	2~3일	1주	2주	1개월	기타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18.6	15.7	15.0	41.4	9.3	100.0(140)
양성교육기관	-	4.3	8.7	47.8	39.1	100.0(23)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의 프로그램 당 적절한 기간에 대해 일반종사자의 37.5%가 2~3일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은 1개월 25.0%, 1주 17.3%, 2주 12.5%의 순이었다.

〈표 4-37〉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프로그램 당 적절한 기간에 대한 일반종사자 의견

(단위: %, 명)

구분	2~3일	1주	2주	1개월	기타	계(수)
일반종사자	37.5	17.3	12.5	25.0	7.7	100(104)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의 프로그램 당 적정 기간을 양성교육기관은 1개월을 선호하고, 성폭력시설의 일반종사자는 2~3일을 선호하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일반종사자들은 현재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주로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당 적정기간은 약 1개월이며, 현직에 있는 일반종사자를 위한 단기 코스의 집중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신청자격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 신청자격 요건이 적절한지를 파악한 결과, 양성교육기관의 65.2%는 적절하다고 하여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34.8%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부적절 이유는 '학력수준'을 가장 크게 보았으며(62.5%), 다음은 '전공분야'(25.0%), '사회복지사 자격 여부'(12.5%) 등의 순이었다.

〈표 4-38〉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 신청자격 요건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주된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된 이유 ¹⁾						계(수)
	(분석 대상수)	비율	학력 수준	사회복지사 자격 여부	경력 기간	전공 분야	근무 시설	기타	
양성교육 기관	(23)	34.8	62.5	12.5	-	25.0	-	-	100.0(8)

주: 1) 양성교육기관 중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신청자격요건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4.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내용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내용을 강의교육(이론 및 실기)과 현장실습으로 구분할 경우의 적절한 배분비율을 파악하였다. 성폭력관련 기관은 강의교육(이론 및 실기)과 현장실습을 약 7:3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양성교육기관은 8:2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강의교육이 중요하고 실습교육도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실습교육은 성폭력관련 기관이 양성교육기관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4-39〉 “양성교육의 적절한 배분 비율(평균)”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의 의견

(단위: 개소, %)

구분	성폭력관련 기관	양성교육기관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	70.75	80.22
현장실습교육	29.25	19.78
계(수)	100.0(44)	100.0(24)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강의교육(이론 및 실기)과 현장실습의 적절한 배분비율에 대한 선호도를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폭력 전문상담원은 강의교육(이론 및 실기)과 현장실습을 약 7:3을 선호하였으며, 일반종사자는 6:4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성폭력관련 기관의 현장 종사자들은 실습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이는 일반종사자가 더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100시간 교육을 강의교육과 현장실습으로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100시간 교육을 강의교육으로 하고, 현장실습을 별도로 약 30~40% 확보할 것인지, 이들 두 안을 적절히 혼합(예시, 강의교육 90시간, 현장실습 30시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0〉 “양성교육의 적절한 배분 비율”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문상담원	일반종사자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	66.12	62.31
현장실습교육	33.88	37.69
계(수)	100.0(245)	100.0(104)

주: 성폭력관련 기관 종사자 중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의 강의교육 내용에 대한 욕구를 이론교육, 토론교육, 상담사례연구, 기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상담사례연구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다음은 이론교육, 토론교육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즉, 상담사례연구에 대한 욕구가 전문상담원의 89.1%, 일반종사자의 88.7%로 컸고, 다음은 이론교육에 대한 욕구로 전문상담원의 53.2%, 일반종사자의 59.4%이었으며, 토론교육은 전문상담원의 50.8%, 토론교육 42.5% 등이었다. 그 외의 강의방식에 대한 욕구는 크게 낮았다. 따라서 강의교육은 상담사례연구, 이론교육, 토론교육의 순으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수요자 욕구에 초점을 둔 방식이라 판단된다.

〈표 4-41〉 “양성교육에 필요한 강의교육”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이론교육	토론교육	상담사례연구	기타
전문상담원	(248)	53.2	50.8	89.1	4.4
일반종사자	(106)	59.4	42.5	88.7	5.7

주: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분석대상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의 현장실습 내용에 대한 욕구를 ‘성폭력관련 기관 실습’, ‘병원실습(성폭력 관련 사례드라마 참관, 사이코·소시오 드라마)’, ‘법원참관 현장실습’ 등으로 구분하여 중복응답에 의해 욕구를 파악하였다. ‘성폭력관련기관 실습’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전문상담원의 75.6%, 일반종사자의 81.9%), 다음은 ‘법원참관 현장실습’이었으며(전문상담원의 64.5%, 일반종사자의 58.1%), ‘병원실습’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전문상담원의 55.0%, 일반종사자의 43.8%). 따라서 성폭력관련 기관, 병원, 법원 등을 현장실습 지정기관으로 할 필요가 있다.

〈표 4-42〉 “양성교육에 필요한 현장실습”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성폭력 관련기관실습	병원실습 (성폭력관련 사례드라마 참관, 사이코·소시오 드라마)	법원참관현장실습	기타
전문상담원	(242)	75.6	55.0	64.5	1.7
일반종사자	(105)	81.9	43.8	58.1	1.9

주: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분석대상으로 중복응답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의 교과목에 대하여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의 의견을 파악하였는데, 선호 교과목으로 1순위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관련 기관에서 5% 이상의 높은 선호를 보이는 교과목은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실제’(14.5%), ‘여성의 인권과 폭력’(13.8%), ‘폭력상담의 여성주의적 접근’(11.0%), ‘상담사례연구 및 실습(시연)’(8.3%), ‘폭력에 대한 이해 및 실태와 대처방안’(6.9%),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이해’(6.2%), ‘상담자의 자세, 역할 및 윤리’(5.5%) 등 7개 과목이었다.

〈표 4-43〉 “향후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양성교육 교과목”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의 의견

(단위: %, 개소)

구분	성폭력관련 기관		양성교육기관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 여성의 인권과 폭력	13.8	5.6	13.0	8.7
• 대중매체속의 성문화	4.8	6.3	13.0	-
• 상담기초이론	4.1	1.4	8.7	-
• 폭력에 대한 이해 및 실태와 대처방안	6.9	3.5	8.7	13.0
• 폭력상담의 여성주의적 접근	11.0	8.4	13.0	4.3
• 유형별 상담기법/상담 원리와 기법	4.8	7.0	4.3	-
•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실제	14.5	3.5	8.7	8.7
• 현실치료	2.1	3.5	-	4.3
• 상담자의 자세, 역할 및 윤리	5.5	4.9	4.3	13.0
• 상담사례연구 및 실습(시연)	8.3	13.3	4.3	17.4
• 사이코·소시오드라마	2.1	2.1	4.3	-
• 행정업무공문서 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	2.1	4.9	4.3	8.7
• 성폭력관련 법률 이해	4.8	8.4		
• 심리검사(애니어그램)	4.1	2.1		
• 성폭력 사건 수사절차 과정	2.8	8.4		
•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이해	6.2	11.9		
• 성폭력 가해자 특성의 이해	2.1	4.9		
•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13.0	17.4
• 성폭력의 후유증과 치유			-	4.3
• 기타	-	-	-	-
계(수)	100(145)	100(143)	100(23)	100(23)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양성교육기관에서 5% 이상의 높은 선호를 보이는 교과목은 ‘여성의 인권과 폭력’(13.0%), ‘대중매체속의 성문화’(13.0%), ‘폭력상담의 여성주의적 접근’(13.0%),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13.0%), ‘상담기초이론’(8.7%), ‘폭력에 대한 이해 및 실태와 대처방안’(8.7%),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실제’(8.7%) 등 7개 과목이었다.

5.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적절한 평가방식

실제로 양성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적절한 평가방식을 파악한 결과, 필기시험과 실습평가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고, 필기시험 또는 실습평가 한가지만을 해야 한다는 비율은 12.5%에 불과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평가 불필요 등의 많은 의견이 25.0%이었으나 의견이 매우 상이하여 고려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성교육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양성교육에서의 현장실습의 중요성이 제시된 점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44〉 양성교육수료자 평가방식으로 적절한 것

(단위: %, 개소)

구분	양성교육기관
필기시험	12.5
실습평가	12.5
필기시험 + 실습평가	50.0
기타	25.0
계(수)	100.0(24)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6.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전문 강사의 자격기준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전문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의견을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성폭력관련 기관의 54.7%, 양성교육기관의 65.2%가 “교육과정 수료+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대면상담 경력 2년 이상인자”를 선호하였으며, 그 외의 의견은 소수의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박사학위 소지자와 집단상담경력에 대한 중요성은 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45〉 "양성교육 전문 강사의 적절한 자격기준"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의 의견

(단위: %, 개소)

구분	성폭력관련 기관	양성교육 기관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대면상담 경력 2년 이상인 자	54.7	65.2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집단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16.9	-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박사 학위 이상 + 대면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	1.4	8.7
교육과정 수료 +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이상 +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 + 집단상담경력 5년 이상인 자	8.1	-
기타	18.9	26.1
계(수)	100.0(148)	100.0(23)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다음으로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전문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의 의견을 파악하였다.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50.0%, 일반종사자의 35.8%가 “교육과정 수료+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대면상담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선호하였다. 다음으로 제시하는 자격기준은 성폭력 전문상담원이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집단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20.1%)이었고, 일반종사자는 “교육과정 수료 +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이상 +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 + 집단상담경력 5년 이상인 자”(27.4%)이었다.

〈표 4-46〉 “양성교육 전문 강사의 적절한 자격기준”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문상담원	일반종사자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대면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50.0	35.8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집단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20.1	15.1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박사 학위 이상 + 대면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	4.5	6.6
교육과정 수료 +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이상 +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 + 집단상담경력 5년 이상인 자	14.8	27.4
기타	10.7	15.1
계(수)	100.0(244)	100.0(106)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7.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적절한 비용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양성교육 참여자로부터 받는 교육비용으로 성폭력관련 기관은 28.6만원을, 양성교육기관은 29.4만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47〉 "양성교육 참여자로부터 받는 적절한 교육비용(1인당 평균)"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의 의견

(단위: 개소, 만원)

구분	(분석대상수)	평균
성폭력관련 기관	(142)	28.6
양성교육기관	(24)	29.4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그렇지만 교육을 받았거나 향후 받아야 할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들은 다소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즉, 1인당 교육비용으로 전문상담원은 20.72만원이, 일반종사자는 16.43만원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교육실시기관과의 적정 교육비 차이가 전문상담원은 약 9만원, 일반종사자는 약 13만원이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48〉 "양성교육의 적절한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

(단위: 명, 만원)

구분	(분석대상수)	평균 본인부담금액
전문상담원	(231)	20.72
일반종사자	(97)	16.43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8.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적절한 위탁기관

2012년 1년간 양성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정부에서 향후 양성교육을 위탁 운영할 경우, 적절한 위탁기관을 중복응답으로 파악하였다. 성폭력관련 기관은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61.2%), '성폭력상담소 또는 상담소부설교육원'(58.5%), '한국여성인권진흥원'(39.5%)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양성교육기관은 '성폭력상담소 또는 상담소부설교육원'(62.5%), '가족 및 여성관련 연구원'(25.0%), '일반대학부설 교육훈련시설 또는 평생교육원'(25.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기관'(25.0%)을 선호하였다.

〈표 4-49〉 "양성교육 위탁 운영기관으로 적절한 기관(중복응답)"에 대한 양성교육 실시기관의 의견

(단위: 개소, %)

구분 (분석대상수)	성폭력관련 기관 (147)	양성교육기관 (2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9.5	12.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61.2	20.8
가족 및 여성관련 연구원	15.0	25.0
일반대학부설 교육훈련시설 또는 평생교육원	18.4	25.0
성폭력상담소 또는 상담소부설교육원	58.5	62.5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기관	34.0	25.0
기타	0.7	16.7

주: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분석대상으로 중복응답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향후 양성교육을 위탁운영 할 경우, 적절한 위탁기관을 중복응답으로 파악하였다. 전문상담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63.5%), '성폭력상담소 또는 상담소부설교육원'(52.6%), '한국여성인권진흥원'(42.6%)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일반종사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58.3%), '한국여성인권진흥원'(35.2%),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기관'(33.3%)을 선호하였다.

〈표 4-50〉 "양성교육 및 강사양성기관으로 위탁운영하기에 적절한 기관(중복응답)"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전문상담원 (249)	일반종사자 (10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42.6	35.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63.5	58.3
가족 및 여성관련 연구원	15.3	14.8
일반대학부설 교육훈련시설 또는 평생교육원	19.7	20.4
성폭력상담소 또는 상담소부설교육원	52.6	26.9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기관	28.1	33.3
기타	0.8	0.9

주: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분석대상으로 중복응답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9.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활성화 방안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로 제시하였다(성폭력관련 기관의 37.0%, 양성교육기관의 50.0%).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는 것은 기관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였는데, 성폭력관련 기관은 ‘교육과정 및 방식의 다양화’(15.8%), ‘전문 인력 확충’(14.4%), ‘양성교육훈련의 법제화’(13.7%) 등을 제시하였고, 양성교육기관은 ‘양성교육훈련의 법제화’(16.7%), ‘교육과정 및 방식의 다양화’(12.5%), ‘지역주민의 인식제고’(12.5%) 등을 제시하였다.

〈표 4-51〉 "양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의 의견

(단위: %, 개소)

구분	성폭력관련 기관	양성교육기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37.0	50.0
전문 인력 확충	14.4	-
교육과정 및 방식의 다양화	15.8	12.5
교육 환경 개선	1.4	4.2
지역주민의 인식제고	1.4	12.5
양성교육훈련의 법제화	13.7	16.7
유사 기관간의 통합	5.5	-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인적·물적 자원 확보)	6.8	4.2
기타	4.1	-
계(수)	100.0(146)	100.0(24)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 종사자를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전문상담원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였고(24.7%), 다음은 ‘교육수료 후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23.9%), ‘교육과정 및 방식의 다양화’(13.0%), ‘취업기회 확대’(12.1%), ‘현 종사자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주제 선정’(11.3%)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일반종사자는 ‘교육수료 후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를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였고(23.4%), 다음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22.4%), ‘교육과정 및 방식의 다양화’(17.8%), ‘현 종사자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주제 선정’(13.1%)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표 4-52〉 “양성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문상담원	일반종사자
정부의 교육비 지원	24.7	22.4
교육수료 후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	23.9	23.4
교육담당자 수준 제고	4.0	9.3
교육과정 및 방식의 다양화	13.0	17.8
교육 환경 개선	1.2	1.9
취업기회 확대	12.1	6.5
양성교육훈련의 법제화	9.3	4.7
현 종사자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주제 선정	11.3	13.1
기타	0.4	0.9
계(수)	100.0(247)	100.0(107)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10.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 미취득 일반종사자의 취득 욕구

성폭력관련 기관의 일반종사자의 48.2%가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과정을 수료하지 않았는데(표 4-23 참조),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수료증)을 취득할 의향이 있는 지는 파악하였다.

일반종사자의 71.7%가 전문상담원 자격을 취득하기 희망하고 있었다. 자격취득이 필요한 이유로는 ‘직무능력 향상’이 84.2%로 가장 컸고, 소수의견으로 ‘자기계발 촉진’, ‘정보습득’, ‘인간관계 개선’ 등이 있었다.

〈표 4-53〉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취득을 원하는 비율 및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이 필요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취득 원하는지 여부		(취득의향이 있는 경우)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이 필요한 주된 이유 ¹⁾						계(수)
	(분석 대상수)	원하는 비율	승진 또는 이직	직무능력 향상	정보 습득	인간 관계 개선	자기 계발 촉진	기타	
비율	(53)	71.7	-	84.2	5.3	2.6	7.9	-	100.0(38)

주: 1)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종사자 중 취득의향이 있는 일반종사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종사자의 28.3%는 향후 자격을 취득할 의향이 없다고 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나에게 알맞은 교육을 찾지 못해서'가 69.2%로 가장 컸고, 다음은 '인식부족(별로 필요성을 못 느낌)' 23.1%, '근무기관의 비협조(시간부족 및 업무과중)' 7.7% 등의 순이었다.

〈표 4-54〉 (취득의향 없는 경우)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수료증) 취득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인식부족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낌)	근무기관의 비협조 (시간부족 및 업무과중)	교육장소 및 시간이 부적절해서	나에게 알맞은 교육을 찾지 못해서	참가비용에 대한 부담	기타	계(수)
비율	23.1	7.7	-	69.2	-	-	100.0(13)

주: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종사자 중 취득의향이 없는 일반종사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을 갖고 있지도 않고, 향후 전문상담원 자격을 취득할 의향이 없는 일반종사자들이 현 직무를 위해 성폭력 상담교육을 받은 경로를 파악하였다. '담당업무 자체를 통해서' 스스로 습득한 비율이 3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교류를 통해서' 28.6%, '외부 단체에서 실시한 교육을 통해서(세미나, 워크숍)' 28.6% 등이었다.

〈표 4-55〉 (취득의향 없는 경우) 성폭력상담업무 교육을 받은 경로

(단위: %, 명)

구분	학교 교육을 통해서	담당업무 자체를 통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교류를 통해서	혼자 관련서적을 통해서	외부 단체에서 실시한 교육을 통해서(세미나, 워크숍)	기타	계(수)
비율	7.1	35.7	28.6	-	28.6	-	100.0(14)

주: 1)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종사자 중 취득의향이 없는 일반종사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제3절 양성교육 관련 FGI 결과

1. 인터뷰내용 및 응답자의 일반사항

성폭력 관련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양성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참여기관은 성폭력상담소 2개소와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1개소로 총 3개 기관이다. FGI 참석자는 3명으로 성폭력 상담소 소장 2명,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부소장 1명 등이다.

2. FGI 결과

현재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수준에 문제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높지 않은 적정 교육비를 산정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 거주자의 양성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양성교육기관의 지역별 안배가 중요하다. 이는 전문상담원 확보를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양성교육시간을 대폭 늘리는 것 보다는 현재의 양성교육을 내실화하고 체계를 갖추는 방안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강하였다.

“기존 양성교육 체계의 수준을 높이고,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여력이 안 되는 일부 지방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설을 국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비 상승, 양성교육에의 접근성 저하가 초래될 경우, 전문상담인력 부족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양성교육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성교육 시간을 지금보다 늘린다고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양성교육 시간은 사실 기본 커트라인은 놔두고 그 후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상담 연차이다.”

제4절 시사점

본 장(章)에서는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양성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의 양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분석하였다. 이는 양성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통해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폭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성교육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양성교육 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전문상담원의 안정적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양성교육의 제공은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기회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양성교육시설을 정부에서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성교육은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과 현장실습으로 구분하고,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 70~80%, 현장실습 20~30%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또한 강의교육은 상담사례연구, 이론교육, 토론교육을 병행토록 하며, 가능한 한 상담사례연구를 중요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강의교육은 100시간이 가장 적절하며, 현장실습시간을 강의교육에 일부 포함하거나, 별도의 약 20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강의교육의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며, 선택과목은 본인의 전공과 관심 또는 부족 여부에 따라 선택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양성교육기관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성폭력 전문 강사의 '인력풀'을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력풀'은 교과목 중심으로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보수교육에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일곱째, 양성교육 수료 후에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방식은 강의교육 평가와 현장실습 평가로 구분한다. 강의교육 평가는 필기시험에 의하고 70점 이상자에게 자격을 주며, 현장실습 평가는 통과(pass) 또는 탈락(fail)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덟째, 현장실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약 5~10만원의 '기관 실습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정된 현장실습기관은 슈퍼바이저를 두어야 할 것이며, 실습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제5장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보수교육 실태 및 욕구

제1절 보수교육의 실태

제2절 보수교육에 대한 욕구

제3절 보수교육 관련 FGI 결과

제4절 시사점



5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 보수교육 실태 및 욕구

제1절 보수교육의 실태

성폭력시설은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을 말하며 여기에는 성폭력상담소,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통합 상담소, 성폭력 피해보호시설, 장애인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전용쉼터, 성폭력통합지원센터 등이 포함된다. 성폭력시설 종사자에는 시설장, 전문상담원,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행정 등을 담당하는 종사자를 포함하며, 크게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보수교육 실시 및 참여 현황

가. 성폭력시설의 보수교육 실시 및 주기

성폭력시설 151개소를 대상으로 2012년 1년간 보수교육을 실시한 비율은 27.2%로 전체 시설의 1/4를 약간 상회하였다. 보수교육을 실시한 평균 회수는 6.2회로 나타났다. 수료자 규모는 1회당 5.9명이었다.

〈표 5-1〉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실시율, 교육 횟수, 수료자 수

(단위: 개소, %)

구분	보수교육 실시율		보수교육 실시 횟수(2012년)		보수교육 수료자 수(2012년)	
	(분석대상수)	실시율	(분석대상수)	평균 횟수	(분석대상수)	수료자수
성폭력관련 기관	(151)	27.2	(40)	6.15	(40)	5.88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 본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대체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이 각각 2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업무에 대한 부담감, 교육 참여자 부족 등의 순으로 많았다.

〈표 5-2〉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비율
업무에 대한 부담감	18.2
대체인력 부족	21.2
교육 참여자 부족	11.1
예산 부족	21.2
기타	28.3
계(수)	100.0(99)

주: 성폭력관련 기관 중 보수교육 미실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39개소 중에서 보수교육 주기는 연 2회가 3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필요할 때만 실시와 분기별 1회가 많은 편이었다.

〈표 5-3〉 성폭력관련 기관의 보수교육 제공 주기(2012년)

(단위: 개소, %)

구분	필요할 때만 실시	연 2회	분기별 1회	월 1회	기타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28.2	30.8	20.5	5.1	12.8	100.0(39)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또한 보수교육 한 회기 당 평균 기간은 2~3일이 48.7%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기타가 33.3%로 많았으며, 일부이나 한 주간 또는 1개월간 실시한 기관도 나타났다.

〈표 5-4〉 보수교육 한 회기 당 평균 기간

(단위: %, 개소)

구분	2~3일	1주	2주	1개월	기타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48.7	7.7	-	10.3	33.3	100.0(39)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나.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참여 및 충분도

최근 3년 이내에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참여율은 전문상담원이 66.5%, 일반종사자가 40.4%로 전문상담원이 26.1%pt 높았다.

〈표 5-5〉 최근 3년 이내에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참여율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참여율
전문상담원	(248)	66.5
일반종사자	(104)	40.4

주: 최근 3년 이내 성폭력전문상담원 보수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보수교육을 받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의 충분성을 파악한 결과, 보수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비율은 전문상담원이 59.9%, 일반종사자가 60.6%로 종사자의 과반수 이상이 보수교육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5-6〉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비율

(단위: %, 명)

구분	전문상담원		일반종사자	
	(분석대상수)	비율	(분석대상수)	비율
보수교육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비율	(247)	59.9	(104)	60.6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보수교육기회가 충분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 모두 대체인력이 없어서와 업무에 대한 부담 때문이 많았고, 이외에도 전문상담원은 비용이 없어서가, 일반종사자는 필요한 교육과정이 없어서가 많은 편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5-7〉 성폭력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문상담원	일반종사자
업무에 대한 부담 때문에	18.8	27.9
대체 인력이 없으므로	24.1	23.0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10.5	9.8
필요한 교육과정이 없어서	14.3	24.6
보수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10.5	-
경비가 없어서	15.0	1.6
상급자의 인식부족으로	5.3	1.6
기타	1.5	11.5
계(수)	100.0(133)	100.0(61)

주: 보수교육 수료자 중 보수교육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2. 보수교육 교과목 및 구성

성폭력시설에서 현재 실시하는 보수교육 교과목으로는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이 7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피해자 의료 및 수사, 법률지원, 성폭력 관련 법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피해자 증상과 치료, 장애인, 아동 등 대상별 현황과 특성, 상담적 접근 등이 50~60%의 분포를 보였고, 특히 역할연습, 모래·미술·놀이치료, 성폭력 피해자 응급 의학적 접근, 성폭력 피해자 증인의 권리 및 증인 지원제도 등은 10~18%로 실시비율이 저조하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4'에 근거할 때 상담실무자 과정과 전문 과정에서 피해자 프로그램 개설과정의 교과목은 많이 편성된 편이나, 전문 과정 중 행위자 프로그램, 상담 전문가 과정, 그리고 고급과정은 교과목 편성이 적은 수준을 보였다.

〈표 5-8〉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폭력전문상담원 보수교육 교과목(중복응답)

(단위: 개소, %)

구분 (분석대상수)	성폭력관련 기관 (40)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60.0
피해자 의료 및 수사, 법률지원	50.0
성폭력 관련 법제	55.0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60.0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	50.0
행위자 상담모델과 배경이론	20.0
행위자 상담의 형식과 내용	30.0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대상별 현황과 특성/상담적 접근	50.0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75.0
(집단)상담실습	22.5
역할연습	12.5
모래·미술·놀이 치료 등	17.5
성폭력 피해자 응급의학과적 접근	10.0
성폭력 피해자 증인의 권리 및 증인 지원제도	17.5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	32.5
성폭력 피해자 치료방법	32.5
행정업무(공문서 작성, 엑셀, 한글 등)	20.0
기타	2.5

주: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분석대상으로 중복응답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시설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방식은 강의교육이 75.5%, 현장실습교육이 24.5%로 이론 중심의 강의교육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현장에서 적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5-9〉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의 강의와 실습 비율

(단위: 개소, %)

구분 (분석대상수)	성폭력관련 기관 (40)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	75.5
현장실습교육	24.5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3. 보수교육 전담인력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성폭력시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수를 파악한 결과, 2명이 45.0%로 가장 많았고, 일부시설은 1명과 3명이 보수교육을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활용하는 전담인력 수

(단위: %, 개소)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25.0	45.0	17.5	2.5	10.0	100.0(40)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시설의 보수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의 충분한 정도를 보면, 충분하다가 15.0%에 불과하였고, 부족하다는 40.0%로 충분한 시설에 비해 2.7배 많았으며, 보통은 45.0% 분포를 보였다.

〈표 5-11〉 보수교육 프로그램 전담인력수의 충분성

(단위: %, 개소)

구분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40.0	45.0	15.0	100.0(40)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보수교육 전담인력이 부족한 성폭력시설을 대상으로 향후 충원이 필요한 전담인력을 파악한 결과, 2명이 필요한 경우가 53.3%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일부시설은 1명, 4명, 그리고 5명 이상까지도 전담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부족한 경우) 충원되어야 하는 전담인력 수

(단위: %, 개소)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13.3	53.3	6.7	13.3	13.3	100.0(15)

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성폭력관련 기관 중 보수교육 프로그램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종사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시설에서 보수교육 전문 강사를 활용하는 방식은 기관 내의 종사자와 외부강사를 병행하는 방식이 75.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일부는 기관 내 종사자를 활용하였으며, 외부강사만 활용하는 경우는 미미하였다.

〈표 5-13〉 귀 기관에서 강사를 활용하는 방식

(단위: %, 개소)

구분	기관 내 종사자만 활용	외부강사만 활용	기관 내 종사자와 외부강사를 병행하여 활용	기타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17.5	7.5	75.0	-	100.0(40)

주: 성폭력관련 기관 중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보수교육강사로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부족이 71.4%로 가장 많았고, 일부는 상담소 내부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표 5-14〉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단위: %, 개소)

구분	상담소 내부인력으로 충분하므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예산이 부족하여	상담소의 위치 때문에	외부전문가와 연계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14.3	71.4	-	-	14.3	100.0(7)

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성폭력관련 기관 중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는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은 고급과정인 상담사례 연구가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문과정인 미술치료와 정신과 치료가 34~38%로 많은 편이었다.

〈표 5-15〉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중복응답)

(단위: 개소, %)

구분 (분석대상수)	성폭력관련 기관 (32)
교과목과 관련된 이론교육	28.1
미술 치료	37.5
사이코소시오 드라마	21.9
상담사례연구	50.0
정신과 치료	34.4
인성 교육	9.4
성교육	18.8
기타	6.3

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성폭력관련 기관 중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는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이는 중복응답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시설의 외부강사를 섭외하는 방법은 시설과 연계된 외부강사 인력풀 중에서 선택이 53.1%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일부시설은 내부직원과의 연고 및 소개, 그리고 학교 및 기관 등의 추천으로 나타났다.

〈표 5-16〉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강사를 섭외하는 방법

(단위: %, 개소)

구분	내부직원과의 연고 및 소개	시설과 연계된 외부강사 인력풀 중에서 선택	학교 및 기관의 추천	기타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25.0	53.1	12.5	9.4	100.0(32)

주: 성폭력관련 기관 중 성폭력전문상담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시설이 전문 강사를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낮은 급여수준이 73.7%로 다수에 해당되었고, 이외에 과중한 업무도 일부 나타났으며, 미미하나 질 낮은 근무환경과 장래성과 기회부족 등도 전문 강사 확보의 장애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표 5-17〉 귀 기관이 전문 강사를 확보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개소)

구분	낮은 급여수준	질 낮은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	장래성과 기회의 부족	기타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73.7	5.3	10.5	5.3	5.3	100.0(38)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4. 보수교육 비용부담 및 홍보

가. 성폭력시설의 보수교육 예산편성 및 홍보

성폭력시설 중 종사자 보수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비율은 55.3%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44.7%는 종사자 전문성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 예산이 편성된 성폭력시설 중에서 전체 예산 중 보수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근거할 때 보수교육 실시가 의무사항 인데 비해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예산 편성 비율과 그 수준은 상당히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5-18〉 직원 보수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비율 및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개소, %)

구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비율		(편성된 경우) 전체 예산에서의 비율 ¹⁾	
	(분석대상수)	있음	(분석대상수)	평균
성폭력관련 기관	(38)	55.3	(20)	3.29

주: 성폭력관련 기관 중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성폭력시설 중에서 보수교육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 비율은 45.0%로 나머지 55.0%인 과반수가 시설에서 홍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보수교육 홍보 수행 비율

(단위: 개소, %)

구분	성폭력관련 기관	
	(분석대상수)	비율
보수교육 홍보를 수행하는 비율	(40)	45.0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시설의 홍보수행 방식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7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기간행물과 브로슈어 및 리플릿이 50~61%로 많았으며, 물품이용과 방송을 통한 홍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5-20〉 (홍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홍보를 수행하는 방법(중복응답)

(단위: 개소, %)

구분 (분석대상수)	성폭력관련 기관 (18)
브로슈어 및 리플릿	50.0
정기 간행물(소식지)	61.1
물품이용(스티커, 휴지)	27.8
방송(TV, 라디오)	27.8
인터넷(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등)	72.2
기타	5.6

주: 성폭력관련 기관 중 보수교육 홍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나.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비용부담

최근에 보수교육에 참여한 전문상담원의 보수교육에 소요된 총 비용 중에서 시설지원은 평균 18.14만원, 본인부담은 7.14만원으로 총 비용 중 약 28%를 종사자가 부담하였다. 일반종사자는 총 비용 중 각각 7.69만원과 4.33만원으로 본인부담은 36.0%로 전문상담원에 비해 일반종사자의 본인 부담이 다소 많았다.

〈표 5-21〉 최근 보수교육에 참여한 성폭력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에 소요된 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전문상담원		일반종사자	
	(분석대상수)	평균	(분석대상수)	평균
지원 금액	(98)	18.14	(32)	7.69
본인부담금액	(109)	7.14	(46)	4.33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5. 보수교육 성과 및 운영상의 어려움

가. 성폭력시설의 보수교육 수준 및 어려움

보수교육을 실시한 성폭력시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매우) 적절한 비율은 교육 강사의 전문성이 7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육장소의 접근성과 교육내용의 다양성이 56~59%로 높았으며, 교육시간과 교육기회는 41~49%로 다른 항목에 비해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부적절한 비율은 교육기회가 1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육장소, 교육시간, 교육내용의 다양성 순으로 높았다. 이는 보수교육 실시에 있어 교육 강사,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과 교육 장소는 어느 정도 적절성이 담보되고 있으나 교육기회는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시사한다.

〈표 5-22〉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실시 수준

(단위: %, 개소)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수)
교육기회(빈도)의 적절성	2.6	7.7	48.7	35.9	5.1	100.0(39)
교육내용의 다양성	-	2.6	41.0	48.7	7.7	100.0(39)
교육 강사의 전문성	-	-	28.9	60.5	10.5	100.0(38)
교육시간의 적절성	-	5.1	46.2	48.7	-	100.0(39)
교육장소의 접근성	2.6	2.6	35.9	43.6	15.4	100.0(39)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보수교육을 실시한 성폭력시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실시의 효과를 파악한 결과, 종사자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96.0%로 거의 대다수 시설이 해당되었다.

〈표 5-23〉 보수교육 실시의 전문성 향상 도움 비율

(단위: 개소, %)

구분	(분석대상수)	도움 되는 비율
성폭력관련 기관	(151)	96.0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시설이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적인 부담이 56.1%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은 전문 인력 확보가 29.3%로 많았으며, 이외에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부족도 10% 미만이나 일부 나타났다.

〈표 5-24〉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개소)

구분	성폭력관련 기관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다	29.3
시설 및 환경이 기관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	2.4
효과적인 프로그램 관리가 부족하다	2.4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부족하다	7.3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56.1
유사 기관 간에 사업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
관련 기관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
종사자 참여율이 저조하다	-
기타	2.4
계(수)	100.0(41)

주: 성폭력관련 기관 중 보수교육 홍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나.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수준 및 효과 정도

보수교육을 받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상담원의 (매우) 만족한 비율은 교육 강사의 전문성이 5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육시간의 적절성과 교육내용의 다양성이 41~44%로 높았으며, 교육비용과 교육방식의 적절성, 그리고 교육장소의 접근성은 26~37%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매우) 불만족한 비율은 교육장소의 접근성이 3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육방식, 교육내용, 교육시간, 그리고 교육비용 및 교육 강사의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전문상담원은 교육 강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만족도는 타 항목에 비해 높은 편이나 교육장소의 접근성과 교육방식의 적절성은 만족도가 낮았다.

일반종사자의 (매우) 만족한 비율은 전문상담원과 유사하여 교육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내용의 다양성은 41~50%로 높았고, 교육비용과 교육방식, 교육시간과 교육 장소는 33~38%로 낮은 편이었다. (매우) 불만족한 비율은 교육장소의 접근성이 4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육시간과 교육 강사가 12~14%로 높은 편이었다. 일반종사자

의 보수교육 만족도는 전문상담원과 거의 비슷하였으며 전문상담원에 비해 교육방식보다 교육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표 5-25〉 최근 3년 이내 보수교육을 이수한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보수교육 만족도					계(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전문상담원						
교육비용(수강료)의 적절성	3.2	4.5	55.5	31.6	5.2	100.0(155)
교육방식의 적절성(이론, 실습)	1.9	17.5	51.3	27.5	1.9	100.0(160)
교육내용의 다양성	1.2	13.6	44.4	36.4	4.3	100.0(162)
교육 강사의 전문성	2.5	5.0	42.5	43.8	6.3	100.0(160)
교육시간의 적절성	1.3	10.6	44.4	41.9	1.9	100.0(160)
교육장소의 접근성	6.9	25.0	42.5	23.1	2.5	100.0(160)
일반종사자						
교육비용(수강료)의 적절성	-	9.8	53.7	26.8	9.8	100.0(41)
교육방식의 적절성(이론, 실습)	-	7.1	57.1	35.7	-	100.0(42)
교육내용의 다양성	-	9.5	50.0	40.5	-	100.0(42)
교육 강사의 전문성	2.4	9.5	38.1	45.2	4.8	100.0(42)
교육시간의 적절성	-	14.3	47.6	35.7	2.4	100.0(42)
교육장소의 접근성	11.9	33.3	21.4	33.3	-	100.0(42)

주: 최근 3년 이내 성폭력전문상담원 보수교육 수료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보수교육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비율은 전문상담원은 92.8%, 일반종사자는 96.2%로 대다수가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도움이 안 되는 비율은 전문상담원이 일반종사자보다 약 2배 높았다.

보수교육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문상담원은 업무 때문에 교육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였다가 53.3%로 절반 이상이었고, 일부는 교육내용 부실, 교육시간 부족, 그리고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다양한 이유를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일반종사자는 교육내용이 부실해서가 75.0%로 대다수가 응답하였고, 업무 때문은 25.0%에 불과하여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표 5-26〉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의 업무수행 도움 정도 및 도움이 안 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업무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비율		(도움이 안 된다면) 업무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주된 이유 ¹⁾				계(수)
	(분석 대상수)	비율	교육내용이 부실해서	교육시간이 부족해서	강사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업무 때문에 교육에 제대로 참가하지 못해서	
전문상담원	(251)	7.2	20.0	13.3	13.3	53.3	100.0(15)
일반종사자	(104)	3.8	75.0	-	-	25.0	100.0(4)

주: 성폭력전문상담원 보수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종사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제2절 보수교육에 대한 욕구

1. 보수교육실시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욕구

가. 성폭력시설의 보수교육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의견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의 적절한 주기를 조사한 결과, 연 1회가 49.7%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6개월에 1회가 30.9%로 많았으며, 3개월에 1회는 12.1%로 적었다. 따라서 보수교육의 주기로 연 1회 또는 2회를 선호하였다.

〈표 5-27〉 성폭력전문상담원 보수교육의 적절한 주기

(단위: %, 개소)

구분	3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연 1회	기타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12.1	30.9	49.7	7.4	100.0(149)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관련 기관은 보수교육 프로그램 당 적절한 기간으로 2~3일이 6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주가 14.8%이었으며,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표 5-28〉 성폭력전문상담원 보수교육 프로그램 당 적절한 기간

(단위: %, 개소)

구분	2~3일	1주	2주	1개월	기타	계(수)
성폭력관련 기관	69.1	14.8	2.0	6.7	7.4	100.0(149)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나.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의견

성폭력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주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문상담원은 연 1회가 54.8%로 절반 이상을 상회하였고, 다음은 6개월에 1회가 33.7%로 많아서 보수교육 주기로 연 1~2회를 선호하였다. 일반종사자도 전문상담원과 유사하였으며, 이외에 3개월에 1회를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는 보수교육 기회가 불충분하다는 비율이 과반수인 점에서 볼 때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5-29〉 성폭력전문상담원 보수교육의 적절한 주기

(단위: %, 명)

구분	3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연 1회	기타	계(수)
전문상담원	7.1	33.7	54.8	4.4	100.0(252)
일반종사자	10.6	36.5	48.1	4.8	100.0(104)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전문상담원이 생각하는 보수교육 프로그램 당 적절한 기간으로 2~3일이 7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주가 12.9%이었으며, 나머지는 비율이 낮았다. 일반종사자는 전문상담원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특히 1개월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서 성폭력시설 종사자는 보수교육 프로그램 한 회기 당 2~3일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이는 성폭력시설과 유사하였다.

〈표 5-30〉 성폭력전문상담원 보수교육의 프로그램 한 회기 당 적절한 기간

(단위: %, 명)

구분	2~3일	1주	2주	1개월	기타	계(수)
전문상담원	79.0	12.9	0.4	2.4	5.2	100.0(248)
일반종사자	77.7	10.7	2.9	6.8	1.9	100.0(103)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2. 보수교육 교과목에 대한 욕구

가. 성폭력시설의 보수교육 교과목 및 구성에 대한 의견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개설될 필요가 있는 보수교육 교과목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이 1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장애인·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현황과 특성/상담적 접근, 피해자 의료 및 수사, 법률지원, 성폭력 관련 법제 순으로 많았다. 2순위는 대상별 현황과 특성에 대한 비율이 17.8%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성폭력 피해자 증인의 권리 및 증인 지원제도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표 5-31〉 “향후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보수교육 교과목”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의 의견

(단위: %, 개소)

구분	성폭력관련 기관	
	1순위	2순위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6.1	2.7
피해자 의료 및 수사, 법률지원	11.5	5.5
성폭력 관련 법제	10.8	7.5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6.8	4.1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	2.7	3.4
행위자 상담모델과 배경이론	2.0	0.7
행위자 상담의 형식과 내용	3.4	4.1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대상별 현황과 특성/상담적 접근	14.2	17.8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18.2	12.3
(집단)상담실습	1.4	5.5
역할연습	0.7	-
모래미술놀이 치료 등	4.7	4.8
성폭력 피해자 응급의학적 접근	3.4	3.4
성폭력 피해자 증인의 권리 및 증인 지원제도	2.0	12.3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	6.1	7.5
성폭력 피해자 치료방법	2.7	5.5
행정업무(공문서 작성, 엑셀, 한글 등)	2.0	2.7
기타	1.4	-
계(수)	100.0(148)	100.0(146)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관련 기관이 선호하는 보수교육 방식은 이론과 실기 중심의 강의교육이 67.6%, 현장실습교육이 32.4%로 현재 교육방식보다 현장실습 교육과정의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표 5-32〉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의 강의와 실습 비율

(단위: 개소, %)

구분	성폭력관련 기관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	67.6
현장실습교육	32.4
계(수)	100.0(40)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나.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과목 및 구성에 대한 의견

성폭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설될 필요가 있는 교과목을 조사한 결과, 전문상담원은 1순위로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과 장애인·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현황과 특성/상담적 접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2순위로 대상별 현황과 특성/상담적 접근이 많았으며, 성폭력 피해자 증인의 권리 및 증인지원제도와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도 많은 편이었다.

일반종사자는 1순위로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과 장애인·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현황과 특성/상담적 접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전문상담원과 유사하였으며, 이외에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2순위는 피해자 의료 및 수사, 법률지원과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그리고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정리하면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 모두 개설될 필요가 있는 교과목으로 대상별 현황과 특성/상담적 접근과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그리고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외에 전문상담원은 피해자 증인의 권리 및 증인 지원제도를, 일반종사자는 상담이론 및 상담자 윤리와 자세, 피해자 의료 및 수사, 법률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표 5-33〉 “향후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보수교육 교과목”에 대한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의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문상담원		일반종사자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8.1	2.8	12.3	3.8
피해자 의료 및 수사, 법률지원	8.9	8.1	9.4	14.3
성폭력 관련 법제	8.1	4.5	4.7	3.8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4.8	3.3	1.9	9.5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	8.1	4.1	6.6	5.7
행위자 상담모델과 배경이론	3.6	2.0	-	1.9
행위자 상담의 형식과 내용	4.0	4.9	3.8	1.0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대상별 현황과 특성·상담적 접근	16.5	12.6	23.6	9.5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17.3	9.3	13.2	12.4
(집단)상담실습	3.6	4.9	1.9	1.9
역할연습	1.6	1.6	-	1.0
모래·미술·놀이 치료 등	2.8	6.5	0.9	4.8
성폭력 피해자 응급의학과적 접근	2.0	0.4	6.6	5.7
성폭력 피해자 증인의 권리 및 증인 지원제도	1.6	10.2	1.9	2.9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	4.4	10.6	6.6	11.4
성폭력 피해자 치료방법	2.8	8.9	3.8	8.6
행정업무(공문서 작성, 엑셀, 한글 등)	0.8	4.9	2.8	1.9
기타	0.8	0.4	-	-
계(수)	100.0(248)	100.0(246)	100.0(106)	100.0(105)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종사자가 선호하는 보수교육 방식을 보면, 전문상담원은 이론 및 실기 중심의 강의교육이 65.1%, 현장실습교육이 34.9%로 현재방식에서 현장실습에 대한 비중의 확대를 희망하였다. 일반종사자는 각각 62.1%와 37.9%로 전문상담원보다 현장실습 교육에 대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5-34〉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의 강의와 실습 비율

(단위: %, 명)

구분	전문상담원	일반종사자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	65.1	62.1
현장실습교육	34.9	37.9
계(수)	100(251)	100(103)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3. 보수교육비용 부담에 대한 욕구

성폭력시설이 선호하는 보수교육 비용 부담비율은 기관이 80.7%, 종사자 본인이 19.3%로 현재보다 시설에서 더 부담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표 5-35〉 “기관과 종사자 간에 보수교육 비용 부담비율”에 대한 성폭력 관련기관의 의견

(단위: 개소, 만원)

구분	성폭력관련 기관
(분석대상수)	(143)
기관	80.7
종사자	19.3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종사자가 선호하는 보수교육 비용 본인분담 비용을 보면, 전문상담원은 8.3만원, 일반종사자는 8.6만원으로 10만원 미만 정도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5-36〉 “보수교육의 적절한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의견

(단위: 명, 만원)

구분	전문상담원		일반종사자	
	(분석대상수)	평균	(분석대상수)	평균
본인부담금액	(226)	8.27	(88)	8.56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4. 보수교육 강사 및 위탁기관의 자격기준

가. 성폭력시설의 보수교육 강사 및 위탁기관에 대한 의견

성폭력시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전문 강사 적절한 자격기준을 조사한 결과, 단체 및 시설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방지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자가 8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유사분야를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자와 동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자가 각각 55.3%와 41.3%로 많았으며, 의사 및 변호사 또는 담당 교과목 자격증 소지자가 39.3이었고,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은 16.7%로 비율이 낮았다.

〈표 5-37〉 "보수교육 전문 강사의 적절한 자격기준"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의 의견(중복응답)

(단위: 개소, %)

구분 (분석대상수)	성폭력관련 기관 (150)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유사분야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55.3
(전문)대학/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또는 유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41.3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 또는 담당 교육과목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39.3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6.7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8.0
기타	8.0

주: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분석대상으로 중복응답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위탁하기에 적절한 운영기관은 현재 보수교육을 전담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68.7%로 2/3을 상회하였으며, 다음은 성폭력상담소 및 상담소부설교육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기관이 35~48% 분포를 보였으며 나머지는 비율이 낮았다.

〈표 5-38〉 "보수교육 위탁 운영기관으로 적절한 기관"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의 의견(중복응답)

(단위: 개소, %)

구분 (분석대상수)	성폭력관련 기관 (15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8.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68.7
가족 및 여성 관련 연구원	14.0
일반대학부설 교육훈련시설 또는 평생교육원	14.7
성폭력상담소 또는 상담소부설교육원	48.0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기관	35.3
기타	2.0

주: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분석대상으로 중복응답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나.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강사 및 위탁기관에 대한 의견

성폭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전문 강사의 적절한 자격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 모두 단체 및 시설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방지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자가 각각 63.5%와 6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문상담

원은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유사분야의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자를, 일반종사자 등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자를 선호하였다.

〈표 5-39〉 “보수교육 전문 강사의 적절한 자격기준”에 대한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의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문상담원	일반종사자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유사분야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자 있는 사람	19.7	7.7
(전문대학/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또는 유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자 있는 사람)	9.6	12.5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 또는 담당 교육과목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2.4	7.7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0.4	2.9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있는 사람	63.5	65.4
기타	4.4	3.8
계(수)	100.0(249)	100.0(104)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위탁하기에 적절한 운영기관으로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 모두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을 응답한 비율이 각각 61.8%와 6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41.8%와 35.6%로 많았다. 이외에 전문상담원은 성폭력상담소 및 상담소부설교육원을, 일반종사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기관을 선호하였다.

〈표 5-40〉 “보수교육 위탁 운영기관으로 적절한 기관”에 대한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 의견(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전문상담원	일반종사자
(분석대상수)	(249)	(10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41.8	35.6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61.8	64.4
가족 및 여성관련 연구원	15.3	19.2
일반대학부설 교육훈련시설 또는 평생교육원	13.3	18.3
성폭력상담소 또는 상담소부설교육원	46.2	26.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기관	25.7	35.6
기타	0.4	-

주: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분석대상으로 중복응답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5. 성폭력시설의 보수교육의 활성화 방안

성폭력시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활성화 방안을 조사한 결과,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4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육과정 및 방식의 다양화, 교육훈련의 법제화, 전문 인력 확대 순으로 많았으며, 사업운영비 확대, 교육환경 개선, 지역주민의 인식제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유사기관 통합 등은 비율이 낮았다.

〈표 5-41〉 “보수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성폭력관련 기관의 의견

(단위: %, 개소)

구분	성폭력관련 기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47.6
사업운영비 확대	5.4
전문 인력 확충	9.5
교육과정 및 방식의 다양화	17.7
교육 환경 개선	1.4
지역주민의 인식제고	1.4
양성교육훈련의 법제화	10.2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인적·물적 자원 확보)	2.0
유사기관 간의 통합	2.0
기타	2.7
계(수)	100(147)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제3절 보수교육 관련 FGI 결과

1. 인터뷰내용 및 응답자의 일반사항

성폭력 관련 전문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보수교육 관련 인터뷰 내용은 첫째, 교육 기관 및 기회의 충분성 등과 관련하여 보수교육 접근성, 둘째, 보수교육 교과목 편성의 적절성, 셋째, 보수교육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넷째, 보수교육 강사의 전문성 및 활용의 적절성, 다섯째, 보수교육 비용부담 등으로 구성된다.

초점집단인터뷰 참여기관은 성폭력상담소 2개소와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1개소로 총 3개 기관이고, FGI 참석자는 3명으로 성폭력 상담소 소장 2명,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부소장 1명 등이 참여하였다.

2. FGI의 결과

가. 보수교육의 접근성

보수교육기관이 단일화 되어있어 지방에 위치한 성폭력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보수교육 기회가 불충분하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균형적인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상시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만약에 자격관리를 할 때 초반에 커트라인이 되는 관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면 어느 정도 시험은 있어야 하겠지만 성폭력 상담소 인력이 세 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그 흐름을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성폭력상담원에서 성폭력 전문상담원 1급을 뽑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소나 원스톱에서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 말고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수교육을 같이 해야 하는데 다 같이 가야하는 의미가 뭐냐면 보수교육을 신청해도 3명 중 1명만 됩니다. 보수교육진입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상시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보수가 필요할 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보수교육확대는 계속 주장해왔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교육기회가 많지 않고요. k지역에는 보수교육기관이 없어졌어요.”

“전국성폭력시설협의회가 잘했던 것 중 하나가 보수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 밖에 없잖아요. 양평원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보수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향후 자격강화와 관련하여 보수교육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맥락에서 상담원이 필요한 보수교육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지역에서 저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관리가 잘 될 것입니다.”

나. 보수교육 교과목 편성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은 통상 일반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하향 일반화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종사자의 보수교육에 대한 욕구는 경력 및 직급, 그리고 직무별로 종사자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서비스의 질은 상담원의 전문성과

지속성과도 높은 관련이 있는데 대체로 상담원의 이직기간이 짧은 것은 업무 부담과 소진 등에서 오는 경향이 높아서 상담원의 소진을 해소할 수 있는 보수교육이 요구된다.

“우리기관은 평균 이직기간이 1년 이내예요. 저희는 자격도 깐깐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수는 좋기도 한데 일하는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변동이 잦은 편이에요.”

“일반종사자의 직무 보수교육은 아까 나왔던 얘기들이 다 맞아요. 오래되신 분들한테는 사실 기초교육이 많아서 심화교육이 필요해서 올해에 생겼어요. 그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괜찮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 심화교육의 요구가 대부분 신규직원이기 때문에 굳이 심화까지 갈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화교육에 대한 욕구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센터 일이 많으니까. 저희는 나름 힘들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보다 일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래요.”

“교육은 보통 3일 5일씩 해요. 각 업무에 따라 일이 분담되어 있어 교육받으러 갔다 와도 일은 그대로 해야 하니까 교육 안 나가는 게 낫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급제도 있고, 시험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가 일할 때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차이가 있고, 상담원 선생님은 다른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활동적인 것을 원할 때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안에서 상담하는 게 많으니까요. 원하는 의사소통이 안 되기도 해서 제가 다시 교육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채용이 되면 직군별로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제가 작년에 오면서 센터에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할 것이다. 전체적인 보수교육도 필요하고 센터의 특성에 맞는 보수교육도 필요합니다.”

다. 보수교육 방식

보수교육방식이 강의위주의 집합교육에 치중되어 보수교육 욕구와 방식이 상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보수교육의 확대의 일환으로 탄력적인 보수교육과정의 운영도 중요하나 전문적인 이론과 상담기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3일 이내의 강의방식을 탈피해서 워크숍, 심포지엄, 토론 등 종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발표, 토론 등이 공유되는 방식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병원 신경정신과를 센터로 옮겨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장님이 대부분 정신과, 산부인과 분들이시고 저는 임상심리 전공인데 다른 분들은 사회복지사세요. 병원에서 의사한테 진료 받고, 임상심리전문가가 사회복지사 불러서 상담시키고, 간호사 선생님을 불러서 서브하고, 저희 센터에 상담원 선생님이 오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평원에서도 교육을 받지만 지원단에서 직군별로 할 때 많이들 받아요. 상담을 주로 하고요. 각자 서비스 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매뉴얼도 다르죠. 간호사들이 증거 채취하는 것이나 사용하는 약물
다르고, 상담사들이 부모상담하고 이런 것도 다르다 보니까 직군별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인정할 수 있는 커리큘럼, 조건만 갖추면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습니
다. 예를 들면, 연말에 심포지엄을 하던지 좋은 내용이 있으면 보수교육 중 몇 점
을 인정해주거나 기관 간담회를 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저희 기준으로만 얘기할게요. 저희는 일단 활동할 사람들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30~40명을 받습니다. 수료증만 가져갈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실시하는데 90% 출석률 포함하고, 그룹토의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교육이 끝나면 개별실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률상담 참관
1번 이상해야 하고, 상담시간은 3시간 이상씩이고, 법률상담 같은 경우 2시간 이
상, 그리고 상담하고 나서 일지 슈퍼비전을 해요. 슈퍼비전에 참여하게 하고, 스
터디 모임을 따로 모아서 스터디 모임 하는데 스터디 안하는 사람은 상담을 못하
게 해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요.”

“우리 기관은 100시간 이수하고 법원 참관 한 다음에 Y자체가 사람 자체를 키워
요. 강사도 있지만 상담원 자원봉사 팀으로 들어올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처음
와서 전화 상담을 10회 받아서 녹음한 것을 풀어서 슈퍼비전을 받는 것도 하고,
경찰 동행 작업도 도와주기도 하나. 정말 싫어해요. 그 이후에 올라가지를 못하더
라고요. 실습할 때 상담한 것 녹취를 풀어서 슈퍼비전을 받는데 어려운 일입니
다.”

“종사자 입문 교육을 받고 피해자 지원제도 및 법률에 대한 강의와 분과 별로 직
군을 섞어서 조를 만들어서 한 케이스를 놓고 심화된 토의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가 다양하게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슈퍼바이저들이 매뉴얼 쓴 사
람이 슈퍼비전을 해줘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심화교육 예를 들면, 한 사례를 놓고 여성주의 상담 등 다른 이론을 적용해서 하
는 상담도 정리해서 보여주고, 이런 보수교육이 사실 1박 2일, 2박 3일에 끝나버
린다. 양평원에서 강사 교육할 때 일반과정에서 리포트 제출하고 브리핑하고 넘
어가고 그 중간에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저
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교육이 있어요. 심화가 되려면 단편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본인이 원활 때 보수교육기관이 탄력적이기도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심화교육1, 2로 끝나거든요. 이게 1개월부터 3개월 사이에 시리즈로 있다던
가.”

라. 보수교육 비용

보수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기회 및 질적 측면의 동기부여도 중요하나
비용부담 또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상담원의 자격관리를 위해

종사자의 보수비용 부담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A 기관에서는 보수교육 비용으로 전액을 지원합니다. 직무교육은 기관에서 출장비만 부담하고 있고 일부 교육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B 기관은 보수교육비용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만원을 부담해 주고 있어요.”

“C 기관은 직무자격유지를 위해 임상심리사는 임상심리학회에 참여해야 하고, 간호사는 간호 학회를 들어야 하잖아요. 학회별로 교육비가 규정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지침도 있어요. 저희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나와요.”

“직무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다른 자격을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48000원은 지원해주고, 외부 교육은 50% 지원해주고 교육비용이 25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4절 시사점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실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는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보수교육 위탁기관(동 시행령 제8조) 및 전문 강사 자격, 보수교육 내용, 기간 및 방법 등(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4’)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보수교육 참여율은 전문상담원과 일반종사자가 각각 67%와 40%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고, 보수교육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대체인력 부재와 업무 부담에서 오는 보수교육 기회의 미흡과 예산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보수교육 비용의 본인분담은 약 30% 내외 수준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며, 성폭력시설 중 보수교육 예산이 공식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비율도 55%로 절반에 불과하여 보수교육 참여 환경이 열악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성폭력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실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로 전담하고 있으나 실시 주기가 정기적이지 않아서 교육수요에 비해 교육기회가 부족하고 교육장소의 접근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방식은 집합교육이 대다수를 이루어 교육기회의 공평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보수교육 내용도 현장

상담원 수준 및 전문성에 따라 차별화되는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보수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이 상담실무자 과정과 피해자 프로그램 중심의 전문 과정에 편중되어 있으며 행위자 프로그램, 상담전문가과정, 상담사례 연구 중심의 고급과정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식에서도 강의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이 배분이 7.5:2.5의 비율을 보여서 종사자의 현장에서의 적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실태, 욕구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교육실시에 대한 법적규제를 강화할 필요 있다. 종사자의 보수교육은 서비스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로 종사자가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적인 근거를 강화하고 강제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수교육 참여 제고 방안으로 시설의 대체인력 확보와 함께 보수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및 상담원 인턴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보수교육의 법적 의무화와 함께 상응하는 재정을 확보하여 종사자 비용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수교육은 종사자의 경력 및 전문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방식도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사례실습 위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보수교육 욕구는 성폭력 종사자의 활동영역 및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방식도 강의위주의 일방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는 워크숍, 실습 및 역할연습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수교육은 전담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교육장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전담기관 중심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과정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육장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교육수요자에게 찾아가는 교육, 교육프로그램의 CD제작, 동영상 보급 및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 등 다각적인 교육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자격관리

제1절 자격관리 욕구

제2절 자격관리 관련 FGI 결과

제 3절 시사점



6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 자격관리

제1절 자격관리 욕구

1.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국가자격화

현재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양성교육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성교육을 받은 후에는 교육기관 명의를 '수료증'을 주고 있다. 물론 이 '수료증'은 성폭력 전문상담원으로서 인정을 받는 증명서이며, 실제 성폭력관련 시설의 상담원 채용 시 인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자격화는 되어 있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국가자격화에 대한 의견을 성폭력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국가자격화에 동의하는 비율이 78.1%로 높았다. 국가자격화의 필요 이유로 '성폭력 전문상담원으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제시한 비율이 96.3%로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소수의견으로 '교육담당자의 수준 향상'(2.1%), '교육담당자의 책임감 강화'(1.0%), '자격증 취득비용 표준화'(0.5%) 등이 있었다.

〈표 6-1〉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국가자격화에 동의하는 비율 및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국가자격화		(필요하다면) 주된 이유 ¹⁾					계(수)
	(분석 대상수)	동의 비율	성폭력 전문 상담원으로서의 전문성 강화	교육담당자의 책임감 강화	교육 담당자의 수준 향상	자격증 취득비용 표준화	기타	
비율	(251)	78.1	96.3	1.0	2.1	0.5	-	100.0(191)

주: 1)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 중 양성교육 국가자격화에 동의하는 종사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국가자격화를 위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로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78.4%가 '사회복지사'를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소수의견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12.4%), '요양보호사'(5.9%) 등이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성폭력 전문상담원이 국가자격으로 될 경우, 자격

부여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될 것이다.

〈표 6-2〉 성폭력 전문상담원 국가자격화 적용에 적절한 제도

(단위: %, 명)

구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기타	계(수)
비율	78.4	5.9	12.4	3.2	100.0(185)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2.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등급제 및 시험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78.4%가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국가자격화 적용제도로써 사회복지사제도를 제시하였는데, 사회복지사는 1~3급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국가자격화를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등급제 도입의 필요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55.9%가 등급제 도입을 찬성하였다. 도입 급수로는 2급(46.2%)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은 1급(30.2%), 3급(23.6%)의 순이었다. 여기서 1급 응답자는 1급→2급→3급의 순, 2급 응답자는 2급→1급의 순, 3급 응답자는 3급→2급→1급의 순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표 6-3〉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등급제(1·2·3급) 도입의 필요 비율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전문상담원	195	55.9

주: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 중 양성교육 국가자격화에 동의하는 종사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표 6-4〉 성폭력 전문상담원 국가인증시험 도입 시행 급수

(단위: %, 명)

구분	1급부터	2급부터	3급부터	계(수)
전문상담원	30.2	46.2	23.6	100.0(106)

주: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 중 양성교육 국가자격화에 동의하는 종사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3. 기존 교육수료자의 인정 방식

양성교육 국가자격화에 동의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존 교육수료자를 1급으로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 결과, ‘교육과정 수료, 시험 일 현재 성폭력상담경력 3년 이상 경과 시 1급으로 수용’에 찬성하는 의견이 6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육과정 수료, 시험 일 현재 성폭력상담경력 3년 이하인 경우 소정의 보수교육실시 후 1급으로 수용’에 26.6%가 찬성하였다.

〈표 6-5〉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수료자를 1급으로 수용하는 방안

(단위: %, 명)

구분	비율
교육과정 수료, 시험 일 현재 성폭력상담경력 3년 이상 경과 시 1급으로 수용	62.2
교육과정 수료, 시험 일 현재 성폭력상담경력 3년 이하인 경우 소정의 보수교육실시 후 1급으로 수용	26.6
교육과정 수료, 시험 일 기준으로 사회복지 및 여성학 등 관련 분야 재학 중인 자를 1급으로 수용	3.2
교육과정 수료, 시험 일 기준으로 사회복지 및 여성학 등 관련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를 1급으로 수용	6.4
기타	1.6
계(수)	100.0(188)

주: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 중 양성교육 국가자격화에 동의하는 종사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또한 양성교육 국가자격화에 동의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만약 양성교육이 150시간으로 확대될 경우에 64시간 또는 100시간 교육을 받은 기존 교육수료자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66.0%가 ‘교육과정 수료, 현장 경력 1년 이상일 경우 150시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의견에 찬성하였으며, 다음은 ‘교육과정 수료, 사회복지 및 심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150시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의견에 18.8%가 찬성하였다.

〈표 6-6〉 150시간 양성교육제도 시 기존 64시간 또는 100시간의 교육이수자를 수용하는 방안

(단위: %, 명)

구분	비율
교육과정 수료, 현장 경력 1년 이상일 경우 150시간과 동일하게 인정	66.0
교육과정 수료, 사회복지 및 심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150시간과 동일하게 인정	18.8
교육과정 수료시간이 64시간 또는 100시간 미만인 경우 150시간과의 차이만큼 보수교육실시	7.3
교육과정 수료시간이 64시간 또는 100시간 미만인 경우 150시간과의 차이만큼 현장실습실시	2.1
교육과정 수료시간이 64시간 또는 100시간 미만인 경우 150시간과의 차이만큼 보수교육과 현장실습 병행	4.2
기타	1.6
계(수)	100.0(191)

주: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 중 양성교육 국가자격화에 동의하는 종사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제2절 자격관리제도 관련 FGI

1. 주요 내용 및 응답자의 일반사항

성폭력 관련 전문상담원의 자격제도 관련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주요내용은 국가자격화 및 국가시험 도입, 자격 등급제 도입, 자격관리 방안 등이다.

참여기관은 성폭력상담소 2개소와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1개소로 총 3개 기관이다. FGI 참석자는 3명으로 성폭력 상담소 소장 2명,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부소장 1명 등이다.

2. FGI의 주요 결과

가. 국가자격화 및 국가시험 도입에 대한 의견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국가자격화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였다. 그렇지만 국가자격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부여와 같이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현장경력에 의하여 인정하는 방안 등으로 대분된다. 시험제도는 등급제 도입과 연결된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논의될 필요는 있으나 당장 검토대상이 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다.

또한 현장경력 인정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였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경력만을 인정하는 방안,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활동한 경우에도 기관의 인정을 받을 정도의 활동을 한 경우에는 기관 확인에 의해 경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주관적일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상담원교육이 채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채용과 교육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간단히 질적인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양성교육 후 시험인가요? 국가자격증으로 갈 때 고민 했던 게 약간 운동성이 있는 것이다. 교육받는 대상자들이 제한되지 않을까. 교육받고 상담원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자격이 돼서 받을 수 있는 폭이 줄어들면 어쩌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시험을 치게 되면 테스트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하다. 테스트내용에 여성주의 상담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테스트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도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경력을 인정해주고 자격부여를 해주잖아요. 지금까지 끌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흡수해줘야 단결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경력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000 00 같은 경우도 양성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이를 감안해서 거점센터를 만들면 덜 힘들면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 기존경력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보다 오히려 보호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이 감안됐으면 좋겠어요.”

“전문상담원 자질 관리를 위해 초반에 커트라인이 되는 관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면 어느 정도 시험은 있어야 하겠지만 성폭력 상담소 인력이 세 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그 흐름을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성폭력상담원에서 성폭력 전문상담원 1급을 뽑을 것이다. 그런데 상담소나 원스톱에서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 말고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재판지원단, 000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인정 되어야 하지만 자격관리에 있어서 엄격함이 떨어져야 한다.”

“전인구의 4분의 1이 사회복지사라잖아요. 사실 사회복지사도 웬만한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건데 현장의 경력이 인센티브로 적용된다면 모르겠지만 자격증만으로는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다.”

“상담원을 전문화시키고 자격제한을 두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안산에서도 상담원 구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지역은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기존 직원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격 등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등급제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하지는 않지만,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다만, 전술한 국가시험제도와 연계하여 상이한 의견을 보였다. 또한 질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자격 등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국가자격시험과 연계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3년 이상 근무하면 1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몇 회 이상 듣는다는 기준을 갖춘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임상 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가 있고 정신상담사 1, 2급이 있다. 1급 되기가 어렵지만 1급이 시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이상 경력이 되면 승급하되 조건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경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가로서 참여하는 분 중에도 정말 열심히 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종사자라 해서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하게 될 경우, 지나치게 주관적, 자의적으로 경력인정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한 정식으로 채용된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부작용,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전체 전문상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등급제 기준이 되어야 할지 많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법만 잘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거든요. 인식의 문제도 같이 가야 하는 문제예요. 인식과 의식의 문제라면 객관적인 문제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봐야할까. 초반에 일정 부분은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후에는 질적 평가에 대한 방식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자격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자격관리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다만, 지속적인 자격유지를 위한 개인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자격유지를 위한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상담원 채용 또는 근무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자격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출되었고,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기관에 따라 양적, 질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자격관리를 위한 기관이 지정되고, 지속적으로 자격관리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회에 상담학회, 한국발달심리학회 등이 있습니다. 일단 학회에 가입해

서 자기 분과 학회까지 2개를 가입하고, 회비도 다 내야 합니다.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격관리를 위한 회비는 기관에 따라 본인부담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본인부담 없이, 기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부담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자격관리기관에서 부담하게 하여 개인부담이 없게 하든지, 아니면 상담소, 센터, 보호시설에 예산을 지원하여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매매 방지 교육을 제가 받았었는데 …… 사이트에 교육 받은 것을 등록하고 관리해요. 2007년에 성매매 예방 강사 교육을 받았는데 2년에 한번이었어요. 사회복지사의 경우 보수교육은 1년에 한번 의무인데 안 받을 경우 과태료 20만원 물어요.”

“선생님이 들은 교육은 성매매예방 강사이고, 직군별로 기준이 다른 거 아닌가요? 직군 특성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에 여유를 더 두실 수는 있겠죠. 그리고 단, 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원 자격정지까지 해야 하나요? 2년에 1번 정도 보수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자격정지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리상담사의 경우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자격을 정지시키진 않아요.”

제3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현재 개인자격화되어 있는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자격관리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성폭력 전문상담원은 1급과 2급을 두는 국가자격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양성교육을 통하여 2급 자격을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을 통하여 1급 자격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을 시사한다. 여기서 일정요건은 관련법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양성교육 수료자에 대하여는 이수시간과 현장경력을 고려하여 2급 자격으로 인정하고, 1급 자격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일정요건은 2급 자격과 현장경력을 고려하여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넷째, 국가시험의 적절성 유지를 위하여 양성교육 강사와 성폭력 전문상담원들이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전문자격 출제시험 위원 공개모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출제시험 위원으로 선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격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가칭)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을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에서는 자격등록, 자격증 발급, 경력 관리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안전 실태 및 욕구

제1절 안전 실태

제2절 안전 관련 FGI 결과

제3절 시사점



7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 안전 실태 및 욕구

제1절 안전 실태

1. 신변안전 피해

가. 피해자나 가해자 측으로부터의 신변위협 또는 협박피해

이번 조사에 응답한 150개 기관 중 40.7%의 기관이 피해자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신변위협이나 협박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54개 기관이 지난 1년간 평균 4.4회 정도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인 250명의 상담원 중 31.6%가 신변위협 또는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각 기관별로 상담원 등 종사자의 변동을 감안한다면, 기관 차원에서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1> 피해자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신변위협 또는 협박 받은 기관 비율과 평균 횟수

(단위: 개소, %)

구분	(분석대상수)	협박당한 비율	평균 횟수(2012년)	
			(분석대상수)	평균
성폭력관련 기관	(150)	40.7	(54)	4.43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표 7-2> 피해자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전문상담원이 신변위협 또는 협박 받은 비율

(단위: %, 명)

구분	(분석대상수)	협박당한 비율
전문상담원	(250)	31.6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나. 종사자가 내담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측근으로부터 받은 피해

신변안전의 위협을 받았다고 응답한 35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담자 가족이나 측근으로부터 받은 피해의 종류를 중복 응답하도록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4%가 ‘요구에 불응했을 때 불평과 비난, 원망’, 응답자의 62.9%는 ‘피해자가족의 과도한 요구와 행패’라고 답하였다. 또한 ‘신체적 위협’이 25.7%, ‘입소자의 자살위협과 자살, 상해’와 ‘예기치 못한 공간 침입’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한 응답자가 22.9%였다. 응답자의 14.3%는 ‘보호시설 공동체 생활에서 입소자들 간의 폭언, 폭행, 중재과정에서의 위협’이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적 언어, 성적 접촉, 구애’에 대한 8.6%의 응답도 있어 종사자들이 성폭력피해자 상담과 지원현장에서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종사자의 피해를 줄이고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표 7-3〉(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경우)내담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측근으로부터 받은 피해 종류(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분석대상수)	비율 (35)
과도한 요구	45.7
요구에 불응했을 때 불평과 비난, 원망	71.4
피해자 가족의 과도한 요구와 행패	62.9
관계기관에 진정	20.0
성적 언어, 성적 접촉, 구애	8.6
신체적 위협	25.7
예기치 못한 공간 침입	22.9
보호시설의 노출, 인근 주변인들의 해코지	5.7
보호시설 공동체 생활에서 입소자들 간의 폭언, 폭행 중재과정에서의 위협	14.3
입소자의 자살 위협 및 자살, 상해	22.9
기타	-

주: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중 피해자나 가해자로부터 신변위협 또는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는 중복응답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다.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대상

신변안전을 위협하거나 협박을 가하는 대상에 대해 기관에서 응답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 측 가족이나 측근이 37.9%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 본인이 위협하거나 협박을

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8%로 다음이었으며, 내담자의 가족을 포함한 측근, 내담자 본인, 언론사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해자 측 가족이나 측근이 32.1%. 다음은 25.6%가 내담자의 가족이나 측근, 21.8%가 가해자 본인, 내담자 본인, 가해자 측 변호사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7-4〉 가장 많은 위협·협박을 가한 대상

(단위: %, 개소)

구분	내담자 본인	내담자의 가족이나 측근	가해자 본인	가해자 측 가족이나 측근	가해자 측 변호사	경찰/검찰/재판부	언론사	기타	계(수)
성폭력 관련기관	5.2	20.7	32.8	37.9	-	-	1.7	1.7	100.0(58)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표 7-5〉 가장 많은 위협·협박을 가한 대상

(단위: %, 명)

구분	내담자 본인	내담자의 가족이나 측근	가해자 본인	가해자 측 가족이나 측근	가해자 측 변호사	경찰/검찰/재판부	언론사	기타	계(수)
전문상담원	19.2	25.6	21.8	32.1	1.3	-	-	-	100.0(78)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라. 가해자 측의 신변 위협 내용

신변안전을 위협한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의 행동을 살펴보면, 85.4%인 41명의 종사자가 '위협적 언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61.0%로 가해자 측의 불시 방문과 위협이라고 응답하였다. 상담자나 기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비율이 14.6%, 가해자측근이 피해자를 진료했던 의사나 증인 등 사건지원과 연관 있는 사람을 방문하는 등 위협적 조치를 취한 경우가 7.3%를 차지한다.

〈표 7-6〉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경우)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가족이나 측근으로부터 받은 피해 종류(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비율 (41)
위협적 언어	85.4
상담자나 상담기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14.6
가해자 측근의 불시 방문, 위협	61.0
지원하던 피해자를 가해자가 살해	-
가해자 측근이 진료 의사, 증인 등 연관 있는 사람을 방문	7.3
기타	-

주: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중 피해자나 가해자로부터 신변위협 또는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는 중복응답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2. 신변안전위협에 대한 대처

가. 실제로 사용 중인 대처방법

신변안전에 대한 기관의 대처방법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75%의 성폭력관련 기관 응답자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진정시킨 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선택했고, 25%의 응답자는 "비상벨, 진정서, 내담자를 심터로 연계 후 종결, 관리자가 대처 중재" 등 기타 대처방법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12.5%는 '상담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알린다.'와 '호신용 무기 사용'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10.7%와 7.1%였다.

신변위협을 경험한 56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복응답한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2.6%가 기관의 응답과 같이 '피해자/가해자를 진정시킨 후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30.6%의 종사자는 경찰에 알린다고 응답하였다. 호신용 무기사용에 대해서는 기관이 응답한 결과와 달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호신용무기의 구입과 비치와 종사자의 신변안전에 위협하는 실제상황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피해자나 가해자 측의 돌발적인 위협상황에서 호신용 무기의 사용보다 실제로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7〉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경우) 기관의 대처 방법(중복응답)

(단위: 개소, %)

구분 (분석대상수)	비율
상담을 중단시킨다(사례 종결)	12.5
호신용무기 사용	7.1
경찰에 알린다	10.7
피해자/가해자 진정시킨 후 상담 진행	75.0
기타	25.0

주: 1)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나 가해자로부터 신변위협 또는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이는 중복응답결과임; 2) 기타에는 비상벨, 진정서, 내담자를 실퍼로 연계 후 종결, 관리자가 대처 중재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표 7-8〉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경우) 종사자의 대처 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비율
상담을 중단시킨다(사례 종결)	11.3
호신용무기 사용	-
경찰에 알린다	30.6
피해자/가해자 진정시킨 후 상담 진행	72.6
기타	3.2

주: 1) 성폭력관련 기관 종사자 중 피해자나 가해자로부터 신변위협 또는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복응답결과임; 2) 기타에는 지구대 신고, 비상전화, 경찰 및 경비업체 직원에게 도움 요청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나. 외부에 도움 요청한 현황

성폭력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종사자가 신변안전에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기관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위협을 경험한 55개의 응답 기관 중 49.1%의 기관이 경찰관서에 수사 동행을 요청하였다. 27.3%의 기관은 기타로 응답하였다. 또한 27.3%를 차지하는 “기타”의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자체해결, 비상전화, 보안업체 및 경찰관에 보호요청, 병원 관계자에게 협조요청”이었다. 각 20.0%씩 사법기관과 유관기관에 연락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경찰관이 근무하는 일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위기상황에서 인근 지구대 등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신변안전에 위협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협상황에서 경찰관서 또는 보안업체 등의 긴급출동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9〉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결과

(단위: 개소, %)

구분 (분석대상수)	성폭력관련 기관 (55)
병원에 의료 및 정신과 치료 지원요청	3.6
사법기관에 협조요청	20.0
경찰관서에 수사 동행 요청	49.1
성폭력 유관기관 연락 및 협조요청	20.0
기타	27.3

주: 성폭력관련 기관 중 피해자나 가해자로부터 신변위협 또는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자체해결, 비상전화, 보안 경비업체 및 경찰관에 보호 요청, 병원 관계자에게 협조요청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다. 신변안전조치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기관을 대상으로 신변보호를 위한 예방장치의 종류를 확인한 결과, '비상시 연락망(경찰관 또는 보안업체)과 비상전화'라고 응답한 사람이 91.9%로 가장 많았다. '출입문의 잠금장치'와 '완강기, 비상구, 소화기, 가스총 등 기구의 설비'에 대해서는 91.2%로 동일하게 답변하였다. '상담소 내부 면접 가이드라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2.2%였다. 응답자의 69.4%가 '위협이나 폭력에 대한 교육', 다음으로 63.9%는 '정기 슈퍼비전' 54.9%가 '외부면담사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종사자의 응답결과에서도 '비상시 연락망(경찰관 또는 보안업체), 비상전화', '출입문의 잠금장치', '완강기, 비상구, 소화기, 가스총 등 기구의 설비', '상담소 내부에서의 면접 가이드라인'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0〉 (기관 내) 신변보호를 위한 예방장치의 종류(중복응답)

(단위: 개소, %)

구분	성폭력관련 기관
(분석대상수)	(144)
위협이나 폭력에 대한 교육	69.4
비상시 연락망(경찰관 또는 보안업체), 비상전화	91.9
상담소 내부에서의 면접 가이드라인	72.2
외부 면담 시의 가이드라인	54.9
출입문의 잠금장치	91.2
완강기, 비상구, 소화기, 가스총 등 기구의 설비	91.2
정기 슈퍼비전	63.9
기타	4.2

주: 기타 예방장치로는 수시 슈퍼비전, 회의 시 안전에 대한 논의, CCTV설치, 사회복무요원 배치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표 7-11〉 (기관 내) 신변보호를 위한 예방장치의 종류(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전문상담원
(분석대상수)	250
위협이나 폭력에 대한 교육	55.2
비상시 연락망(경찰관 또는 보안업체), 비상전화	90.8
상담소 내부에서의 면접 가이드라인	64.7
외부 면담 시의 가이드라인	54.3
출입문의 잠금장치	89.2
완강기, 비상구, 소화기, 가스총 등 기구의 설비	88.7
정기 슈퍼비전	50.0
기타	2.4

주: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중 피해자나 가해자로부터 신변위협 또는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중복응답결과임; 2) 사안이 있을 때 교육, 수시 슈퍼비전, 비상벨 설치, CCTV 설치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라. 신변안전에 대한 노력

기관의 신변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관 응답자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점 중 3.57로 종사자의 평균 응답인 3.36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기관은 종사자가 느끼는 것에 비해 신변안전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관입장보다 종사자의 입장에서 기관이 좀 더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 7-12〉 기관의 신변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기관의 견해

(단위: %, 개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비율	2.6	8.6	30.9	44.7	13.2	100.0(152)	3.57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표 7-13〉 기관의 신변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종사자의 견해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비율	3.2	13.7	36.3	37.5	9.3	100.0(248)	3.36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마. 신변안전장치와 신변보호

기관 응답자를 대상으로 안전장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95.9%의 응답자가 '신고의 무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93.2%가 '피해를 당한 종사자들의 충분한 휴식 및 적절한 상담 지원체계 구축', 91.0%가 '경찰과의 응급연락망체계 구축'이라고 응답하였다. 89.7%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보호 장비(경보기, 비상벨, 잠금장치 등) 구비'라고 응답하였다. 84.2%의 응답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사고 발생 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과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들었다.

〈표 7-14〉 안전장치에 대한 견해

(단위: %, 개소)

구분	불필요	보통	필요	계(수)
폭력사건을 기관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공식적인 안전관리체계 마련	2.8	15.2	82.1	100.0(145)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보호 장비(경보기, 비상벨, 잠금장치 등) 구비	2.1	8.2	89.7	100.0(146)
피해를 당한 종사자들의 충분한 휴식 및 적절한 상담 지원체계 구축	-	6.8	93.2	100.0(148)
조직차원에서 업무과실이나 윤리적 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업무과실에 대하여 조직 내부에서 규제·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1.4	26.6	72.0	100.0(143)
기관 차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구축 및 유지	1.4	13.8	84.8	100.0(14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사고 발생 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과 매뉴얼 개발	2.7	13.0	84.2	100.0(144)
경찰과의 응급연락망체계 구축	2.8	6.3	91.0	100.0(144)
퇴근(6시) 이후의 신고전화는 경찰서나 파출소로 연결	20.1	23.6	56.3	100.0(144)
협박을 대비한 녹취 기능 강화	3.4	19.9	76.7	100.0(146)
신고의무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	0.7	3.4	95.9	100.0(148)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바. 대리외상에 대한 인식

신변안전에 위협받는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상을 당한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종사자의 입장에서 성폭력피해자상담으로 인한 대리외상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하였다.

‘다른 업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성폭력관련 업무는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높다’고 응답한 종사자의 평균은 5점 만점 중 3.2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신변안전과 대리외상에 대한 견해2:나는 가해자로부터 보복 당할까봐 걱정스러울 때가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의 평균값은 2.89로 높은 편으로, ‘나는 업무 수행 중 신변안전에 위협을 상당히 느낀다.’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였다.

대리외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며 상담원 등 종사자에게 대리외상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는 ‘내담자와 관련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장소 혹은 그 어떤 것이라도 피하고 싶었다.’에 응답한 평균값이 2.58로 중간점수를 상회하였다. 외상으로 인한 기억 회피로 볼 수 있는, ‘내담자와의 면담내용 중 일부는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고 응답한 평균값이 2.39로 적은 편이었다. 이를 통해 종사자의 성폭력피해자의 대리외상으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의 치료에 정책적인 노력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15〉 신변안전과 대리외상에 대한 견해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나는 업무 수행 중 신변안전에 위협을 상당히 느낀다.	4.8	32.5	34.9	24.1	3.6	100.0(249)	2.89
신변안전과 대리외상에 대한 견해2:나는 가해자로부터 보복 당할 까봐 걱정스러울 때가 있다.	6.4	31.7	29.7	30.5	1.6	100.0(249)	2.89
다른 업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성폭력관련 업무는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높다	4.8	17.2	34.4	36.8	6.8	100.0(250)	3.24
내담자가 겪은 충격을 내가 다시 겪는 것 같았다.	5.2	28.6	30.6	29.4	6.0	100.0(248)	3.02
내담자와 관련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장소 혹은 그 어떤 것이라도 피하고 싶었다.	11.6	40.4	29.2	15.6	3.2	100.0(250)	2.58
내담자와의 면담내용중 일부는 기억하려고해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12.9	48.4	26.6	11.3	0.8	100.0(248)	2.39

주: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사. 신변안전위협으로 인한 직무안정성

성폭력피해자 지원업무의 높은 스트레스와 긴장, 그리고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오는 불안감은 많은 종사자들의 직무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데, 이직 또는 퇴직을 '매우 심각하게 또는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4.1%,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3.1%였다. 이직이나 퇴직을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32.8%에 비해 두 배가 넘는 67.2%의 응답자들이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경우 이직이나 퇴직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6〉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경우) 이직 또는 퇴직 고려 여부

(단위: %,명)

구분	고려해 본 적이 없다	고려해 본 적이 있다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다	계(수)
비율	32.8	53.1	14.1	100.0(64)

주: 성폭력관련기관 종사자 중 피해자나 가해자로부터 신변위협 또는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제2절 FGI 결과

1. 성폭력피해자지원 전문상담원 초점집단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전문상담원들이 신변을 위협받는 상황을 파악하고 신변 안전보장을 위해 이번 조사에 참여했던 성폭력상담소의 전문 상담원 2명, 통합지원센터의 전문상담원 1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참가자들이 각자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논의할 내용을 정리해 오도록 함으로써 인터뷰 참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와 별도로 통합센터 관리자들의 모임에 참가하여 성폭력피해자지원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종사자의 신변안전, 대리외상, 소진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2. FGI 결과

가. 종사자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당사자와 과도한 요구

성폭력관련기관이 협박당한 비율은 40.7%로, 조사에 참여한 전문상담원의 응답비율인 31.6%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종사자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의 불평, 비난, 원망,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과도한 요구와 행패, 관계기관에의 진정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상담원의 입장에서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당사자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측근이 1번이고 내담자 가족이나 측근이 2번, 3번이 가해자 본인이다. 가해자들이 실제로 상담기관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가정폭력의 경우에 많지만, 성폭력 가해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이 더 많은 편이다. 전문상담원이 피해자가족에게 협박을 많이 당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설명할 시간도 없이 들이 닥친다. 지난번에 직원하나 모가지 날린다고 협박하고, 다시 진료를 받으러 와서는 아직도 그 사람 있냐고 또 확인하고 그런 사람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원인들이 여차하면 청와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전화 걸고 메일 보내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다.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최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되고 지원의 내용이 의료, 법률, 심리지원까지 확대되었고 지원 대상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피해까지 확대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요구사항이 과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원하는 시간에 면접을 안 해주느냐, 이미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다른 상담소 번호를 알려주면 왜 뺑뺑이 돌리냐, 왜 전화가 맨날 불통이냐, 상담소 돈 받아 놓고 뒤편, 당장 30분 내에 진료해달라고 요구해서 의사가 수술중이라 기다리도록 요구하면, 이게 무슨 윈스톱이냐며 논스톱이라고 한다. 000선장을 진료하고 케어했던 것처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 전화하거나 근무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전화하는 사람, 핸드폰 번호는 안 알려 주는데 법정 동행할 때 약속장소에서 만나기 위해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순간부터 계속 전화하는 사람 같은 경우, 부적절하고 집요한 요구를 하여 상담원을 지치게 한다.”

“예를 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해자가 정신질환자이고 가해자도 정신병 환자다. 성폭력을 당해서 기소했는데 불기소가 됐다. 불기소된 것을 000번호사에 맡겨서 항소를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하루에 몇 번씩 매일 전화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겨 이메일로 해달라고 하던데 이메일이 폭주한다. 엇그제 심지어 조사받을 때 동석하러 갔더니 가해자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전문상담원을 고소했다. 다음 주에 변호사랑 오라고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건 것은 다른 검사이다. 우리가 보기에 승산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들어 주면 민원이 너무 폭주할 것 같아서 고소를 받아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금액 한도를 없었는데 의료비 지원의 한도가 없었으니까 성형수술까지 해달라고 요구한다. 과도한 요구 속에 의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하여 치아치료를 해줬더니 최근에 미백치료까지 해달라고 요구했다. 미백은 성형으로 들어가서 지원해주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대한 웃으면서 ‘안타깝다. 저희도 지원해주고 싶지만 그만큼의 예산까지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다. 국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 더 많은 진료가 지원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는 등의 설명과 함께 피해자를 최대한 존중하며 돌려보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에게 지원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상담원의 소진을 가중시키고 심한 경우에 신변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응급한 상태의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윈스톱지원센터의 경우에 특히 성폭력피해자의 의료와 수사지원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음과 성폭력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치료와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진료는 차례대로, 형편상 겹칠 때에는 지체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원들한테 내담자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구조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부분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상담 시간 및 장소에서 폭력과 위협한 행동은 안 된다고 설명해주어야 한다.”

나. 종사자의 신변안전위협에 대한 대처

종사자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당사자에 대한 기관과 전문 상담원들의 대표적인 대처방법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진정시킨 후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알리거나 호신용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우선하여 소극적인 대처방법인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것을 다수가 선택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상황에서 종사자의 신변이 위협받

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종사자는 언제든지 위협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친족 성폭력의 증가와 보복범죄의 증가로 종사자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종사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안과 조치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난폭한 가해자에게는 경찰에 알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난동을 부린다고 해서 경찰에 알리는 것은 피해자를 지원해야 하는 기관에서 최대한 참는다. 종사자 입장에서는 기관의 명예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신고부터 하지 못한다. 종사자 입장에서 자신이 위협을 받으면 기관 이미지를 생각해서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해보는데 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쪽으로 간다.”

“성폭력 가해자인 의부가 수감 중이었는데 감옥에서 나올 때 자기 집애다 얘기해서 신나하고 흥기를 준비해오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가해자가 나오는 날부터 얼마동안 가해자를 수감시킨 사람들 모두, 피해아동을 지원했던 교회, 시청직원까지 사람들이 피신하고 00센터도 병원장님께 보고해서 청원경찰을 배치시킨 적이 있었다. 다행히 무사히 넘어가긴 했는데 가해자가 출소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 불안하다.”

“가스총을 항상 휴대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가스의 독성이 강해서 종사자들까지 해를 입을 수 있어서 사용하기를 꺼린다. 또 가스총이 총 모양을 하고 있어서 사용하는데 거부감과 부담감이 크다. 총기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가스총 보다 휴대가 편리한 소형 가스 스프레이를 상담원별로 비치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상담소의 출입구가 항상 공개되어 있어서 가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흥기를 들고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출입구에 CCTV나 내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 인터폰 같은 확인 장치를 설치해주면 좋겠다.”

“가스총보다 관내 파출소나 보안업체로 연락체계를 갖춰서 비상시에 바로 달려올 수 있다면 전문 상담원들이 안심할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5초 이상 통화가 안 되면 파출소에서 달려오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다.”

“상담소 내부에서 면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다. 이것은 비상시 대처 방법이다. 위협이나 폭력에 대비한 훈련, 그 다음에 정기적인 슈퍼비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위협에 대해서 심리적 소진을 풀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피해자 지원 시 받는 신변안전위협에 대한 대응매뉴얼, 위협에 대비한 안전훈련, 그리고 정기적인 슈퍼비전과 상담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신변안전 위협의 또

다른 대상으로 지목된 가해자 측 변호사는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제도적 차원에서 성폭력피해사건 관련 법률 업무수행 시 피해자지원 담당 상담원 등 종사자들에게 변호인의 과도한 요구와 의뢰인인 가해자에 대한 지나친 옹호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종사자들이 법정에서 나서는 경우, 종사자들의 신원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과 함께 가해자 측에 얼굴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다수의 종사자들에게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종사자들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종사자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신변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녹화된 것을 법정에서 그대로 보여주면 가해자에게 상담원등 지원자가(증인) 모두 개방된다. 증인인 상담원의 얼굴이나 이름이 다 공개됐는데 해당 가해자 얼굴이 험상궂고 위협적이었다. 신고의무자의 신분이나 비밀보장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친고죄일 때도 마찬가지로인데 비친고죄일 때는 종사자의 책임이 더 커지고 많아질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와 고소를 수반하는 결과가 따르며, 이로 인해 가해자 측의 비난과 위협이 종사자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정책적으로 성폭력피해 신고의무자인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분과 비밀을 보장해주는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다. 대리외상

종사자가 성폭력피해자의 외상에 대해 대리외상을 경험함으로써 피해와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 내담자의 성폭력피해로 인한 외상 경험에 공감하는 과정에서 전문 상담원 등 종사자 역시 대리외상으로 인한 부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담원 등 종사자의 소진은 더욱 커지며 지원을 받는 피해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피해 등 외상을 지원하는 상담자가 경험하는 대리외상의 증상과 정

도를 지각하고 이에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상담원 등 종사자가 성폭력 피해자의 외상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종사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슈퍼비전체계와 전문상담지원체계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래방 화장실에서 성폭력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성폭력기관에 종사 하면서 화장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핸드폰을 가지고 가든가 친구들과 함께 간다. 딸아이한테도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고, 가능하면 피해상황을 안 겪기 위해 조심한다. 성폭력사건은 특히 원룸, 저층아파트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난다. 신입직원 이 들어 올 경우 자취를 한다면 원룸보다 소형아파트를 권해주기도 한다.”

“성폭력피해자 지원 업무의 종사자로 투입된 사람들에게 외부 슈퍼비전과 상담지원 받을 수 있는 보완체계가 필요하다. 성폭력전문 상담원들은 공감으로 인한 피로감과 대리외상으로 인해 극심한 감정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완해줄 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라. 소진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상담원들과 종사자들은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육체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감과 상처, 그리고 수사로 이어지는 진술과정과 증거채취과정을 지원하는데서 오는 피로감을 경험하는 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영역의 서비스지원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급성적이거나 위기적인 상황에서 지원업무를 하는 전문상담원의 경우, 또는 성폭력피해로 인해 만성화된 스트레스와 부적응문제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우, 종사자가 가지는 정신적, 심리적 부담감은 종사자를 소진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최근 성폭력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성폭력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풀어주는 다양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성폭력피해자 지원 분야에서 전문성과 숙련된 지원경험을 가진 유능한 종사자의 확보는 피해자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가 지원체계의 충실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종사자의 신변위협과 대리외상, 그리고 소진으로 인한 이직의사를 표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유의미하게 보아야 한다.

“혼자서 3~4시간 욕을 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피해자를 제지하면 상담원을 때리려고 책상을 치면서 다가오기에 그렇게 하시면 지원 못한다고 얘기했더니 잠잠해지다가 다시 욕을 했다. 욕을 3시간 정도 듣다보니까 구토가 나오려고 했다. 욕만 들었는데도 그런 경우도 있다. 만취한 사람의 경우, 힘이 세서 제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청소년피해자의 경우, 조사받으려고 대기 중이었는데 나가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흥분한 피해 청소년이 화분을 집어 던져서 화분이 다 깨졌다. 야간에 오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알코올이 들어간 상태이다 보니까 좀 더 흥분상태가 되고, 심지어 지원을 안 받겠다고 나가는 청소년피해자들은 설득하는 상담원과 경찰관한테 침 뱉고, 때리고, 할퀴고 그런다. 정말로 이 일을 오래하기 힘들다.”

성폭력피해자지원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이직 또는 실직을 고려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높은 스트레스와 피해자지원의 까다로움, 법적, 의료적 지원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신변보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소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른 지방에 있던 피해자가 몇 군데 센터를 돌고 저희센터로 연계되어 직원들이 초긴장하고 최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비위를 맞추다보니 모두 소진돼 버렸다.”

소진으로 인해 개인적인 성취감도 떨어지고 불만감이 쌓이고 업무스트레스가 높아져 결국 이직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다. 종사자의 정서적인 대처가 많아질수록 소진율은 떨어진다. 전문상담원등 종사자의 정서적 탈진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처럼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상담업무를 몇 년 이상 하면서 너무 소진됐다 싶으면 업무 교체를 해줄 수도 있고, 5년 넘으면 안식휴가를 주면 좋겠다. 어떤 종사자는 강의를 잘하니까 교육홍보 전담으로 업무를 바꿔준다거나, 또 상담업무에 강한 사람은 상담업무로 배치를 한다든지, 순환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종사자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풀을 두어서 종사자들의 업무영역을 재배치하거나, 안식휴가 등을 제공하고 승진과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종사자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 변호사한테 변호사 사무실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상담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룰에서 어긋나는 부분이다. 가해자 변호사들은 이런 곳에 아예 접근을 안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정신과 의사한테도 무식한 질문들, ‘당신 자격 있냐. 성폭력이 아닐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느냐’ 와 같은 질문들에 답변하길 요구하고, 사실을 조회하는 데 이런 것이 불편하다.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답변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과태료를 안내면 구속시키겠다.’ 등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원을 소진시키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즐겁고 밝게, 항상 웃지는 않지만 좋은 분위기에서 일해야 하는데 항상 긴장감에 시달리고, 연계하는 기관들끼리도 서로 이해보다는 고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사자 간에 예의를 차리면 좋는데 선생이 학생 나무라듯이 혼내서 소진이 많다. 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기대치가 많은 것도 부담스럽다.”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의 소진을 가중시키는 요소에는 가해자 측 변호인의 지나친 태도와 기관 내 종사자들 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연계기관들의 상호존중태도의 부족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적 증인소환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의료인과 상담원 등 종사자 소환조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자지원 상담소와 통합지원센터 등 기관의 연계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계에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사자처우와 서비스의 질을 평준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각 기관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 그리고 서비스의 질적 차이와 피해자지원 역량을 균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시사점

피해자지원기관의 종사자들은 심각하고 복합적인 외상피해와 함께 극심한 심리적 손상감을 호소하는 성폭력피해자와 가족 등 피해자의 주변사람들에게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람과 깊은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협박과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 과도한 지원 요구로 인해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첫째, 신변을 위협하는 존재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가해자의 가족이나 측근의 위협이나 협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피해자를 포함한 내담자의 가족이나 측근의 위협 또는 협박으로부터 전문상담원 등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요구와 불평, 불만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일반적으로 피해자 측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종사자가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직접 민원처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과 같은 중간 기구에서 민원에 따른 문제와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리외상 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사자들이 피해자지원과정에서 경험하는 대리외상을 완화하고 자신감과 효능감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 내 지지구조와 종사자의 대처기술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¹¹⁾ 둘째, 내담자가 경험한 성폭력피해를 자신이 당할까 두려워하는 종사자들의 응답비율이 3.02로 평균이상을 나타낸 것과, 내담자와 관련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장소 혹은 그 어떤 것이라도 피하고 싶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8로 중간 값 이상을 나타낸 결과를 종합해볼 때, 전문상담원 등 종사자들에 대해 주기적인 슈퍼비전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에 대한 대리외상예방과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사자의 소진 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사자의 소진예방을 위해 종사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¹²⁾ 둘째, 종사자들의 업무에서 오

11) 김보경(2012)은 연구에서 상담자의 아동기 외상 경험과 연령, 교육 수준, 근무 경력이 현재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데서 오는 대리외상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의 대리외상극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직무를 위한 심리검사와 심리교육 등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12) 권선덕(2000)은 사회복지사의 소진실태와 소진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소진율을 낮추는데 유

는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급여와 승진을 통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 성폭력상담소와 시설의 종사자들은 통합지원센터 종사자들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급여체계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소진율이 더욱 심화된다는 일부 종사자의 지적이 있었다. 민간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높은 통합지원 센터의 종사자들 역시 승진과 급여 등 보상체계에 대해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성폭력피해자를 일선에서 직접 지원하는 종사자들의 승진, 급여 등 보상체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조직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¹³⁾ 이번 연구조사를 시작으로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원 등 조직 내 종사자들의 조직 내 갈등과 의사소통 유형, 피로도, 소진 등에 대해 별도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의미한 요소로, 사회복지사의 자아존중감을 들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자아효능감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복지사의 소진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의 소진을 낮추는데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13)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조직의 내부 역동과 인간관계, 분위기, 의사소통방식, 종사자간 협력적 관계 등은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각기 다른 영역의 직업군이 함께 근무하는 통합지원센터의 경우에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성폭력피해자 지원업무로 인한 소진보다 조직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등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더욱 피로해진다고 한다.





제8장 정책제언

- 제1절 양성보수교육 및 자격관리의 단기 정책방안
- 제2절 양성보수교육 및 자격관리의 중장기 정책방안
- 제3절 종사자 안전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8

제1절 양성·보수교육 및 자격관리의 단기 정책방안

양성·보수교육 및 자격관리와 관련하여 조속히 정책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어서 이러한 정책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시한다.

〈표 8-1〉 양성·보수교육 및 자격관리의 단기 정책방안

영역	정책방안
양성·보수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운영	• 양성·보수교육기관을 정부 재정지원에 의하여 위탁 운영
	• 양성·보수교육기관은 인구분포 및 지역 간 거리를 고려하여 양성·보수교육의 접근성 제고
	• 양성·보수교육기관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 지정, 운영
	• ‘성폭력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양질의 전문 강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 교육기관의 기본운영이 교육기관별로 상이하지 않도록 교육계획 제출받아 사전에 조정
	• 교육기관의 기본운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3진 아웃제 채택
양성·보수 교육의 교과과정 및 평가	• 현장실습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현장실습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
	• 양성교육은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과 현장실습으로 구분하고,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 70~80%, 현장실습 20~30%를 배분
	• 수요자를 찾아가는 보수교육을 위한 CD제작, 동영상 보급 및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 모색
	• 자기주도의 참여식 교육방법인 현장실습, 워크숍, 심포지엄 등 종사자의 참여와 발표, 토론 등이 공유되는 보수교육 방식 도입
	• 보수교육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수교육 내용의 가이드라인 및 시간 등에 대해 명시하여 보수교육에 대한 근거 명확화
	• 직급 및 직무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상시화
	• 보수교육 과정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상담원의 자세 등 피해자 인권교육 강화
	• 보수교육 과정에 여성주의 상담과 기법의 강화
	•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과목과 시간 확대
	• 교육과정에 사회복지 개념 및 이론 관련 교과목 강화
자격관리	• 양성교육에 ‘평가제도’ 도입하며, 평가방식은 강의교육 평가와 현장실습 평가로 구분 실시
	• 양성교육 수행기관은 자체기준에 의한 교육생의 평가결과를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에 통보
	• 강의교육을 통과한 교육생에게 지정된 현장실습기관의 목록을 제공하고, 현장실습기관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 현장실습기관과 교육생에게 통보
	• 현장실습기관은 자체기준에 의한 교육생의 평가결과(통과(pass) 또는 탈락(fail))의 평가결과를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에 통보
	• 최종적으로 강의교육 평가와 현장실습 평가를 모두 감안하여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을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로 수여
	•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자격등록, 자격증 발급, 경력 관리 등 담당

1. 양성·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운영

선행연구, 정책동향, 실태조사 결과,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자문회의 등에 근거하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지정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단기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양성·보수교육기관을 정부 재정지원에 의하여 위탁 운영토록 한다.

이는 성폭력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인식하여 정부지원에 의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육에의 참여 의욕과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자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민간기관 및 단체, 특히 여성운동단체에서 성폭력 업무에 기여한 바를 최대한 인정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성·보수교육기관은 전국의 인구분포 및 지역 간 거리를 고려하여 양성·보수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즉, 양성·보수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소수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국을 5대 광역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3~5개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즉, 양성·보수교육기관은 수도권에 5개소, 강원·충청권에 3개소, 광주·전남·북·제주 권에 4개소, 대구·경북 권에 4개소, 부산·울산·경남 권에 5개소 등 전체 21개소를 제시한다. 다만, 기관별 참여교육생 수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8-2〉 전국 권역별 양성·보수교육기관 수

광역권명	양성·보수교육기관 수
수도권	5개
강원·충청권	3개
광주·전남·북·제주 권	4개
대구·경북권	4개
부산·울산·경남 권	5개
전체	21개소

셋째, 양성·보수교육기관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을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동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폭력관련 기관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육교사는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넷째,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성폭력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일선 양성·보수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전문 강사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성폭력 전문 강사 인력풀’은 교과목과 지역(광역권)에 의하여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전문 강사의 충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력풀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하고, 일정기준을 정하여 참여토록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양성·보수교육기관의 기본운영이 교육기관에 따라 상이하지 않도록 교육계획을 제출받아 사전에 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교육기관에 따라 상이한 교육과정, 교육내용으로는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결과의 큰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1년 계획을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에 제출하고, 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에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양성·보수교육기관의 기본운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3진 아웃제를 채택한다.

양성·보수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교육과정, 평가방식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도감독에는 정형화되고 사전 예고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1차로 시정조치를 하고, 2차로 위탁을 중지하며, 마지막으로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양성·보수교육의 질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현장실습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현장실습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한다.

지정된 현장실습기관은 슈퍼바이저를 두어야 할 것이며, 실습을 지도하고 실습생을 평가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현장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에 따라 약 5~10만원의 ‘실습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양성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및 평가

선행연구, 정책동향, 실태조사 결과,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자문회의 등에 근거하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교과과정과 교육이수후의 평가와 관련된 단기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양성교육은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과 현장실습으로 구분하고,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 70~80%, 현장실습 20~30%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양성교육은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과 현장실습으로 구분하고,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 70~80%, 현장실습 20~30%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시되었다. 강의교육은 100시간이 가장 적절하며, 현장실습 시간을 강의교육에 일부 포함하거나, 별도의 약 20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강의교육은 상담사례연구, 이론교육, 토론교육을 병행토록 하며, 가능한 한 상담사례연구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표 8-3〉 양성교육 교육과목(안)

법정사항			실제 교육	
강의교육	교육과목	이수 시간	과목명	이수 시간
소양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의 이해 • 여성인권과 폭력 • 행정실무(문서작성 및 회계 등) 	15	•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의 이해	15
			• 폭력상담의 여성주의적 접근	
			• 여성의 인권과 폭력	
			• 행정실무(문서작성 및 회계 등)	
전문분야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의 이해 •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 법률구조실무(수사절차의 이해 포함) • 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 • 피해자 등 의료지원 실무 	30	• 폭력에 대한 이해 및 실태와 대처방안	30
			•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이해	
			•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실제	
			• 법률구조실무(수사절차 등)	
전문분야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심리개론 • 상담 원리와 기법 • 상담의 기법과 프로그램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대상별 상담과정 	35	• 상담기초이론	35
			• 상담의 기법과 프로그램 1	
			• 상담의 기법과 프로그램 2	
			• 대상별 상담과정	
			• 상담자의 자세, 역할 및 윤리	
전문분야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 • 역할연습 등 	20	• 상담사례연구	10
			• 현장실습	10
총계		100		100
현장실습	이수시간		이수시간(선택)	
	-		10	

둘째, 기존의 집합방식의 보수교육에서 수요자를 찾아가는 보수교육을 위한 CD 제작, 동영상 보급 및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성폭력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FGI 결과, 상담원의 보수교육 참여수준은 저조하였고 보수교육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보수교육 기회가 불충분하고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보수교육이 집합교육방식위주로 실시되어서 상담원 전문성 및 욕구에 따라 차별화되는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수교육의 접근성 제고와 다양한 교육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되는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다양한 교육장치와 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강의 위주의 주입식 보수교육 방식을 지양하고 자기주도의 참여식 교육방법인 현장실습, 워크숍, 심포지엄 등 종사자의 참여와 발표, 토론 등이 공유되는 보수교육 방식을 도입한다.

성폭력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현재 실시되는 보수교육의 약 80%가 강의위주의 교육으로 보수교육 평가결과 상담원은 교육방식에 대한 적절성을 30% 미만이 응답하여 상당히 저조한데 비해, 선호하는 보수교육 방식은 강의가 65%, 현장실습이 35%로 현재보다 현장실습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강의위주의 교육방식은 현장 적응력 또한 떨어지므로 다양한 폭력피해자의 발생과 욕구를 감안할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종사자의 전문성과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자기주도의 참여식 교육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사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목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수교육 과정이 유연하게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수교육 내용의 가이드라인 및 시간 등에 대해 명시하여 보수교육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내정책 동향에서 분석한 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는 보수교육 내용 및 교과목에 대해 제시되어 있고, 이외에 근무연수 및 직급수준, 종사영역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차별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에는 종사자 전문성을 위해 3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교육의 질적 담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상담원 보수교육지침」을 마련하여 보수교육 내용 및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직급 및 직무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상시화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담원의 이직을 방지하고 직무의 향상을 위해서 소진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과목을 확대한다.

성폭력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전문상담원의 보수교육참여율은 과반수를 초과한 정도에 불과하며, 보수교육 기회가 불충분한 이유로 24.8%가 필요한 보수교육과정

이 없다는 점과 보수교육이 별도 도움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FGI 결과, 상담원의 상담수가 이직하고 있으며 이직 기간도 점차 짧아지고 있는데 이는 상담원의 소진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국내정책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과정 중 기본과정에 상담원소진예방이 프로그램이 2박 3일간 2회에 걸쳐 운영되고는 있으나, 상담원의 소진은 직급 및 직무별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본과정에만 운영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상담원의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을 직급 및 직무별로도 차별화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보수교육의 접근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여섯째, 성폭력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등 인권강화 측면에서 보수교육 과정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상담원의 자세 등 피해자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피해는 가족 및 친인척, 주변 지인 등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왜곡된 성문화 및 가치관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치료 및 회복 후에도 정상적으로 재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성폭력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오히려 인권을 침해당하는 역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신고, 조사 및 상담과정 등에서 인권이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언론 및 대중매체로부터의 보호도 요구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담 및 조사과정 등에 개입하는 상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고무시켜야 한다.

일곱째,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될 때 여성주의 상담의 효과성은 배가되므로 보수교육 과정에 여성주의 상담과 기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 사회전반의 왜곡된 성문화 및 가치관으로 인해 피해자가 비난 받는 모순적인 규범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문제와 인식이 높아지면서 성폭력 피해를 함께 함께 공유하는 인식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성폭력 피해를 은폐하고자 하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이는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문화가 담보될 때만이 성폭력 피해를 사회에 노출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상담원 또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

육과정에 여성주의 상담을 강화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될 때 성폭력 피해예방과 회복을 위한 전문가의 개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실질적인 서비스 대응을 위하여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과목과 시간이 확대되어야 하며, 나열식 강의가 아닌 실질적인 법적용에 대한 보수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시설 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법적 틀 내에서 이루어져서 기본적인 법률용어나 내용, 개념, 범위를 비롯해 사건처리 절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의 법적인 보호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법적 지식과 적용하는 기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성폭력서비스는 사회서비스의 틀 내에서 제공되어야 하므로 교육과정에 사회복지 개념 및 이론 관련 교과목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 상담서비스는 일차적으로는 피해자의 상처나 고통을 치유하고, 2차적으로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통합까지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특히 성폭력상담이 피해자를 치료하는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자립·자활 등을 비롯하여 예방적인 서비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과정에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여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사회서비스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열째, 양성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방식은 강의교육 평가와 현장실습 평가로 구분하여 별도로 실시한다.

강의교육 평가는 양성교육 수행기관에서, 실습평가는 현장실습기관에서 수행한다.

3. 자격관리

선행연구, 정책동향, 실태조사 결과,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자문회의 등에 근거하여 자격관리와 관련된 단기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양성교육 수행기관은 자체기준에 의한 교육생의 평가결과를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에 통보한다.

강의교육을 담당하는 양성교육 수행기관에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격관리국에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자체 평가의 방식은 현재 단계에서는 양성교육 수행기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앞에서 정책방안으로 제시된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의 승인 또는 조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보다는 양성교육의 질적 담보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강의교육을 통과한 교육생에게 지정된 현장실습기관의 목록을 제공하고, 현장실습기관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 현장실습기관과 교육생에게 통보한다.

강의교육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습의 기회가 주어진다.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현장실습기관을 신청 받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기관으로 요청하여 지역별로 일정규모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생이 희망하는 현장실습기관이 편중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희망기관을 1순위, 2순위로 구분하여 신청토록 한다. 그럼에도 희망 현장실습기관이 편중된다면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이 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장실습기관은 자체기준에 의한 교육생의 평가결과(통과(pass) 또는 탈락(fail))의 평가결과를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에 통보한다.

현장실습기관은 자체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에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자체기준이 지나치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수항목을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에서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최종적으로 강의교육 평가와 현장실습 평가를 모두 감안하여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을 여성가족부장관의 명의로 수여한다.

양성교육 수행기관과 현장실습기관에서 보고된 개인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가칭)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종합적으로 자격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판단결과는 교육생에게 통보되고, 자격을 획득한 교육생에게는 자격증을 송부하게 된다.

다섯째,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자격등록, 자격증 발급, 경력 관리 등을 담당한다.

자격관리 전담기구를 둬으로써 지속적 자격관리와 전문상담원의 경력인정 등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함이 적절하다.

제2절 양성교육·보수교육·자격관리의 중장기 정책방안

중장기 정책방안은 현재의 제도가 단기 정책방안에 의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착된 후에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보수교육 및 자격관리제도의 발전적 개혁을 위해 제시되는 것이다. 양성·보수교육 및 자격관리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정책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어서 이들 정책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

〈표 8-4〉 양성보수교육 및 자격관리의 중장기 정책방안

영역	정책방안
보수교육 대상자의 확대와 교육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전문상담원 외에 성폭력시설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및 활동가에게도 보수교육 기회 제공 • 성폭력시설의 보수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종사자의 부담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 마련 • 종사자의 개별 학회활동, 심포지엄 참여 등을 보수교육 시수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양성·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교육의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며, 선택과목은 본인의 전공과 관심 또는 부족 여부에 따라 선택 • 양성·보수교육의 실시 후 평가를 의무화하고, 전체 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평가틀’을 개발하여 활용하며,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교육생에 대해서는 탈락 또는 재교육 실시
자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전문상담원은 1급과 2급을 두는 국가자격제도화 • 2급 자격은 양성교육에 의하여 부여하며, 1급 자격은 일정요건을 갖춘 2급 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에 의하여 부여 • 기존 양성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한 ‘국가시험 면제제도’를 적용하여 1급 자격 부여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담당하는 (가칭)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 제도의 도입과 (가칭)「여성폭력기본법」 제정을 적극 검토

1. 보수교육 대상자의 확대와 교육비 부담

선행연구, 정책동향, 실태조사 결과,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자문회의 등에 근거하여 보수교육 대상자의 확대와 교육비 부담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등록된 전문상담원 외에 성폭력시설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및 활동가에게도 보수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상당수의 성폭력시설은 재정 및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자원봉사자 및 활동가를 상담업무에 활용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상담원보수교육은 등록된 정규 상담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서 상당한 경우 상담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피해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시설 및 인력확대가 필요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자원봉사자 및 활동가에게도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성폭력시설의 보수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종사자의 부담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보수교육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대체인력부족과 업무 부담에서 오는 교육기회 부족과 함께 예산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보수교육비용의 본인부담은 30% 내외수준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종사자가 부담해야 되며 성폭력시설 중 보수교육 예산 공식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비율도 45%로 절반에 근접하였다. 한편 상담원이 희망하는 보수교육비용 부담은 약 19%로 현재보다 11%p가 감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참여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단계별로 종사자의 비용분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종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보수교육비용 부담을 간접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종사자의 개별 학회활동, 심포지엄 참여 등을 보수교육 시수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성폭력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FGI 결과, 종사자 보수교육 참여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보수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한 보수교육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 종사자는 교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개인비용으로 학회활동, 심포지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개별 활동은 보수교육 시수로 인정되지 않아서 공식적인 보수교육과정에 개인비용을 이중적으로 부담하고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별 활동을 보수교육 시수로 인정할 경우 보수교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학회 및 심포지엄 참여 등의 개별 활동을 교육시수로 흡수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양성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및 평가

선행연구, 정책동향, 실태조사 결과,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자문회의 등에 근거하여 양성·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및 평가와 관련된 중장기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며, 선택과목은 본인의 전공과 관심 또는 부족 여부에 따라 선택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성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학과 및 세부 전공에 따라 필요로 하는 교과목이 상이할 것이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채택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교육의 경우에도, 현재 스스로 부족한 분야 또는 현업에서 간절히 요구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양성·보수교육의 실시 후 평가를 의무화하고, 전체 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평가틀’을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결과가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교육생에 대해서는 탈락 또는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평가틀’의 개발과 ‘일정기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표준평가

틀'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것이므로 후속연구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교육효과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일정기준' 역시 과학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자격관리

선행연구, 정책동향, 실태조사 결과,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자문회의 등에 근거하여 현재 개인자격화되어 있는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자격관리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성폭력 전문상담원은 1급과 2급을 두는 국가자격제도로 한다.

국가자격제도화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는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욕구를 반영한 것이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비교하면 다소 간소화된 것이다.

둘째, 2급 자격은 양성교육에 의하여 부여하며, 1급 자격은 일정요건을 갖춘 2급 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에 의하여 부여한다.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통하여 2급 자격을 부여한다. 기존 양성교육 수료자에 대하여는 이수시간과 현장경력을 고려하여 2급 자격으로 인정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을 통하여 1급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데,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일정요건은 2급 자격과 현장경력을 고려하여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법 또는 (법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1급 자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게 된다.

국가시험의 적절성 유지를 위하여 양성교육 강사와 성폭력 전문상담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전문자격 출제시험 위원 공개모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출제시험 위원으로 선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양성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한 ‘국가시험 면제제도’를 적용하여 1급 자격을 부여토록 한다.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양성교육 수료자는 1급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에 국가시험 면제제도가 분명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자격제도와 국가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시 면제의 조건이 언급되고, 구체적 면제조건은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성폭력 외에 가정폭력, 성매매를 포함하여 (가칭)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과 (가칭) 「여성폭력기본법」을 제정할 것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관련된 세 가지 유형의 폭력은 발생원인과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공통된 점이 많이 발견된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가해자가 가지는 반 여성주의적 의식에 대응하는 방안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폭력에 접근하는 방식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종합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가칭) 「여성폭력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본법은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현행 폭력유형별(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개별법은 그대로(충돌되는 내용은 개정 필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종사자 안전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조속히 정책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어서 이러한 정책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시한다.

〈표 8-5〉 종사자 안전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영역	정책방안
종사자 신변안전 방안	• 성폭력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제공
	• 성폭력피해자의 지원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종사자가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지침과 대응매뉴얼의 제작과 배포, 주기적인 위험대비 교육과 훈련 필요
	• 경찰·보안업체의 긴급출동서비스, 신변안전장비와 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전문상담원 등 종사자의 법정증인 보호조치와 가해자의 수사재판 과정과 수감, 출소에 대한 안내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필요
대리외상 문제 해결방안	• 주기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 필요
	• 전문가에 의한 슈퍼비전 지원 필요
소진문제 해결방안	• 성폭력피해자지원 법과 제도, 서비스의 내용을 명시해서 피해자에게 고지
	•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슈퍼비전, 프로그램 등 보완체계 마련
	• 종사자의 급여와 승진, 휴식 등 보상체계 개선

1. 종사자 신변안전 방안

성폭력피해자들이 경험한 신체적 외상경험과 극심한 손상감으로 인한 응급상태의 피해를 지원하는 종사자들은 외상으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화된 피해자와 가족 등 측근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행패, 그리고 과도한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종사자의 신변안전위험은 단순한 언어폭력이나 위협을 넘어 성폭력피해자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의욕을 해치며 소진과 이직으로 이어져 직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성폭력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은 단기간에 획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담원을 포함한 전체 기관 종사자들의 숙성된 노하우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전문상담원 등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150개의 성폭력관련기관 중 40.7%인 54개 기관이 피해자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신변위험 또는 협박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피해자 측의 요구에 대한 불만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성폭력피해

자의 지원에는 시설과 예산, 인력이 수반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종사자들이 임의로 결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의료비와 즉시지원은 정책적으로 지원기관의 인력과 시설구조, 예산지원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부족한 인력구조와 지원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일부 사건이 풀리는 시간대에 종사자들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항의와 불평,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상담원 등 종사자인력수급과 배치, 피해자지원예산의 확보, 피해자의 윤리와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활용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성폭력피해자의 지원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협을 종사자가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지침과 대응매뉴얼의 제작과 배포, 주기적인 위험대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전문가 대상의 FGI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주취상태 혹은 흥분과 불안상태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난폭한 상황에 대한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임기응변적 대응과 자구책만 기대하기보다 구조화된 안전지침과 대응매뉴얼이 제작, 보급되고 위험대비 교육과 훈련이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¹⁴⁾

셋째, 경찰보안업체의 긴급출동서비스, 신변안전장비와 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 비교적 널리 보급된 가스총이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한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종사자가 신변안전을 위협받은 경우, 가스총이라 할지라도 총기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심리적 부담과 저항감이 컸다. 오히려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스프레이, 경보기, 비상벨, CCTV, 인터폰, 출입문 통

14)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받는 위협이 심각해지면서 신변안전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정미경 전 국회의원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8년 발표한 자료(정미경, 2008.5)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와 뉴저지 주, 워싱턴 주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케이스워커가 업무수행 중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뉴저지 주에서는 종사자의 안전과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상, 스트레스, 슬픔대처, 신변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변안전을 위해 경찰에 의해 만나절동안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을 위한 훈련”이 제공된다고 한다.

제 장치 등 다양한 보호 장비와 안전시설에 대한 요구와 경찰이나 보안업체 등의 긴급 출동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안전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상해 보험료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인근 지구대나 보안업체와 출동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상담원 등 종사자의 법정증인 보호조치와 가해자의 수사재판 과정과 수감, 출소에 대한 안내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원 등 종사자는 성폭력피해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지원하면서 피해입증에 필요한 제반 증거들, 의료·심리적 증거들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법정에서 피해자 측이나 가해자 측에 의해 필요시 소환된다. 이때 증인으로서, 피고인과 방청인이 보는 앞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클 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에 신분이 노출됨에 따라 가해자 측으로부터 협박과 신변위험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규칙에서 활용 가능한 ‘차폐막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가해자 측에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인 증인의 신분과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¹⁵⁾

성폭력사건에 대한 신고죄폐지로 신고가 곧 수사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수사관이 배치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전문상담원을 비롯한 종사자에 대한 증인소환사태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와 함께 종사자의 신변위험의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증인인 종사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대책이 보다 세밀히 마련되어야 한다.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들은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의 수사재판과정과 출소까지의 과정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친족성폭력사건이나 일반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지원한 종사자들에게 협박과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법기관에서는 사건을 지원한 상담소와 통합지원센터, 그리고 피해자 측에 가해자의 수사재판과정과 결과, 그리고 출소까지 가해자의 이동경로, 가해자의 성향과 심리변화 등을 전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15) 정미경 전 국회의원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구조사에서 제시한 일본의 피고인 측의 퇴정 하에 증인 신문을 하는 제도(일본형사소송법 제 304조의 2)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증인보호제도가 필요하다(정미경, 2008).

이와 함께 신고죄폐지로 인해 수사진행을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한 종사자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표 7-14>의 안전장치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95.9%의 종사자들이 신고의무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통해, 신고의무자로서 종사자들이 성폭력피해신고 후 수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 신고와 사건처리의무자로서 업무상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당시 성폭력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고 수사를 거부한 피해자가 이후에 심경의 변화를 겪고 피해당시에 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느냐며 문제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대리외상 문제 해결방안

선행연구, 정책동향, 실태조사 결과,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자문회의 등에 근거하여 성폭력 전문상담원 등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대리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주기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성폭력피해자 지원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피해가 종사자에게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피해자가 겪은 피해사실을 들으면서 종사자 역시 스스로 불안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종사자가 피해자지원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종사자의 심리건강에 손상이 올 수 있다. 실제로 성폭력피해자지원 사례가 많은 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 비교적 나이가 적은 종사자들이 2년을 견디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강간 등 심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례가 많은 일부 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전문상담원의 20~30% 가량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결원이 생김에 따라 계속 모집공고를 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한다. 종사자의 심리적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종사자에 대해 심리검사와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전문상담원 등 종사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상태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가에 의한 슈퍼비전 지원이 필요하다.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자가 경험하는 대리 외상의 증상과 정도를 지각하고 이에 적절히 개입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운영 중인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의 “아동장애인진술전문가”제도의 경우, 전문 슈퍼바이저에 의한 슈퍼비전, 종사자 내부 슈퍼비전과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소진과 대리외상을 예방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슈퍼비전과 사례회의, 그리고 상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통합센터와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종사자의 대리외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3. 종사자 소진문제 해결방안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안전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위협과 피해자 측의 과도한 서비스 요구는 피해자를 지치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센터별로 업무량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피해자 측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사항을 제어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종사자들은 심리적 위축과 함께 이직하게 됨으로써 종사자의 전문성과 양질의 피해자지원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¹⁶⁾ 소진은 단순히 상담원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상담원 등 종사자가 성폭력피해자와 가족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결국 국가가 제도화한 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체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선행연구, 정책동향, 실태조사 결과,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자문회의 등에 근거하여 성폭력 전문상담원 등 종사자들의 소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6) 2004년 전국 19개 아동학대예방센터(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9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신범수, 2004)에서 상담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담원의 소진과 정서적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폭력피해자지원 법과 제도, 서비스의 내용을 명시해서 피해자에게 고지한다.

성폭력피해자가 법과 제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서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지원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신체적, 심리적 피해와 손상을 극복하고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써 피해자의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 스스로 무리한 요구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 즉, 수사, 재판, 상담, 심리, 의료 등 지원과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에 따르는 지원에 대한 요구의 범위까지도 명시해서 안내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지원과정에 대한 피해상황별, 대상별, 연령별, 성별, 언어별 안내책자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슈퍼비전, 프로그램 등 보완체계를 마련한다.

성폭력피해로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성폭력피해로부터 시일이 지난 피해자의 부적응과 불편, 후유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는 정신적,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 성폭력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들을 지원하는 종사자를 소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전문상담원과 종사자의 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해 주기적인 심리 검사와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에게 주기적으로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피해자의 분노, 불안감에 대한 전문상담원과 종사자의 대처기술을 향상시키고 지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진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사자의 급여와 승진, 휴식 등 보상체계를 개선한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어려움과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서 들어오는 신변위협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피해자 측의 과도한 요구와 불평사항을 처리해내는 종사자 입장에서 위험요소에 대한 급여 및 승진체계의 보완과 휴식할 수 있는 기회는 종사자의 소진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정서적 탈진과 개인적인 성취감이 낮

아진 상태에서 피해자지원에서 오는 피로감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진은 직무이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사자의 67% 가량이 신변안전 등 위협을 받았을 때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변안전의 위협요소를 줄이는 것과 함께 종사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대처방법으로써, 신변위협에 따르는 수당 등 급여체계와 원활한 승진체계, 안식휴가 기회 제공 등 보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3.5.28, 법률 제11690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10.11.17, 여성가족부령 제9호)
-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 2011.9.15, 법률 제11045호)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타법개정 2010.3.19, 여성가족부령 제1호)
- 경남정보대학(2013). 2013년도 사회복지사양성과정 운영계획서.
- 권선덕(2000). 사회복지사의 소진 실태 및 소진요인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보경(2012). 성폭력, 성매매 상담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대리외상의 관계에서 외상 신념의 매개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성자, 허민숙(2009). 충남 가정, 성폭력 등 권익증진시설 상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김성희(2003).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김연수(2002a).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기능, 역할 강화방안.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이경혜, 김유경, 조애저(2002b).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은(2013). 간접 외상 기억 심상과 반추 수준에 따른 외상 후 분노 수준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옥임(2004). 성폭력상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9(4).
-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2009). 아동학대 신고자 및 상담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대응요령.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 2013.6.4, 법률 제11856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2012.8, 대통령령 제24020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12.8.3, 보건복지부령 제 147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2.2.1, 법률 제11285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11.10.4, 여성가족부령 제20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3.6.17, 대통령령 제24615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6.18, 여성가족부령 제39호)
- 신은혜(201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손지연(2012). 미술치료사의 대리외상 경험과 대처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 아동복지법(타법개정 2012.12.18, 법률 제11572호)
- 아동복지법 시행령(타법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전부개정 2012.8.3, 보건복지부령 제150호)
- 이광숙(2009).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규은(2006).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이 성폭력에 대한 지식, 성적 자율성 및 강간통념에 미치는 효과. 여성간호학회지, 12(4).
- 이동임(2007). 성폭력범죄 처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이미정, 윤덕경, 변화순(2011).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정, 변화순, 황정임, 이소영(2008).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청자, 정현주, 이상원, 이경희(1993a). 성폭력상담원 훈련 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이청자, 정현주, 이상원, 이경희(1993b). 성폭력상담원 훈련.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가족부(2010).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
-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2011). 2011년도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결과보고.
- 장영순(1999).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진미정, 손승영, 최규련, 최선희(2006). 건강가정사 자격제도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전길양, 변화순, 이미경, 임선영, 박선민(2006). 가정폭력·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프로그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정미경(200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사업결과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정미선(2012). 미술치료사의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대리외상에 미치는 영향,

-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보수교육자료.
- 최윤이(2007).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물리적 신변안전 환경실태와 개선책에 관한 연구, 한국 영유아보육학회지. 49.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1). 2011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결과보고.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1). 2011년도 여성폭력시설 상담원 보수교육 결과보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 에서 2013. 7. 18 인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www.stop.or.kr/> 에서 2013. 8.05 인출.
- 한국임상심리학회. <http://www.kcp.or.kr/> 에서 2013. 7.19 인출.
- Arkansas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http://www.acasa.us/events.html> 에서 2013. 7. 8 인출.
- Colorado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http://www.ccasa.org/> 에서 2013. 7. 8 인출.
- Florida Council Against Sexual Violence, <http://fcasv.org/> 에서 2013. 7. 8/7.19 인출.
- Georgia Network to End Sexual Assault, <http://gnesa.org/> 에서 2013. 7. 8 인출.
- Kentucky Association of Sexual Assault Programs, <http://www.kasap.org/> 에서 2013. 7. 8 인출.
- Office For Victims Of Crime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https://www.ovcttac.gov/> 에서 2013. 7. 19 인출.
- Oregon Sexual Assault Task Force, <http://oregonsatf.org/> 에서 2013. 7. 8/7. 19 인출.
- Q-net, <http://www.q-net.or.kr> 에서 2013. 6. 23 인출.
- Rachel Davis, Lisa Fujie Parks, Larry Cohen(2006), Sexual Violence and the Spectrum of Prevention: Towards a Community Solution, National Sexual Violence Resource Center.
- Rhode island Sexual Assault Coalition, <http://www.dayoneri.org/professionaltraining.htm> 에서 2013. 7. 8 인출.
- Texas Association Against Sexual Assault, <http://www.taasa.org/> 에서 2013. 7. 8 인출.
- Texas Secretary of State, <http://www.sos.state.tx.us/> 에서 2013. 7. 8 인출.
- The Kentucky Association of Sexual Assault Programs, Inc, <http://kyasap.brinkster.net/> 에서 2013. 7. 8 인출.
- The Californi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http://www.rapetraumaservices.org/> 에서 2013. 7. 8 인출.
-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http://www.extension.ucr.edu/> 에서 2013. 7.10 인출.



부록 <<

부록1: 조사표(성폭력전문상담원용)

부록2: 조사표(일반종사자용)

부록3: 조사표(성폭력관련기관용)

부록4: 조사표(양성교육기관용)



부록1: 조사표(전문상담원용)

『성폭력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전문상담원용)

조사표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성폭력근절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성폭력피해자지원 및 예방교육 등 관련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종사자 교육과 자격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종사자의 안전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및 종사자의 안전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오니 응답자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2013년 5월 10일까지 klim@kihasa.re.kr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번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실
연구책임자: 김승권 박사(02-380-8237, 02-380-8212)

기관 소재지	_____시(도)_____구(시·군)	기관명	
종사자성명 (가명 가능)		연락처	

여 성 가 족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인구사회학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_____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떠합니까?(※ 중퇴, 재학, 수료, 졸업 모두 동일 학력으로 인정)
 - ① 고졸 이하(필문4로)
 - ② 전문대학
 - ③ 대학교(학사)
 - ④ 대학원(석사)
 - ⑤ 대학원(박사)
- 3-1.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전문대학 이상만 해당 본인 취득학위 모두 기재/복수 전공의 경우 모두 기재/편입의 경우 최종학교 전공 기재)

① 사회복지(관련)학	② 상담(심리)학	③ 범죄(심리)학	④ 교육(심리)학
⑤ 법학	⑥ 사회학	⑦ 여성학	⑧ 종교(관련)학
⑨ 아동학	⑩ 간호학	⑪ 의학	⑫ 기타(_____)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4. 귀하의 현재 근무4 중인 기관에서의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일반종사자
 - ② 중간관리자(팀장/과장/부장)
 - ③ 운영관리자(부소장, 소장 등)
5. 귀하가 근무했던 성폭력 관련 기관에서의 피해지원경력은 얼마나 됩니까?(※타기관 경력 포함)
 _____년 _____개월
6. 귀하의 현재 근무 중인 기관에서 상근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7. 귀하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시간제 ② 전일제
8. 귀하가 현재 근무 중인 기관에서 본인이 받는 월평균 급여(4대연금 포함) 수준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_____만원
9. 귀하의 현재 업무에 대한 자긍심은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낮다
 - ② 낮다
 - ③ 보통이다
 - ④ 높다
 - ⑤ 매우 높다
10. 귀하가 주로 담당하는 업무분야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 ① 상담 및 법률서비스 제공/연계
 - ② 치료(놀이, 미술, 음악 등)
 - ③ 의료(간호 포함)
 - ④ 수사
 - ⑤ 임상심리
 - ⑥ 기타(_____)
11. 귀하가 현재 근무 중인 기관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장애인)성폭력상담소(통합상담소 포함)
 - ② (장애인)성폭력피해보호시설(전용쉼터)
 - ③ 성폭력통합지원센터(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12. 귀 기관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지원받음
 - ② 지원받지 않음

16. 다음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19조 2항4호에 따르면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중 전문 강사의 자격기준으로 무엇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가지만】**
- ①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대면상담 경력 2년 이상인 자
 - ②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집단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 ③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박사 학위 이상 + 대면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
 - ④ 교육과정 수료 +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이상 +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 + 집단상담경력 5년 이상인 자
 - ⑤ 기타(_____)
17. 다음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19조2항 3호에 따르면 “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중 교육훈련 및 강사양성기관으로 위탁운영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세요.
- 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③ 가족 및 여성관련 연구원
 - ④ 일반대학부설 교육훈련시설 또는 평생교육원 ⑤ 성폭력상담소 또는 상담소부설교육원
 - ⑥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기관
 - ⑦ 기타(_____)
18. 귀하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가지만】**
- ① 정부의 교육비 지원 ② 교육수료 후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
 - ③ 교육담당자 수준 제고 ④ 교육과정 및 방식의 다양화
 - ⑤ 교육 환경 개선 ⑥ 취업기회 확대
 - ⑦ 양성교육훈련의 법제화 ⑧ 현 종사자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주제 선정
 - ⑨ 기타(_____)

Ⅲ.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자격관리

1. 귀하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에 대한 국가 자격화의 필요성에 동의합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응답 후 항목 【V.성폭력전문상담원 보수교육】 으로)**
- 1-1. (필요하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 ① 성폭력 전문상담원으로서의 전문성 강화 ② 교육담당자의 책임감 강화
 - ③ 교육담당자의 수준 향상 ④ 자격증취득비용 표준화
 - ⑤ 기타(_____)
2. 다음은 민간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제도로 변경된 자격증 유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성폭력 전문상담원 국가 자격화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로 가장 바람직한 것에 표시하세요. **【한가지만】**
- ① 사회복지사 ② 요양보호사 ③ 정신보건사회복지사 ④ 기타(_____)

구 분	국가시험 자격기준	국가시험 방식
사회복지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기준 - 사회복지사 2, 3급 자격증 발급 받은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실무경력 3년 이상 경과한 자 -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또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응시기준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1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시험실시 ※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요양보호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기준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 2008년 2월 4일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병행 ※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기준 -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수련자 -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정신보건시설에서 5년 이상 임상실무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시험실시 ※ 만점의 70% 이상 득점자

4. 다음은 보수교육에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받은 보수교육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것에 √ 표시 하세요.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4-1. 교육비용(수강료)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4-2. 교육기회(빈도)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4-3. 교육내용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4-4. 교육강사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4-5. 교육시간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4-6. 교육장소의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C.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발전방향】

5. 귀하는 보수교육의 주기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가지만】**

- ① 3개월에 1회 ② 6개월에 1회 ③ 년 1회 ④ 기타(_____)

6. 귀하는 보수교육 프로그램 한 회기 당 기간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가지만】**

- ① 2~3일 ② 1주 ③ 2주 ④ 1개월 ⑤ 기타(_____)

7. 다음은 현재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는 성폭력전문상담원의 보수교육 교과목입니다 향후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교과목 **두 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보기에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 기	
①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② 피해자 의료 및 수사, 법률지원
③ 성폭력 관련 법제	④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⑤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	⑥ 행위자 상담모델과 배경이론
⑦ 행위자 상담의 형식과 내용	⑧ 장애인,아동, 청소년 등 대상별 현황과 특성/상담적 접근
⑨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⑩ (집단)상담실습
⑪ 역할연습	⑫ 모래·미술·놀이 치료 등
⑬ 성폭력 피해자 응급의학적 접근	⑭ 성폭력 피해자 증인의 권리 및 증인 지원제도
⑮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	⑯ 성폭력 피해자 치료방법
⑰ 행정업무(공문서 작성, 엑셀, 한글 등)	⑱ 기타(_____)

8. 다음 빈칸에 보수교육의 구성으로 적절한 배분 비율을 기재해주세요.(※ **합산하여 100%가 되도록 기재**)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 _____ % + 현장실습교육: _____ % = 100%

9. 귀하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의 본인부담금액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_____만원

10. 귀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이 현 기관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된다 **☑(질문 11로)**

10-1. (도움이 안 될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 ① 교육 내용이 부실해서 ② 교육 시간이 부족해서 ③ 강사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④ 업무 때문에 교육에 제대로 참가하지 못해서 ⑤ 기타(_____)

11. 귀하가 보수교육의 전문 강사의 자격기준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하세요. **【한가지만】**
- ①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유사분야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전문)대학/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또는 유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 또는 담당 교육과목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 ④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⑤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⑥ 기타(_____)
12. 현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관 중 어느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해당 번호에 모두 표시하세요.
- 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③ 가족 및 여성관련 연구원
 - ④ 일반대학부설 교육훈련시설 또는 평생교육원 ⑤ 성폭력상담소 또는 상담소부설교육원
 - ⑥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기관 ⑦ 기타(_____)

VI.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신변안전 및 피해인식

1. 다음은 귀하의 업무와 관련된 신변안전과 대외의상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표시하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업무 수행 중 신변안전에 위협을 상당히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까봐 걱정스러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른 업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성폭력관련 업무는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담자가 겪은 충격을 내가 다시 겪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담자와 관련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장소 혹은 그 어떤 것이라도 피하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담자와의 면담내용 중 일부는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성폭력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신변위협 또는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질문 3)**

2-1.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경우) 피해자 본인이 다음 중 어느 쪽으로부터 가장 많은 위협이나 협박을 받습니까? **【한가지만】**

- ① 내담자 본인 **☞(질문 2-2로)**
- ② 내담자의 가족이나 측근 **☞(질문 2-2로)**
- ③ 가해자 본인 **☞(질문 2-3으로)**
- ④ 가해자 측 가족이나 측근 **☞(질문 2-3으로)**
- ⑤ 가해자 측 변호사
- ⑥ 경찰/검찰/재판부 **☞(질문 2-4로)**
- ⑦ 언론사
- ⑧ 기타(_____)

2-2. (내담자/내담자의 가족이나 측근의 폭력인 경우) 본인이 성폭력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담자로부터

받은 위협이나 협박 등 피해 종류의 해당 번호에 모두 √ 표시하세요.

- ① 과도한 요구
- ② 요구에 불응했을 때 불평과 비난, 원망
- ③ 피해자 가족의 과도한 요구와 행패
- ④ 관계기관에 진정
- ⑤ 성적 언어, 성적 접촉, 구애
- ⑥ 신체적 위협
- ⑦ 예기치 못한 공간 침입
- ⑧ 보호시설의 노출 인근 주변인들의 해코지
- ⑨ 보호시설 공동체 생활에서 입소자들 간의 폭언 폭행 중재과정에서의 위협
- ⑩ 입소자의 자살 위협 및 자살 상해
- ⑪ 기타(_____)

☞(질문 24로)

2-3. (가해자가해자의 가족이나 측근의 폭력인 경우) 본인이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위협이나 협박 등 피해 종류에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 표시하세요.

- ① 위협적 언어
- ② 상담자나 상담기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 ③ 가해자 측근의 불시 방문 위협
- ④ 지원하던 피해자를 가해자가 살해
- ⑤ 가해자 측근이 진료 의사, 증인 등 연관 있는 사람을 방문
- ⑥ 기타(_____)

☞(질문 24로)

2-4.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시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당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셨습니다? 해당 번호에 모두 √ 표시하세요.

- ① 상담을 중단시킨다(사례 종결)
- ② 호신용무기 사용
- ③ 경찰에 알린다
- ④ 피해자/가해자 진정시킨 후 상담 진행
- ⑤ 기타(_____)

2-5.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경우) 귀하는 신변안전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직 또는 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고려해 본 적이 없다
- ② 고려해 본 적이 있다
- ③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다

3. 귀하는 업무 수행 시 근무기관에서 종사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4. 다음은 현재 기관에서 신변보호를 위한 예방장치들입니다. 마련되어 있으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에 √ 표시하세요.

구 분	예	아니오
4-1. 위협이나 폭력에 대한 교육	①	②
4-2. 비상시 연락망(경찰관 또는 보안업체), 비상전화	①	②
4-3. 상담소 내부에서의 면접 가이드라인	①	②
4-4. 외부 면담 시의 가이드라인	①	②
4-5. 출입문의 잠금장치	①	②
4-6. 완강기, 비상구, 소화기, 가스총 등 기구의 설치	①	②
4-7. 정기 수퍼비전	①	②
4-8. 기타(_____)	①	②

5. 다음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방법들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방법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구 분	불필요	보통	필요
5-1. 폭력사건을 기관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공식적인 안전관리체계 마련	①	②	③
5-2.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보호 장비(경보기, 비상벨, 잠금장치 등) 구비	①	②	③
5-3. 피해를 당한 종사자들의 충분한 휴식 및 적절한 상담 지원체계 구축	①	②	③
5-4. 조직차원에서 업무과실이나 윤리적 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업무과실에 대하여 조직 내부에서 규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①	②	③
5-5. 기관 차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구축 및 유지	①	②	③
5-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사고 발생 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과 매뉴얼 개발	①	②	③
5-7. 경찰과의 응급연락망체계 구축	①	②	③
5-8. 퇴근(6시) 이후의 신고전화는 경찰서나 파출소로 연결	①	②	③
5-9. 협박을 대비한 녹취 기능 강화	①	②	③
5-10. 신고의무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	①	②	③

232 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연구

6. 기타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훈련 및 안전보호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기재해 주세요.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2: 조사표(일반종사자용)

『성폭력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일반종사자용)

조사표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성폭력근절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성폭력피해자지원 및 예방교육 등 관련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종사자 교육과 자격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종사자의 안전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및 종사자의 안전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오니 응답자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2013년 5월 10일까지 kim@kihasa.re.kr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번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실
연구책임자: 김승권 박사(02-380-8237, 02-380-8212)

기관 소재지	_____시(도) _____구(시·군)	기관명	
종사자성명 (가명 가능)		연락처	

여 성 가 족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인구사회학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_____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떠합니까?(※ 중퇴, 재학, 수료, 졸업 모두 동일 학력으로 인정)
 - ① 고졸 이하(필문4로) ② 전문대학 ③ 대학교(학사)
 - ④ 대학원(석사) ⑤ 대학원(박사)
- 3-1.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전문대학 이상만 해당 본인 취득학위 모두 기재/복수 전공의 경우 모두 기재/편입의 경우 최종학교 전공 기재)

① 사회복지(관련)학	② 상담(심리)학	③ 범죄(심리)학	④ 교육(심리)학
⑤ 법학	⑥ 사회학	⑦ 여성학	⑧ 종교(관련)학
⑨ 아동학	⑩ 간호학	⑪ 의학	⑫ 기타 (_____)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4. 귀하의 현재 근무 중인 시설에서의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일반종사자 ② 중간관리자(팀장/과장/부장) ③ 운영관리자(부소장, 소장 등)
5. 귀하가 근무했던 성폭력 관련 기관에서의 피해지원경력은 얼마나 됩니까?(※타기관 경력 포함) _____년 _____개월
6. 귀하의 현재 근무 중인 기관에서 상근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7. 귀하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시간제 ② 전일제
8. 귀하가 현재 근무 중인 기관에서 본인이 받는 월평균 급여(4대연금 포함) 수준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만원
9. 귀하의 현재 업무에 대한 자긍심은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10. 귀하가 주로 담당하는 업무분야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 ① 상담 및 법률서비스 제공/연계 ② 치료(놀이, 미술, 음악 등) ③ 의료(간호 포함)
 - ④ 수사 ⑤ 임상심리 ⑥ 기타(_____)
11. 귀하가 현재 근무 중인 기관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장애인)성폭력상담소(통합상담소포함)
 - ② (장애인)성폭력피해보호시설(전용쉼터)
 - ③ 성폭력통합지원센터(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12. 귀 기관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II.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A.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태

1. 귀하는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을 수료하셨습니까?
 ① 수료 ② 비수료(응답 후 항목 **C.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발전방향** 으로)
 2. 귀하가 수료한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과정의 총 이수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① 64시간 ② 100시간 ③ 기타(_____시간)
 ※ 2012년도에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이 64시간에서 100시간 교육으로 변경되었고, 2013년 6월부터 150시간으로 변경예정임(변동가능)
 3. 귀하의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과정 주관 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① 성폭력상담소(시설) ② 가정폭력상담소
 ③ 기타 여성 단체(NGO) ④ 일반대학 또는 평생교육원
 ⑤ 종교시설(기독교 등 종교법인) ⑥ 사이버대학과정
 ⑦ 지자체운영 여성정책관련 기관(여성회관 또는 여성발전센터 등)
 ⑧ 기타(_____)
 4. 귀하가 수료한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이론+실습비용포함)에서 실제 지불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_____만원
 5. 귀하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이 본인의 자질향상 또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과 직무수행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질문 6으로)
 - 5-1. 귀하의 양성교육훈련 이후 업무 수행에 있어 향상된 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보기에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보 기 | |
|------------------------------------|------------------------|
| ① 상담기법에 대한 이해 증가 | ② 업무에 대한 자신감 향상 |
| ③ 자긍심 향상 | ④ 성폭력 및 관련법에 대한 이해 증가 |
| ⑤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이해도 향상 | ⑥ 상담일지 작성 및 상담 실무능력 향상 |
| ⑦ 성폭력관련 상담소 및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증가 | |
| ⑧ 기타(_____) | |
6. 귀하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통해 습득한 직무내용이 기관 내에서 반영되거나 상사 또는 외부 관계자로부터 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귀하가 참여하였던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훈련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 표시하세요.
 ① 문제점 없음 ② 교육방법이 일방적인 강의위주였다
 ③ 법원 참관이 부족하였다 ④ 상담사례실습이 부족하였다
 ⑤ 교육담당자가 부적절하였다 ⑥ 비싼 수강료
 ⑦ 교육시간(요일, 시간대)이 부적절하였다 ⑧ 교육장소(거리)가 부적절하였다
 ⑨ 교육환경(냉방, 환기시설)이 열악하였다 ⑩ 시청각 자료의 부족
 ⑪ 행정 실무교육이 부족하였다(서류정리, 통계, 보도자료작성 등)
 ⑫ 기타(_____)

18. 다음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19조2항4호에 따르면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중 전문 강사의 자격기준으로 무엇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 ①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대면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 ②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집단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 ③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박사 학위 이상 + 대면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
 - ④ 교육과정 수료 +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이상 +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 + 집단상담경력 5년 이상인 자
 - ⑤ 기타(_____)

19. 다음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19조2항 3호에 따르면 “상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중 교육훈련 및 강사양성기관으로 위탁운영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세요.
- 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③ 가족 및 여성관련 연구원
 - ④ 일반대학부설 교육훈련시설 또는 평생교육원 ⑤ 성폭력상담소 또는 상담소부설교육원
 - ⑥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기관 ⑦ 기타(_____)

【D.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수료증) 비취득자의 취득욕구】
(※비취득자만 응답/ 취득자는 항목 【IV.성폭력전문상담원 보수교육】 으로)

20. (자격증 취득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향후 자격증(수료증)을 취득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질문 22로)
21. (취득의향 있는 경우) 귀하는 어떤 이유로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한가지만】**
 (응답 후 항목 【IV.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으로)
- ① 승진 또는 이직 ② 직무능력 향상 ③ 정보 습득
 - ④ 인간관계 개선 ⑤ 자기계발 촉진 ⑥ 기타(_____)
22. (취득의향 없는 경우) 귀하는 성폭력상담업무에 필요한 교육은 어느 곳에서 받았습니까? **【한가지만】**
- ① 학교 교육을 통해서 ② 담당 업무 자체를 통해서
 - ③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교류를 통해서 ④ 혼자 관련서적을 통해서
 - ⑤ 외부 단체에서 실시한 교육을 통해서(세미나, 워크숍) ⑥ 기타(_____)
23. (취득의향 없는 경우) 귀하가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수료증) 취득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 ① 인식부족(별로 필요성을 못 느낌) ② 근무기관의 비협조(시간부족 및 업무과중)
 - ③ 교육장소 및 시간이 부적절해서 ④ 나에게 알맞은 교육을 찾지 못해서
 - ⑤ 참가비용에 대한 부담 ⑥ 기타(_____)

IV.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A.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실태】

1. 귀하는 보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니오 ② 예 (질문 2로)

부록3: 조사표(성폭력관련 기관용)

『성폭력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성폭력관련 기관용)

조사표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성폭력근절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성폭력피해자지원 및 예방교육 등 관련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종사자 교육과 자격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종사자의 안전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및 종사자의 안전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오니 응답자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2013년 5월 10일까지 klim@kihasa.re.kr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번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실
연구책임자: 김승권 박사(02-380-8237, 02-380-8212)

기관 소재지	_____시(도) _____구(시·군)	기관명	
작성자성명 (가명 가능)		연락처	

여 성 가 족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귀 기관이 양성교육 참여자로부터 받는 교육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1인당 평균 _____ 만원
9. 귀 기관이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전담인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 9-1. 귀 기관의 전담 인력 수는 양성교육을 실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부족하다 ② 보통이다 ③ 충분하다 ☞(질문 10으로)
- 9-2. (부족한 경우)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담 인력이 총 원되어야 합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10. 귀 기관에서는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 기관 내 종사자만 활용☞(질문 10-1로) ② 외부강사만 활용☞(질문 10-2로)
③ 기관 내 종사자와 외부강사를 병행하여 활용☞(질문 10-2로) ④ 기타(_____)☞(질문 11로)
- 10-1.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① 기관 내부인력으로 충분하므로 ②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예산이 부족하여
③ 기관의 위치 때문에 ④ 외부전문가와 연계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⑤ 기타(_____)
- 10-2.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해당 번호에 모두 √ 표시하세요.
① 교과목과 관련된 이론교육 ② 미술 치료 ③ 사이코·소시오 드라마
④ 상담사례연구 ⑤ 정신과 치료 ⑥ 인성 교육
⑦ 성교육 ⑧ 기타(_____)
- 10-3.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강사는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섭외합니까? 【한가지만】
① 내부직원과의 연구 및 소개 ② 시설과 연계된 외부강사 인력풀 중에서 선택
③ 학교 및 기관의 추천 ④ 기타(_____)
11. 귀 기관이 전문 강사를 확보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① 낮은 급여수준 ② 질 낮은 근무환경 ③ 과중한 업무
④ 장래성과 기회의 부족 ⑤ 기타 (_____)
12. 귀 기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양성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질문 13으로)
- 12-1. (홍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모두 √ 표시하세요.
① 브로슈어 및 리플릿 ② 정기간행물(소식지) ③ 물품이용(스티커, 휴지)
④ 방송(TV, 라디오) ⑤ 인터넷(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등) ⑥ 기타(_____)
13. 귀 기관은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기관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안 된다☞(질문13-2로)

13-1. (도움이 된 경우) 귀 기관의 양성교육 실시 이후 기관 운영 측면에 있어 향상된 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보기에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 기	
① 재정지원 확대	② 전문 인력 확충
③ 기관평가에 도움이 됨	④ 사업운영에 효율성 제고
⑤ 특성화 사업 개발 가능	⑥ 지역주민의 인식변화
⑦ 기타(_____)	

13-2. 귀 기관은 성폭력상담전문 양성교육 과정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당 번호에 모두
 √ 표시하세요.

- | | |
|--------------------------------------|---------------------|
| ① 문제점 없음 | ② 교육방법이 일방적인 강의위주였다 |
| ③ 법원 참관이 부족하였다 | ④ 상담사례실습이 부족하였다 |
| ⑤ 교육담당자가 부적절하였다 | ⑥ 비싼 수강료 |
| ⑦ 교육시간(요일, 시간대)이 부적절하였다 | ⑧ 교육장소(거리)가 부적절하였다 |
| ⑨ 교육환경(냉방, 환기시설)이 열악하였다 | ⑩ 시청각 자료의 부족 |
| ⑪ 행정 실무교육이 부족하였다(서류정리, 통계, 보도자료작성 등) | |
| ⑫ 기타(_____) | |

13-3. 귀 기관에서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 | | |
|----------------------|---------------------------------|
| ①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다 | ② 시설 및 환경이 기관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 |
| ③ 효과적인 프로그램 관리가 부족하다 | ④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부족하다 |
| ⑤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 ⑥ 유사 기관 간에 사업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
| ⑦ 관련기관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 ⑧ 기타(_____) |

【B.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준】

14. 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성교육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실시한 양성교육에 근거하여 해당 번호에 √ 표시하세요.

구 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4-1. 교육비용(수강료)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14-2. 교육방식의 적절성(이론, 실습)	①	②	③	④	⑤
14-3. 교육내용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14-4. 교육강사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14-5. 교육시간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14-6. 교육장소의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C.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발전방향】

15.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시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 | | | |
|---------------------|---------------------|---------------------|
| ① 100시간 미만 | ② 100시간 이상~150시간 미만 | ③ 150시간 이상~200시간 미만 |
| ④ 200시간 이상~250시간 미만 | ⑤ 기타(_____) | |

16. 양성교육의 주기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가지만】**

- | | | | |
|-----------|-----------|--------|-------------|
| ① 3개월에 1회 | ② 6개월에 1회 | ③ 년 1회 | ④ 기타(_____) |
|-----------|-----------|--------|-------------|

17. 양성교육 프로그램 한 회기 당 기간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가지만】**

- | | | | | |
|--------|------|------|-------|-------------|
| ① 2~3일 | ② 1주 | ③ 2주 | ④ 1개월 | ⑤ 기타(_____) |
|--------|------|------|-------|-------------|

244 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연구

18. 다음 중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 신청자격요건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세요.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를 졸업한 자(대학교 3학년 이상)
- ②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한 자
- ③ 사회복지 상담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④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⑤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⑥ 보건의료/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⑦ 기타(_____)

19. 다음은 현재 성폭력전문상담원의 양성교육 교과목입니다. 향후 개설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교과목 **두 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보기에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 기	
① 여성의 인권과 폭력	② 대중매체속의 성문화
③ 상담기초이론	④ 폭력에 대한 이해 및 실태와 대처방안
⑤ 폭력상담의 여성 주의적 접근	⑥ 유형별 상담기법
⑦ 성폭력피해자지원의 실제	⑧ 현실치료
⑨ 상담자의 자세 및 역할	⑩ 상담사례연구 및 실습(시연)
⑪ 사이코드라마	⑫ 행정업무(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
⑬ 성폭력 관련 법률 이해	⑭ 심리검사(애니어그램)
⑮ 성폭력 사건 수사절차 과정 이해	⑯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이해
⑰ 성폭력 가해자 특성의 이해	⑱ 기타(_____)

20. 양성교육 방법 구성으로 적절한 배분 비율을 기재해 주세요(※ **합산하여 100%가 되도록 기재**)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 _____ % + 현장실습교육: _____ % = 100%

21. 양성교육 참여자의 교육비용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_____ 만원

22. 다음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19조 2항4호에 따르면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중 전문 강사의 자격기준으로 무엇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가지만】**

- ①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대면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 ②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집단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 ③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박사 학위 이상 + 대면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
- ④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박사 학위 이상 +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 + 집단상담경력 5년 이상인 자
- ⑤ 기타(_____)

23. 다음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19조2항 3호에 따르면 “상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중 교육훈련 및 강사양성기관으로 위탁운영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세요.

- 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③ 가족 및 여성관련 연구원
- ④ 일반대학부설 교육훈련시설 또는 평생교육원 ⑤ 성폭력상담소 또는 상담소부설교육원
- ⑥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기관 ⑦ 기타(_____)

24.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가지만】**

- 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② 전문 인력 확충 ③ 교육과정 및 방식의 다양화
- ④ 교육 환경 개선 ⑤ 지역주민의 인식제고 ⑥ 양성교육훈련의 법제화
- ⑦ 유사 기관간의 통합 ⑧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인적·물적 자원 확보)
- ⑨ 기타(_____)

9-2.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해당 번호에 모두 √ 표시

하세요.

- ① 교과목과 관련된 이론교육 ② 미술 치료 ③ 사이코·소시오 드라마
 ④ 상담사례연구 ⑤ 정신과 치료 ⑥ 인성 교육
 ⑦ 성교육 ⑧ 기타(_____)

9-3.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강사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섭외합니까? **【한가지만】**

- ① 내부직원과의 연고 및 소개 ② 시설과 연계된 외부강사 인력풀 중에서 선택
 ③ 학교 및 기관의 추천 ④ 기타(_____)

10. 귀 기관이 전문강사를 확보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 ① 낮은 급여수준 ② 질 낮은 근무환경 ③ 과중한 업무
 ④ 장래성과 기회부족 ⑤ 기타 (_____)

11. 귀 기관은 직원 보수교육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질문 12로)**

11-1.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12. 귀 기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질문 13으로)**

12-1. (홍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모두 √ 표시하세요.

- ① 브로슈어 및 리플렛 ② 정기간행물(소식지) ③ 물품이용(스티커, 휴지)
 ④ 방송(TV, 라디오) ⑤ 인터넷(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등) ⑥ 기타(_____)

13. 귀 기관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 ①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다 ② 시설 및 환경이 기관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
 ③ 효과적인 프로그램 관리가 부족하다 ④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부족하다
 ⑤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⑥ 유사 기관 간에 사업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⑦ 관련기관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⑧ 종사자 참여율이 저조하다
 ⑨ 기타(_____)

14.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응답 후 항목 [C.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발전방향] 으로)

- ① 업무에 대한 부담감 ② 대체인력 부족 ③ 교육 참여자 부족
 ④ 예산 부족 ⑤ 기타 (_____)

【B.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수준】

15. 다음은 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보수교육에 근거하여 해당 번호에 √ 표시하세요.

구 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5-1 교육기회(빈도)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15-2 교육내용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15-3 교육강사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15-4 교육시간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15-5 교육장소의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C.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발전방향】

16. 보수교육 실시가 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안 된다

17. 보수교육의 주기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가지만】**

- ① 3개월에 1회 ② 6개월에 1회 ③ 연 1회 ④ 기타(_____)

18. 보수교육 프로그램 당 기간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가지만】**

- ① 2~3일 ② 1주 ③ 2주 ④ 1개월 ⑤ 기타(_____)

19. 다음은 현재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는 성폭력전문상담원의 보수교육 교과목입니다. 보수교육이 실시될 경우, 향후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교과목 **두 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보기에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 기	
①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② 피해자 의료 및 수사, 법률지원
③ 성폭력 관련 법제	④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⑤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	⑥ 행위자 상담모델과 배경이론
⑦ 행위자 상담의 형식과 내용	⑧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대상별 현황과 특성/상담적 접근
⑨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⑩ (집단)상담실습
⑪ 역할연습	⑫ 모래·미술·놀이 치료 등
⑬ 성폭력 피해자 응급의학과적 접근	⑭ 성폭력 피해자 증인의 권리 및 증인 지원제도
⑮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	⑯ 성폭력 피해자 치료방법
⑰ 행정업무(공문서 작성, 엑셀, 한글 등)	⑱ 기타(_____)

20. 어느 정도의 보수교육 배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합산하여 100%가 되도록 기재**)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 _____% + 현장실습교육: _____% = 100%

21. 기관과 종사자 간에 보수교육 비율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합산하여 100%가 되도록 기재**)

기관: _____% + 종사자: _____% = 100%

22. 보수교육 전문 강사 자격기준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세요.

- ①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유사분야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자
 ② (전문)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또는 유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자
 ③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 또는 담당 교육과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④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⑥ 기타(_____)

23.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기관 또는 단체에서 보수교육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해당 번호에 모두 표시하세요.

- 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③ 가족 및 여성관련 연구원
 ④ 일반대학부설 교육훈련시설 또는 평생교육원 ⑤ 성폭력상담소 또는 상담소부설교육원
 ⑥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기관 ⑦ 기타(_____)

4. 다음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방법들입니다. 다음의 방법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구 분	불필요	보통	필요
4-1. 폭력사건을 기관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공식적인 안전관리체계 마련	①	②	③
4-2.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보호 장비(경보기, 비상벨, 비상전화, 잠금 장치 등) 구비	①	②	③
4-3. 피해를 당한 종사자들의 충분한 휴식 및 적절한 상담 지원체계 구축	①	②	③
4-4. 조직차원에서 업무과실이나 윤리적 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업무과실에 대하여 조직 내부에서 규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①	②	③
4-5. 기관 차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구축 및 유지	①	②	③
4-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사고 발생 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과 매뉴얼 개발	①	②	③
4-7. 경찰과의 응급연락망체계 구축	①	②	③
4-8. 퇴근(6시) 이후의 신고전화는 경찰서나 파출소로 연결	①	②	③
4-9. 협박을 대비한 녹취 기능 강화	①	②	③
4-10. 신고의무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	①	②	③

5. 기타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훈련 및 안전보호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기재해 주세요.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4: 조사표(양성교육기관용)

『성폭력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양성교육기관용)

조사표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성폭력근절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성폭력피해자지원 및 예방교육 등 관련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종사자 교육과 자격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종사자의 안전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및 종사자의 안전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오니 응답자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2013년 5월 13일까지 kim@kihasa.re.kr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번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실
연구책임자: 김승권 박사(02-380-8237, 02-380-8212)

기관 소재지	_____시(도)_____구(시·군)	기관명	
작성자성명 (가명 가능)		연락처	

여 성 가 족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일반 사항

1. 기관 구분	① 성폭력상담소 및 부설 교육원 ② 일반대학부설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원 ③ 성폭력 및 상담관련 연구원 ④ 기타(_____)
2. 운영주체	① 사회복지법인 ② 사단법인 ③ 재단법인 ④ 종교법인 ⑤ 학교법인 ⑥ 법률구조법인 ⑦ 의료법인 ⑧ 기타(_____)
3. 설립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4. 직원현황	직원 구성
	계 _____명
	관리담당 _____명 교육전문가 _____명 교육·연구담당(행정) _____명 기타 종사자 _____명
5.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여부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II.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태

1. 2012년 1년간 귀 기관이 실시한 양성교육 횟수는 몇 회입니까? 연_____회
2. 2012년 1년간 귀 기관의 양성교육 수료자는 얼마나 됩니까? _____명
3. 귀 기관의 양성교육 주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가지만】**
 ① 필요할 때만 실시 ② 연 2회 ③ 분기별 1회 ④ 월 1회 ⑤ 기타(_____)
4. 귀 기관의 양성교육 프로그램 한 회기 당 기간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한가지만】**
 ① 2~3일 ② 1주 ③ 2주 ④ 1개월 ⑤ 기타(_____)
5. 귀 기관의 양성교육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해당 번호에 모두 표시하세요.
 ① 고등교육법 제 2조 제1호~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산업, 교육, 전문, 방송, 기술 대학 등)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④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기타(_____)
6. 다음은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양성교육 교과목 예시입니다. 귀 기관에서 현재 교육하고 있는 과목 번호에 모두 표시하세요.
 ① 여성의 인권과 폭력 ② 대중매체속의 성문화
 ③ 상담기초이론 ④ 폭력에 대한 이해 및 실태와 대처방안
 ⑤ 폭력상담의 여성 주의적 접근 ⑥ 상담원리와 기법
 ⑦ 성폭력피해자지원의 실제 ⑧ 현실치료
 ⑨ 상담자의 자세·역할 및 윤리 ⑩ 상담사례연구 및 실습(시연)
 ⑪ 사이코·소시오 드라마 ⑫ 행정업무(공문서 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
 ⑬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⑭ 성폭력의 후유증과 치유
 ⑮ 기타(_____)

7. 현재 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성교육의 배분 비율을 기재해 주세요. (* 합산하여 100%가 되도록 기재)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 _____ % + 현장실습교육: _____ % = 100%
8. 귀 기관이 양성교육 참여자로부터 받는 교육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1인당 평균 _____ 만원
9. 귀 기관이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전담인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없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 9-1. 귀 기관의 전담 인력 수는 양성교육을 실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부족하다 ② 보통이다 ③ 충분하다 ☞(질문 10으로)
- 9-2. (부족한 경우)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담 인력이 총원되어야 합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10. 귀 기관에서는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 기관 내 교육전문가만 활용☞(질문 10-1로) ② 외부강사만 활용☞(질문 10-2로)
 ③ 기관 내 교육전문가와 외부강사를 병행하여 활용☞(질문 10-2로) ④ 기타(_____)☞(질문 11로)
- 10-1.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① 기관 내부인력으로 충분하므로 ②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예산이 부족하여
 ③ 기관의 위치 때문에 ④ 외부전문가와 연계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⑤ 기타(_____)
- 10-2.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해당 번호에 모두 √ 표시하세요.
 ① 교과목과 관련된 이론교육 ② 미술 치료 ③ 사اي코·소시오 드라마
 ④ 상담사례연구 ⑤ 정신과 치료 ⑥ 인성 교육
 ⑦ 성교육 ⑧ 기타(_____)
- 10-3.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강사는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섭외합니까? 【한가지만】
 ① 내부직원과의 연고 및 소개 ② 기관과 연계된 외부강사 인력풀 중에서 선택
 ③ 학교 및 외부기관의 추천 ④ 기타(_____)
11. 귀 기관이 전문 강사를 확보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① 낮은 급여수준 ② 질 낮은 근무환경 ③ 과중한 업무
 ④ 장래성과 기회의 부족 ⑤ 기타(_____)
12. 귀 기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양성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질문 13으로)
- 12-1. (홍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모두 √ 표시하세요.
 ① 브로슈어 및 리플릿 ② 정기간행물(소식지) ③ 물품이용(스티커, 휴지)
 ④ 방송(TV, 라디오) ⑤ 인터넷(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등) ⑥ 기타(_____)

13. 귀 기관은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당 번호에 모두 √ 표
시하세요.

- ① 문제점 없음
- ② 교육방법이 일방적인 강의위주였다
- ③ 법원 참관이 부족하였다
- ④ 상담사례실습이 부족하였다
- ⑤ 교육담당자가 부적절하였다
- ⑥ 비싼 수강료
- ⑦ 교육시간(요일, 시간대)이 부적절하였다
- ⑧ 교육장소(거리)가 부적절하였다
- ⑨ 교육환경(냉방, 환기시설)이 열악하였다
- ⑩ 시청각 자료의 부족
- ⑪ 행정 실무교육이 부족하였다(서류정리, 통계, 보도자료 작성 등)
- ⑫ 기타(_____)

14. 귀 기관에서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 ①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
- ② 시설 및 환경이 기관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
- ③ 효과적인 프로그램 관리가 부족하다
- ④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부족하다
- ⑤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 ⑥ 유사 기관 간에 사업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 ⑦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다
- ⑧ 교육생 모집이 어렵다
- ⑨ 기타(_____)

15. 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성교육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실시한 양성교육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하세요.

구 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5-1. 교육비용(수강료)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15-2. 교육방식의 적절성(이론, 실습)	①	②	③	④	⑤
15-3. 교육내용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15-4. 교육강사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15-5. 교육시간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15-6. 교육장소의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III.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발전방향

1.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시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 ① 100시간 미만
- ② 100시간 이상~150시간 미만
- ③ 150시간 이상~200시간 미만
- ④ 200시간 이상~250시간 미만
- ⑤ 기타(_____)

2. 양성교육의 주기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가지만】**

- ① 3개월에 1회
- ② 6개월에 1회
- ③ 연 1회
- ④ 기타(_____)

3. 귀 기관은 양성교육 프로그램 한 회기 당 기간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가지만】**

- ① 2~3일
- ② 1주
- ③ 2주
- ④ 1개월
- ⑤ 기타(_____)

4. 다음은 현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과정 신청자격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부적절
- ② 적절 **☑(질문 5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 2조 제1호~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산업, 교육, 전문, 방송, 기술 대학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경력자 -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1. (부적절한 경우) 어느 부분이 가장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가지만】**

- ① 학력수준
- ② 사회복지사 자격 여부
- ③ 경력기간
- ④ 전공분야
- ⑤ 근무시설
- ⑥ 기타(_____)

5. 다음은 성폭력전문상담원의 양성교육 교과목 예시입니다. 향후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교과목 **두 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보기에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 기	
① 여성의 인권과 폭력	② 대중매체속의 성문화
③ 상담기초이론	④ 폭력에 대한 이해 및 실태와 대처방안
⑤ 폭력상담의 여성 주의적 접근	⑥ 상담원리와 기법
⑦ 성폭력피해자지원의 실제	⑧ 현실치료
⑨ 상담자의 자제·역할 및 윤리	⑩ 상담사례연구 및 실습(시연)
⑪ 사이코·소시오 드라마	⑫ 행정업무(공문서 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
⑬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⑭ 성폭력의 후유증과 치유
⑮ 기타(_____)	

6. 귀 기관의 양성교육 구성으로 적절한 배분 비율을 기재해주세요(※ **합산하여 100%가 되도록 기재**)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 _____ % + 현장실습교육: _____ % = 100%

7. 양성교육 참여자의 교육비용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1인당 평균 _____ 만원

8. 다음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19조2항4호에 따르면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보기 중 전문 강사의 자격기준으로 무엇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가지만】**

- ①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대면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 ②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집단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 ③ 교육과정 수료 + 관련분야 박사 학위 이상 + 대면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
- ④ 교육과정 수료 +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이상 +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 + 집단상담경력 5년 이상인 자
- ⑤ 기타(_____)

9. 다음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19조2항3호에 따르면 “상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중 교육훈련 및 강사양성기관으로 위탁운영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 표시하세요.

- 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③ 가족 및 여성관련 연구원
- ④ 일반대학부설 교육훈련시설 또는 평생교육원 ⑤ 성폭력상담소 또는 상담소 부설교육원
- ⑥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기관 ⑦ 기타(_____)

10. 다음 중 양성교육 수료자 평가방식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 ① 필기시험 ② 실습평가 ③ 필기시험 + 실습평가 ④ 기타(_____)

11.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가지만】**

- 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② 전문인력 확충 ③ 교육과정 및 방식의 다양화
- ④ 교육 환경 개선 ⑤ 지역주민의 인식제고 ⑥ 양성교육의 법제화
- ⑦ 유사 기관간의 통합 ⑧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인적·물적 자원 확보)
- ⑨ 기타(_____)

12. 기타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기재해 주세요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